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2022년과 유사하게 전년대비 3%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국과 일본, 인도 등의 경기 호조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의 성장 부진과 EU 지역의 침체 심화로 3.0%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조기 종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원유, 천연가스, 식량, 여타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미국과 EU를 포함한 60개국 이상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87.3%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 연구원과 협력하여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등에 대한 통상제도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3년 보고서는 총 16개국을 대상으로 300건 이상의 주요 무역장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금년도 보고서에서 16개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무역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규제, 통관장벽, TBT 및 SPS, 환경규제, 무역구제조치, 서비스투자 제한, 디지털

무역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유지·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분석 내용에 기초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가 점차 강화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의 주도 하에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기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EU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을 중국이 M&A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이나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조치의 발동 사례를 보면 주로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만, 점차 자국의 핵심 기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이 예외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외에도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은 기존의 환경 규제 조치에 더해 최근에는 순환경제패키지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화학물질 관리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TBT와 SPS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주요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2009년 1,897건에서 2021년 3,958건으로 연평균 6.3%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SPS 통보 건수 또한 1,016건에서 1,825건으로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대상 16개국이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주요 TBT 및 SPS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능동적 대응을 돕고자 하였다.

최근 디지털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디지털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특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 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따르면서 개별적인 세금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개도국들은 컴퓨팅 설비의 위치,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역외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고율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기 전까지 개도국들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바, 각국의 정책 동향 및 세부 규제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 정부조달상의 내외국 기업 차별조치, 강화된 경쟁정책 등 비관세조치가 유지되거나 새롭게 도입되고 있고, 개도국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023년 12월

---



## 무역장벽 보고서

[www.motie.go.kr](http://www.motie.go.kr)

# CONTENTS

##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 Part. III 아시아·대양주

## Part. IV 아메리카

## Part. V 유럽

## Part. VI 아프리카·중동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미 국 003

유럽연합(EU)·영국 040

일 본 080

중 국 096

인도네시아 146

베트남 163

말레이시아 204

태 국 212

인 도 223

러시아 244

호 주 260

브라질 269

캐나다 283

멕시코 299

튀르키예 312

필리핀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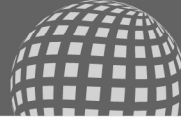
## 2023 외국의 통상환경



[www.motie.go.kr](http://www.motie.go.kr)



# I Part



## 무역장벽 보고서

미 국

유럽연합(EU)·영국

일 본

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 국

인 도

러시아

호 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튀르키예

필리핀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 미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미국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14.7%에 달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국 상품 수출은 1,157.1억 달러, 수입은 712.5억 달러, 무역수지는 44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상대국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목<sup>1)</sup>은 자동차(27.8%), 자동차부품(7.0%), 석유제품(4.9%), 반도체(4.3%), 건전지및축전지(4.2%) 등,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17.3%), 반도체제조용장비(6.8%), LPG(6.3%), 천연가스(5.8%), 항공기및부품(5.3%) 등이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은 2022년 기준 수출 305.1억 달러, 수입 325.3억 달러, 무역수지는 20.2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2019년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이상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 주요 수출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40.4%), 운송(29.2%), 여행(8.5%), 지식재산권사용(7.3%), 기타서비스(6.6%),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5.8%)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42.7%), 운송(17.0%), 지식재산권사용료(14.8%), 기타서비스(10.7%), 여행(10.4%) 등이다.

한국과 미국 간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부터 2023년9월까지 한국의 대미국 해외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161.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1위)이다. 최근 5년(2019년 ~2023년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총 1,098.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9.2%), 제조업(23.5%), 부동산업(12.5%), 정보통신업(8.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4.3%), 도매·소매업(3.8%) 등이다.

1) 본 보고서에서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으로 제시함.

반대로, 196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대한민국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 (도착금액 기준)은 446.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 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미국의 대한민국 투자는 총 99.4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정보통신(38.2%), 도·소매 유통(21.0%), 전기·전자(15.2%), 운송용기계(5.7%),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3.9%) 등이다.

한국과 미국 간 FTA는 2007년 4월 타결 이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 결되면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는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

## 수입 규제

### 육류 및 가공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은 수입식품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공류 및 계란 소 량 함유 제품<sup>2)</sup>에 대해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 토하였으나, 2009년 6월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 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 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일정 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된다.

### 강제노동 연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강화

미국은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2)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 (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함.



금지하였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부연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국 CBP는 강제노동 의심을 이유로 수입물품에 대해 억류명령을 많이 발동하고 있다. 미국 CBP는 2020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산 팜유 및 제품(말레이시아 Sime Darby사 생산)에 대해 WRO 조치를 취하였으며, 2021년 1월 13일에는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및 토마토에 대해 WRO가 실행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29일에는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말레이시아 Top Glove사 생산)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WRO 조치를 내렸고, 2021년 6월 24일에는 중국산 실리카 및 관련 제품(Silica-based Product)(중국 신장의 Hoshine사 생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WRO 조치가 취해졌다.<sup>3)</sup> 아직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과 관련된 사례 및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상품' 수입금지 법안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2021년 12월 23일).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실제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21년 1월 신장에서 생산

3) 관세청, FTA 포털, 2021년 1월 29일자 공지사항,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 조치 알림"; 2021년 4월 23일자 공지사항,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 조치 알림"; 2021년 7월 8일자 공지사항, "중국 신장産 실리카제품 수출입업체 안내문" 참고.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List.do?mi=3556&bbsId=1483>

되는 면화와 토마토 제품을, 바이든 정부는 2021년 6월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금지했다. 세계 면화의 20%,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동 법이 도입되면 면화 및 태양광 관련 산업 등에 큰 영향을 주면서 관련 업계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뿐 아니라 신장의 중간재나 노동력이 들어간 모든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산업에 걸친 기업이 잠재적인 미국 수출 제한 위험을 피하려면 자사 공급망에서 신장 지역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

동 법이 구체적으로는 신장 지역에서 기반한 제품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각 산업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상 실제 적용과정에서 중국 제품 전반에 관한 수입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에 이어 영국 정부도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 관세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에 앞서 2022년 6월 13일 무역 관계자들을 위해 강제노동 간주 제품의 수입 제재 절차 및 제재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 등 정보제공 용도로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발표했다. 기업들은 예외신청을 위해 강제노동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제시하였다.

##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규제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해양포유류의 혼획 위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해당 수입규제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해양대기청(NOAA)<sup>4)</sup>이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등성 평가 결과의 발표 시기를 기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그리고 2025년 12월 31로 2차례 연기함에 따라 해당 수입규제는 3년 늦춰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인간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양포유류 감소에 대한 우려 확대에 대응하여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미국 NGO가 동 법의 수입규제 조항 이행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효하였다(2017.1.1) 이 규칙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어획기술로 포획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어민들에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조치를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등성 평가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프로그램의 향후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국가 단위로 평가한다. 동등성 평가는 4년마다 시행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수용(인정) 또는 기각(부인)으로 구분되며, 동등성이 부인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향후 대미 수산물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평가 등 미국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무역상 기술장벽(TBT)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동차 지능형 주행등 시스템 허용

2022년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동차의 지능형 주행등(ADB: Adaptive Driving Beam) 시스템을 허용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표준(FMVSS 108)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ADB 시스템은 센서가 전방 차량을 인식하고 전방 운전자의 눈부심 유발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충돌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NHTSA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ADB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FMVSS 개정안을 2018년에 공개하였으나 그간 시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ADB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 자석 안전표준 시행

2022년 10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자석 안전표준을 시행하였다. CPSC는 어린이들이 작은 크기의 자석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력이 큰 자석을 삼키는 경우 체내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어 자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비자 제품 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근거하여 놀이용 제품, 보석(어린이 보석 포함) 등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일정 크기 이하의 느슨하거나 분리 가능한 자석의 플렉스 지수를 50 kG2mm2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석이 사용되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할 때는 해당 안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본격 시행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법안(제정법)에 서명한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총 7개의 하위규정(규칙)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이 7개 규정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③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해외공급자 검증 제도, ⑥위생적 운송, ⑦고의적 변질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이다.

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검사·인증기관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FSMA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식품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제조, 운반, 수입 등과 농산물 재배 및 처리와 관련된 거의 대다수 회사나 업체들이 FSMA에 따른 포괄적인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미국 식품수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DA는 FSMA 이행을 통해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공중보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산 팽이버섯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미국 식품의약청은 2022년 7월 리스테리아균 감염위험이 있는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전국 수입경보조치를 취하고 한국산 모든 팽이버섯 제품의 수입시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FDA의 검사 결과 수입된 한국산 팽이버섯 중 43%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수입 경보 조치에는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수입 경보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FDA의 요건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에 대해 통관 거부 및 리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으며, 2022년 9월 수입 팽이버섯과 목이버섯의 식품 안전 강화 방안이 발표되어 미국으로의 버섯 수출은 안전성 입증에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투자 장벽

###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영향을 주는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2018년 11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FIRR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 발표(2020년 1월 13일) 등을 거친 후 정식 발효(2020년 2월 13일)되었다.<sup>5)</sup>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합병, 인수 또는 지분 취득으로 미 사업체를 통제(control)하는 거래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FIRRMA의

5)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469/united-states-of-america-new-implementing-regulations-on-fdi-screening-promulgated>

시행으로 CFIUS 심사 대상은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 인근 부동산 취득,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및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y) 관련 업체, △미국인 개인정보 소유·수집 업체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2021년 10월 5일 미국 상무부(DOC)는 중요 기술 목록에 특정 생명공학 관련 제품을 추가하는 등 CFIUS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sup>6)</sup>

또한, 핵심 기술의 정의가 기존(국방 및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에서 「수출통제개혁법(ECRA2018)」의 적용을 받는 신흥·기반 기술을 비롯한 기타 수출통제 및 기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특정기술까지로 확대되었다.

CFIUS는 정식신고 이후 45일간의 국가안보심사(review)를 진행하고 심사결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승인하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45일간의 국가안보조사(investigation)를 진행한다. 국가안보조사 결과 △허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투자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에게 특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투자자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 결정으로 회부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은 CFIUS 조사결과에 따라 투자거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CFIUS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 투자자는 자발적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국방생산법과 FIRMA에 규정된 바에 따라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사이버 보안 위협,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6)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772/united-state-s-of-america-new-screening-requirement-and-export-controls-for-certain-biotechnology-related-software>

그리고 2022년 10월 미국 재무부는 투자 심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CFIUS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의무 신고서 미제출, △CFIUS의 시정명령 등 불이행,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3가지 유형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전적 처벌 및 기타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sup>7)</sup>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비시장 국가의 대미 M&A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투자제재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도 CFIUS의 권한 강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2021년 CFIUS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기업은 2019년 10건, 2020년 2건, 2021년 13건 등 최근 3년간 총 25건의 신고서를 CFIUS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8)</sup>

## 환경 규제

###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 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8년 9월 17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 Manufacture Notice) 대상이던 2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중요신규사용 규칙(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sup>9)</sup> 그리고 2020년 4월 17일에 미국 EPA는 TSCA에 따른 SNURs의 적용 대상으로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sup>10)</sup>

7) 이정민(2022).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의 제도 강화 동향 및 시사점」 kotra 해외시장뉴스. (11월 8일).

8) CFIUS(2022). 「Annual Report to Congress for CY2021」.

9)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

10) TSCA에 따른 SNURs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화학물질 3종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웹사이트의 다음 페이지를 참고.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02698&currentPage=4&requestCnt=10&selNation=%EB%AF%B8%EA%B5%AD&newNational=%EB%AF%B8%EA%B5%AD&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50%가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하며, 연방기관이 구매하는 소형 트럭(light truck)의 경우 2027년까지 100%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한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2023~26년형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화하기 위한 배출 기준을 개정하고자 최종 규범을 발표하였고, 추가로 2027년 이후 차량에 대한 기준도 검토 할 예정이다.<sup>11)</sup>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은 2023년 61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10건), 인도네시아(5건)이 뒤를 이었다.

우리기업에 적용중인 반덤핑 규제는 총 36개(2위)이며, 2023년 12월 기준 신규조사 건수는 주석도금강판, 황동봉, 알루미늄 압출재 3건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철강(25건)과 화학제품(2건)을 중심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는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1) "Tracking Climate Ac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ere Has Progress Been Made?" 12 January 2022. World Resources Institute.  
file:///C:/Users/DB400TDA/Desktop/What%20is%20the%20Biden%20Administration%20Doing%20to%20Fight%20Climate%20Change\_%20\_%20World%20Resources%20Institute.html

미국의 반덤핑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체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 불리한 가용정보(AFA) 사용 권한 강화

2015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제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 반덤핑 판정에 특정시장상황(PMS) 적용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TPEA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sup>12)</sup>(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sup>13)</sup>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반덤핑 피해 소기업의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TPEA가 통과된 이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PMS를 적용하였다. 당초 2016년 10월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조사당국은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 혐의<sup>14)</sup>를 개별적으로(individually) 검토한 결과 제소

12)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음.

13)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sup>15)</sup> 2017년 4월 최종판정에 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제소자측이 제시한 4가지 혐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상의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 쿼터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후 일부 국가들과는 협의를 통해 조치 대상에서 면제시키거나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2018년 3월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EU 및 일본과는 2022년 2월 철강에 대한 쿼터 적용에 합의했다. 2018년 5월부터는 교역 규모가 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9월 10일 미국 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DOC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sup>16)</sup>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미국 DOC는 예비 판정시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sup>17)</sup>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

14) 제소자는 특정시장상황의 근거로 첫째, 저가의 중국산 열연(HRC)이 한국에 공급되어 OCTG의 원자재인 열연의 가격 왜곡되었고, 둘째, 한국 정부의 국내 열연제품에 대한 의도적인 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셋째, 한국 내 열연 생산자와 OCTG 생산자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로 열연의 가격이 왜곡되었으며, 넷째, 한국정부의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영향을 들었음. 이효영(2017), p. 17; 법무법인 광장(2017), pp. 77-78 참고.

15) 이효영(2017), p. 17; 외교부(2017),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p. 27 참고.

16) 구성가격(CV) = 제소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17) 미국 DOC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음.

으로써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DOC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DOC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2017년 11월 미국은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 2019년 7월 이행 기간이 지나도록 판정을 불이행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였으며, 미국이 피해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WTO가 중재에 나섰다.

한편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sup>18)</sup> 조사에서 제로잉<sup>19)</sup>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2016년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리적 이행기간(2017년 12월 26일까지)이 지났음

18)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함.

19)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반덤핑관세가 산출됨.

에도 반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2017년 1월)를 결정하였다.

### 상계관세 조치

미국의 대세계 상계관세 규제 건수는 179건으로 철강 79건, 화학 25건, 금속/광물 12건 등이다. 2023년 12월 기준 주요국별 규제 현황으로는 중국 85(1위)건, 인도 32건(2위) 그리고 튀르키예 13건(3위)으로 나타났다.<sup>20)</sup>

우리기업에 적용중인 상계관세 규제는 총 9건(4위)이며, 2023년 신규조사 건수는 1건(황동봉(brass rod))이다. 과거 미국 철강업체의 조사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 사례에서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3년 12월 기준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에 대한 조치 1건이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는 2018년 2월부터 조치를 부과중이며, 2021년 8월 일몰재심을 통해 2022년 2월 최종 연장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면형패널(Bifacial Panels)는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세탁기·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시켰다.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20) 출처 : USITC 홈페이지

대형가정용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0년 12월 USITC의 권고와 2021년 1월 대통령의 포고문을 통해 2년 간 연장 되었다가 2023년 2월 종료되었다.

태양광제품의 경우 2020년 10월 4년차 관세율을 당초 15% 대신 18%로 적용하는 포고령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8월 Auxin Slar 등 업계에서는 4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USITC에 제출하였다. 이에 USITC는 2021년 12월 4년 연장을 권고하였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2026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 세탁기/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관세율 |                |              |        |        |        |        |        |
|---------------------|----------------|--------------|--------|--------|--------|--------|--------|
|                     | 기존<br>관세율      | 세이프가드<br>관세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세탁기<br>완제품          | 1%<br>(0.3%)   | 저율관세         | 20%    | 18%    | 16%    | 15%    | 16%    |
|                     |                | 쿼터           | 120만 대 | 120만 대 | 120만 대 | 120만 대 | 120만 대 |
|                     |                | 초과시          | 50%    | 45%    | 40%    | 35%    | 30%    |
| 세탁기<br>부품           | 2.6%<br>(0.7%) | 저율관세         | 0%     | 0%     | 0%     | 0%     | 0%     |
|                     |                | 쿼터           | 5만 개   | 7만 개   | 9만 개   | 10만대   | 13만대   |
|                     |                | 초과시          | 50%    | 45%    | 40%    | 35%    | 30%    |
| 태양광<br>셀            | 0%             | 저율관세         | 0%     | 0%     | 0%     | 0%     | -      |
|                     |                | 쿼터           | 2.5GW  | 2.5GW  | 2.5GW  | 2.5GW  | -      |
|                     |                | 초과시          | 30%    | 25%    | 20%    | 15→18% | -      |
| 태양광<br>모듈           | 0%             | -            | 30%    | 25%    | 20%    | 15→18% | -      |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강화

2024년 3월 25일 미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강화 규정(Regulation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이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의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지했다<sup>21)</sup>. 본 개정안은 2023년

5월 최초 공개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게재일로부터 30일 이후인 2024년 4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의 목적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집행 및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가격을 왜곡하는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며,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 초국경적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ies)에 대한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정시장상황(PMS) 적용의 명확화<sup>22)</sup>, 노동·환경·지재권 관련 규제 강화<sup>23)</sup>, 초국경 보조금 조사 제한 규정 삭제<sup>24)</sup>이다.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PMS 관련 규정에서는 미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서 PMS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25)</sup>. 구체적으로는 첫째 PMS를 ‘판매 기반(sales-based PMS)<sup>26)</sup>과 ‘원가 기반(cost-based PMS)<sup>27)</sup>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지침을 명시하였다. 또한 PMS가 적용되는 사례의 구체적 예시(대상 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 수출국에서의 수출 제한, 특정 생산자에게 독점적 지위 부여, 관련 산업의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반경쟁 정책 시행,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조정 개입 등)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환경·지재권과 관련된 규제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무역구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일부 해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규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불공정한 가격경쟁이 형성된다는 배경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는 덤핑 조사할 때 비시장 경제 국가의 이윤 대체값(surrogate value)과 PMS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2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5/09/2023-09052/regulations-improving-and-strengthening-the-enforcement-of-trade-remedies-through-the-administration>(검색일: 2024.4.23.)

22)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351.416

2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351.408, §351.416, §351.511, §351.529

24)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351.527

25) 미국의 PMS 조사기법은 자의적이라는 국제적인 비판이 있었음. 이는 미국의 무역특혜확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에서 PMS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26) 자국에서의 판매가격과 미국 수출가격 및 구성 수출가격과의 적절한 비교가 어려운 경우

27) PMS가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비용을 왜곡하는 경우

해당국의 노동·환경·지재권 관련 규제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보조금 조사에서도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노동·환경·지재권 관련 규제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미준수시 벌금을 부과 여부를 고려하여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에서는 제3국이 수출국기업에 제공하는 초국경적 보조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존재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제 3국이 대미 수출국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개정은 상무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개정 내용의 상당부분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부과받는 국가이므로 개정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 원산지 규정

###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기존 NAFTA를 개정한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가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USMCA는 자동차(승용차·경트럭·중량트럭으로 구분)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특혜를 받기위한 승용차 및 경트럭의 역내부품 사용 비율(역내부가가치(Labor Value Content, RVC) 순원가법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미지역의 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 LCV)’을 도입하여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어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산 제품 사용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USMCA 역내로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규정에서 명시한 RVC 기준 적용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며,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존 연간생산량의 10% 수준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USMCA 발효 전후(2020년 7월 1일 발효)로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이하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RVC 계산 시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를 두고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해당 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여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자동차의 RVC를 계산할 때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8월 멕시코와 캐나다는 본 사안에 대해 미국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2022년 1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2023년 1월 최종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그 결과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하였다. 2023년 7월 현재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함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sup>28)</sup>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한국에서 주요 자동차 핵심부품이 멕시코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패널 결정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자동차 생산량 중 75%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북미 수출 비중은 2018년 56%에서 2022년 68%로 증가하였다.<sup>29)</sup> 2021년 기준 멕시코의

28) USTR. 2023. 2023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Report. p. 13.

29) 김재형. 'K쇼어링' 기획의 땅.. 멕시코-동유럽 뜬다. 동아일보(2023. 11. 8)

자동차 부품에 대한 주요 수입국은 미국(수입 비중 55.0%), 중국(12.9%), 독일(9.7%) 순이며,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4.1%로 6위이다.<sup>30)</sup> 주요 수입 부품은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HS 8708.40), 기타 자동차 부품(HS 8708.29), 그 외 부품(HS 8708.99), 드라이브 액셀(Drive-axles: HS 8708.50), 브레이크 및 관련 부품(HS 8708.30) 순<sup>31)</sup>으로 대부분이 USMCA에서 지정한 핵심부품에 해당된다.

◦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과 수출량(2022년 기준)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생산량(대수) | 218,035 | 295,900 | 286,600 | 206,800 | 219,700 | 264,500 |
| 수출량(대수) | 163,729 | 231,695 | 220,587 | 161,377 | 168,360 | 200,099 |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 2023.

## 통관

###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 (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SF: Importer Security Filling)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2/121981683/1>

30)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 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한눈에 알아보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pageNo=1&recordCountPerPage=10&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196467&pStartDt=&pEndDt=&sSearchGbn=&sSearchVal=&pRegnCd=05&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viewType=&gbn=&hotClipGbn=&updtDt=2022-09-27+10%3A13%3A19&pJobTrendGbnCd=](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pageNo=1&recordCountPerPage=10&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196467&pStartDt=&pEndDt=&sSearchGbn=&sSearchVal=&pRegnCd=05&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viewType=&gbn=&hotClipGbn=&updtDt=2022-09-27+10%3A13%3A19&pJobTrendGbnCd=)

31) 위의 자료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sup>32)</sup>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에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정부조달

###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을 통한 바이 아메리카<sup>33)</sup> 강화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조달 시 자국산 물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Made in Americ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이하 Made in America)에 서명하였고 이후 시행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Made in America’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발표했던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 관련 공약<sup>34)</sup>을

32)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은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임.

33)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미국 정부가 연방조달에서 미국산 물품의 사용을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

34)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바이 아메리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②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기준의 엄격화 ③ 바이 아메리카를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도 확장 ④ 바이 아메리카의 확대 적용 ⑤ 미국선박 우선 사용 ⑥ 바이 아메리카 관련 무역규범 개선

이행하기 위한 시행조치 중 일부로 미국 연방조달에서의 바이 아메리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예외 적용의 관리 강화,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의 엄격화이며, 항목별 주요 이행조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를 위해 자국산 물품의 인정 기준을 현행 55%(철강 95%)에서 상향 조정하고, 자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우대 기준도 현행 20~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자국산 물품을 검증하는 방식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sup>35)</sup>으로 변경한다. 바이 아메리카의 예외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국장(Made in America director)을 신설하고, 정책 국장은 연방조달규정(FAR)의 예외품목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예외적용 인정 절차도 강화하였다. 또한 상용 물품<sup>36)</sup>에도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백안관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보고 절차 시스템도 마련한다.

| ◦ Made in America 주요 내용 |                                 |
|-------------------------|---------------------------------|
| 구분                      | 이행 조치                           |
|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               |
|                         | 자국산 물품 가격 우대 상향 조정              |
|                         |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변경                 |
|                         |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제도 도입       |
|                         | 자국 공급업체 스카우트(Supplier Scouting) |

- [국내 공급망 개선] 의약품뿐 아니라 다른 필수 분야(에너지, 정보보안, 반도체, 통신인프라, 필수 전자기술 등)의 국내 공급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조치] ① 연방정부조달에서 제로탄소 자동차 구매 의무화 ②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건물 및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서 환경기준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35) 이전에는 Component Test 방식을 적용해왔으며, 이는 전통적인 구성요소 측정 방법론으로 비용만을 고려한 검증 방식임.

36) 상용물품(COTS: Commercial off-the-shelf)은 조달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에 따라 상용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 대상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구분         | 이행 조치                            |
|------------|----------------------------------|
| 예외 적용의 엄격화 | 바이 아메리카 예외품목 리스트 정기적 검토          |
|            | 바이 아메리카 예외 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
|            |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 이행체계의 강화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전담 기관 신설           |
|            |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의 투명성 제고             |
|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행상황 보고 의무화           |
| 기타         | 이전 행정명령 폐기 및 개정                  |
|            | Jones Act에 대한 지지 확인              |

자료: 박해리(2021),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pp.5 표2. 인용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행정부에 비해 강화되었으며, 본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행조치들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공급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당초 바이 아메리칸 플랜에서 언급되었던 국가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정책, 기후변화 조치 강화 등은 모두 정부조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향후 미국 조달시장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조달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BABA Act)」 도입

미국은 2021년 11월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을 제정하였고 동 법은 2022년 5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공공인프라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 의무를 규정하는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BABA Act)」<sup>37)</sup>를 포함한다. 「BABA Act」는 연방재정지원(Federal Financial Assistance)<sup>38)</sup>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산 철, 철강, 제조품 및 건축 자재를 사용할 의무를 규정한다.

37)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Title IX, Subtitle A, Part I – Buy America Sourcing Requirements. Sections 70911–70917.

38) 연방재정지원은 비연방기관(Non-federal entities)에 지원되는 보조금(grants), 지원협정(cooperative agreement), 비금전적 지원(non-cash contributions), 직접지원(direct assistance), 융자(loans), 융자 보증(loan guarantees), 기타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BABA Act」의 도입 이전 공공인프라 조달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Buy America Act(이하 BAA)」였다. 그러나 「BAA Act」는 공공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만 적용된 반면, 이번에 도입된 「BABA Act」는 공공교통 뿐 아니라 화물, 발전설비, 건물, 전기차 관련 인프라까지 광범위한 인프라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특히, 「BABA Act」는 건축 자재(Construction materials)를 바이 아메리카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미국내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축자재(비철금속, 플라스틱, 폴리머(polymer) 제품(PVC, 복합건축자재, 광섬유 케이블에 사용되는 폴리머 등)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 것이어야만 조달이 가능하다.

「BABA Act」는 이전 규정인 「BAA Act」와 비교할 때 인프라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건축 자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인프라 조달의 예외적용 절차도 강화하는 등 국외조달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한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BABA Act」의 도입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 진출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건축자재(플라스틱, 폴리머 등) 조달시장과 미국이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전기차 인프라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연방조달규정(Federal Procurement Regulation) 개정안 발효

미국은 2022년 10월 25일 연방조달규정 개정안을 발효시켰다. 본 개정안은 연방조달기관의 자국산 구매 의무에 대한 강화된 조치들을 포함한다. 먼저 FAR개정안은 국내산 인정기준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2022년 10월 25일 발효 이후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향후 국내산 인정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2024년 1월에 65%, 2029년 1월에 75%)도 포함한다. 단, 대체적용기준(fallback threshold)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전의 국내산 인정기준(5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외적인 경우’는 ①조달기관이 개정된 국내산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건축 자재를 찾을 수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 ②장기간에 걸

친 조달계약이 개정안 발효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다. 두번째, FAR개정안은 핵심 제품 및 구성요소(Critical Products and Components)에 대해 추가적으로 국내산 가격 우대 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현재 국내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혜택은 대기업 조달 20%, 중소기업 조달 30%, 국방부 조달 50%이며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가격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FAR개정안에서는 가격 우대 혜택을 받는 ‘핵심 제품 및 구성품’ 리스트와 가격 우대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조달 기관의 ‘핵심 제품 및 구성품 조달에 대한 상세보고서’ 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 자국산 검증(Domestic Component Test) 방식을 개선하여 2단계 검증(Two-part test) 방식을 도입한다. 2단계 검증방식 요건은 ①최종 생산품이나 건축 자재가 미국 내에서 제조(manufactured)되어야 하고, ②국내 생산비용이 총비용의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연방조달규정 개정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미국 연방조달 시장 진출 규모가 크지 않고, GPA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양허하한(Threshold) 이상 조달에 대해서는 미국산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나 연방조달규정 개정안은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한 자국산 가격 우대, 국내산 검증에 대한 방법론, 예외적용 범위와 절차의 강화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진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sup>40)</sup>

## 산업별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 자국산 물품 구매 및 미국 내 생산, 제조, 고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을 발표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39)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제조달협정을 맺은 양허국가(designated country)이므로 연방조달규정은 GPA 양허하 안선 \$183,000 이하 조달에만 적용된다.

40) 국내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우리 제품의 기술력이나 AS 및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예외적용을 받아 진출할 수 있는데, 예외적용 절차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 경쟁력 있는 조달품목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행정적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미국시장 진출 리스크가 커진다.

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했고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도 개정하였다. 바이든 정부 1년차에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2년차에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다(이상 다음의 표 참고), 그리고 3년차부터는 각 지자체와 부처, 산업군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의 이행 동향(2021~22년) |                                                                                                                                                                                                    |                                                                                                                                                                            |
|---------------------------------------|----------------------------------------------------------------------------------------------------------------------------------------------------------------------------------------------------|----------------------------------------------------------------------------------------------------------------------------------------------------------------------------|
| 일자                                    | 조치                                                                                                                                                                                                 | 주요 내용                                                                                                                                                                      |
| 2021.1.25.                            | 바이든 대통령이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조달 부문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 공언</li> <li>- 주요 정책목표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체계 개선 △예외적용 관리의 엄격화 △조달절차의 투명성 제고</li> </ul> |
| 2021.1.25.                            | 바이 아메리카 정책 전담기관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실(MIAO)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조달기관 및 연방재정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이행을 관리</li> <li>- MIAO에서 각 연방조달기관의 예외적용을 총괄</li> </ul>                                  |
| 2021.6.11.                            | 실행지침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Domestic Sourcing and Reducing the Need for Waivers from Made in America Laws' <sup>41)</sup>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조달 촉진과 예외적용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li> </ul>                                                                                          |
| 2021.11.15.                           | 「인프라법」 제정<br>* 발효는 2022년 5월 1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재정지원이 투입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바이 아메리카 강화(BABA Acts 도입, 적용대상 인프라 확대, 건축 자재를 바이 아메리카 적용 대상에 포함)</li> </ul>                             |
| 2021.12.20.                           | 실행지침 'Identification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nfrastructure Programs Subject to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Provisions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sup>42)</sup>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BA Acts의 설명,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 이행 계획 스케줄에 대한 설명 및 지침</li> </ul>                                                                      |
| 2022.4.18.                            | 실행지침 'Initial Implementation Guidance on Application of Buy America Preference in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for Infrastructure' <sup>43)</sup>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BABA Acts의 적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적용대상 인프라, 물품에 대한 설명, BABA Acts의 예외적용 절차 및 제출 정보 등)</li> </ul>                          |



| 일자          | 조치                 | 주요 내용                                                                                                                           |
|-------------|--------------------|---------------------------------------------------------------------------------------------------------------------------------|
| 2022.10.25. |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 발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li> <li>-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한 자국산 우대 강화</li> <li>-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개선</li> </ul> |

자료: 박혜리(2022), 「최근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p.4, 표1 재인용.

2023년 2월 15일 미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련 표준 및 인프라 투자법 적용에 있어 ‘바이 아메리카 요건’에 대한 이행지침을 발표했다<sup>44)</sup>. 본 지침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내 조립 및 생산 의무’가 즉시 적용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충전기는 부품 비용의 55% 이상 국내산 의무가 적용된다.

2023년 2월 8일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연방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sup>45)</sup>. 이에 따라 모든 연방 인프라 사업에서 자국산 건축자재(비철금속,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개 품목)에 우대조건을 제공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국정 연설 직후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전환했다<sup>46)</sup>. 2024년 3월에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면제 조치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는데, 본 지침에서는 광역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7)</sup>.

41) Memorandum for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M-21-26), 2021년 6월 11일 발표.

42) Memorandum for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M-22-08), 2021년 12월 20일 발표.

43) Memorandum for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M-22-11), 2022년 4월 18일 발표.

44) <https://www.fhwa.dot.gov/construction/contracts/waivers.cfm?id=174>

45)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2/08/new-proposed-guidance-to-boost-american-made-goods-in-federal-infrastructure-projects/>

46)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은 특정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바이 아메리카 추진 정책에 따라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음. <https://www.ntia.doc.gov/blog/2023/making-internet-all-right-here-america>

47) ‘Final ‘Buy America’ waiver for \$42B broadband effort unveiled’.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의 트럼프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뿐 아니라 전기차, 건축, 통신 등 기간산업과 관련 산하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산업군에 포함되는 수출 기업은 바이 아메리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취소,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 경쟁정책

### 미국,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입법으로 경쟁정책을 강화

2021년 6월 11일 미국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bipartisan) 법안 패키지이다. 미 하원은 2020년 10월 6일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지배력 행사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플랫폼 반독점 법안은 그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해당 패키지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이 포함된 총 5개의 개별 법안으로 구성된다.<sup>48)</sup>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 법안은 ①「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②「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③「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④「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4/02/administration-releases-final-buy-america-waiver-for-42b-broadband-effort-00142904>

48) 장영신, 강구상(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1.8.19.) 참고.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이며 그 외에 미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의 업무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은 「합병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이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covered platform operator)의 차별적 행위의 불법성을 규정하고,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금지한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은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행위를 규제한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서비스 전환 비용 및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규정이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와 플랫폼간 서비스 상호운용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반독점법 패키지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반독점 규제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기존 경쟁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기존 경쟁법은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등을 강조하였으나 이번 반독점 법안은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측면을 강조한다.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도입은 미국 내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장의 경쟁환경이 개선되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등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경쟁정책의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쟁법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규제의 논의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발표<sup>49)</sup>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 9일 미국 경제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본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시장의 반경쟁적 구조 및 관행, 공공 부문의 경쟁 제한적 규제로 인한 경쟁의 감소가 현재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며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면서 경제개방의 혜택이 자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인종·소득·복지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행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시장 집중·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공언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각 부처들도 경쟁촉진을 위한 조치(총 72개 조치를 명시)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하였다.

행정명령은 총 6개의 조항(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명령 적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Section 6. General Provisions)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규정은 5개이다. 첫째,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행정명령의 정책적 방향성(Section 1. Policy)을 제시하였다.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제를 위해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산업별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범정부적 차원 경쟁정책 집행을 법적근거(Section 2. The Statutory Basis of a Whole-of-Government Competition Policy)를 제시하였다.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과 개별 부처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부처간 협력(Section 3. Agency Cooperation in Oversight, Investigation, and Remedies)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정부의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는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

49) 장영신, 강구상(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21 No.16 의 내용을 정리함.

한다. (Section 4. The 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 백악관 내에 경쟁당국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를 설치하고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다섯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Section 5. Further Agency Responsibilities). 각 부처들은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과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미국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정책 방향    |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제를 위해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 |
| 법정부적 경쟁정책 추진            |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과 산업별 법률을 운용하는 개별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법정부적인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이 필요   |
|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 |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는 경쟁당국과 부처간 공조 하에 법정부적 노력을 통해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 설치          | 경쟁당국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설치                                               |
| 각 부처별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각 부처별로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와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규제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타

미·중 무역분쟁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은 중국제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은 상호 보복조치를 시행하였다.

○ 무역확장법 301조에 근거한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경과

|    | 날짜          | 美 → 中 관세부과                          | 中 → 美 관세부과                            |
|----|-------------|-------------------------------------|---------------------------------------|
| 1차 | 2018. 7. 6. | 340억 달러<br>(818개 품목, 25%p)          | 340억 달러<br>(545개 품목, 25%p)            |
| 2차 | 2018. 8.23. | 160억 달러<br>(279개 품목, 25%p)          | 160억 달러<br>(333개 품목, 25%p)            |
| 3차 | 2018. 9.24. | 2,000억 달러<br>(5,745개 품목, 10%p)      | 600억 달러<br>(5,207개 품목, 5~10%p)        |
| 4차 | 2019. 6. 1. | 2,000억 달러<br>(5,745개 품목, 10%p→25%p) | 600억 달러<br>(5,207개 품목, 5~10%p→5~25%p) |
| 5차 | -           | 약3,000억 달러<br>(3,792개 품목)           | 750억 달러                               |
|    | 2019. 9. 1. | 1,120억 달러<br>(15%p)                 | 1,717개 품목<br>(5~10%p)                 |
|    | 2019.12.15. | 1,600억 달러<br>(15%p)                 | 1,815개 품목<br>(5~10%p)                 |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OCUS」, 2019년 24호를 이용하여 저자수정.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통상 분쟁의 완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미·중 통상 협상을 개시하였고 제13차 협상(2019년 10월 10일)을 통해 1단계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0년 1월 15일에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1단계 무역합의문<sup>50)</sup>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및 조정을 시행하고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대중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추가관세 계획을 철회하였다.

50)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경제무역 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_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_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pdf)

마·중 1단계 무역합의문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재권: 기업비밀 절도에 대한 처벌 확대, 모조품 단속 강화, 사업 집행 강화, 악의적인 상표권 등록 제한</li> <li>기술이전: 시장 진출, 인허가 조건으로서 기술이전 요구 금지</li> <li>농수산물: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및 수입 상품 범위 확대</li> <li>금융서비스: 증권/보험 등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자본 보유제한 철폐</li> <li>환율정책: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억제, 거시경제/외환정책 투명성 제고</li> <li>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및 에너지 서비스 구매</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6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19.12.15 예정) 철회</li> <li>기존 1,100억 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15%의 추가관세는 7.5%로 인하 (2.14~)(단, 2,500억 달러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25%는 유지)</li> </ul>                                                                                                                                        |

자료: 이원석 외(2020.1.16.), '마·중 1단계 무역 합의 평가', 통상이슈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른 상호 관세부과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중 간 1단계 합의로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되었다.

2021년 10월 4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 통상당국과 지속 논의할 것이며, 중국 국영기업, 시장접근 제한, 보조금, 지적재산권 탈취 등 비시장적 경제관행에 대한 우려를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USTR은 관세 예외 조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10월 만료되었던 549개 품목에 대한 예외 조치 중 352개 제품(펌프, 콤프레서, 필터, 밸브 등 산업용 부품 및 제품)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소급 적용하여 관세부과를 면제키로 하였으며, 이는 이후 2022년 말 및 2023년 9월 추가 연장을 거쳐 2023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1~4차, 2,5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 품목           | 품목수   | 대중국 수입액(2018) |       | 대한국 수입액(2018)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제재품목 전체      | 6,842 | 2,715         | 100.0 | 587           | 100.0 |
| 기계류          | 625   | 579           | 21.3  | 136           | 23.1  |
| 전기·전자제품      | 361   | 405           | 14.9  | 40            | 6.9   |
| 생활용품         | 77    | 348           | 12.8  | 2             | 0.3   |
| 휴대폰 및 부품     | 2     | 245           | 9.0   | 4             | 0.6   |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 511   | 222           | 8.2   | 45            | 7.7   |
| 자동차, 자동차부품   | 185   | 171           | 6.3   | 189           | 32.1  |
|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 334   | 128           | 4.7   | 14            | 2.5   |
| 화학공업제품       | 1,279 | 83            | 3.1   | 23            | 4.0   |
| 비금속제품        | 167   | 77            | 2.9   | 8             | 1.4   |
| 목재 및 종이류     | 490   | 73            | 2.7   | 6             | 1.1   |
| 의료, 정밀광학기기   | 216   | 63            | 2.3   | 9             | 1.6   |
| 유리 및 도자제품    | 226   | 62            | 2.3   | 3             | 0.5   |
| 가전           | 74    | 58            | 2.2   | 13            | 2.1   |
| 반도체          | 17    | 47            | 1.7   | 30            | 5.2   |
| 섬유·의복·가죽제품   | 917   | 42            | 1.6   | 10            | 1.8   |
| 농수산물         | 993   | 61            | 2.3   | 7             | 1.2   |
| 화장품          | 25    | 14            | 0.5   | 6             | 1.0   |
| 신발 및 모자류     | 28    | 14            | 0.5   | 0.1           | 0.0   |
| 석유제품         | 62    | 6             | 0.2   | 33            | 5.6   |
| 항공기 및 부품     | 16    | 6             | 0.2   | 7             | 1.3   |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FOCUS』, 2019년 24호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5차, 3,0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 품목         | 품목수   | 대중국 수입액(2018) |       | 대한국 수입액(2018)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제재품목 전체    | 3,792 | 2,729         | 100.0 | 125           | 100.0 |
| 기계류        | 143   | 558           | 20.4  | 5             | 4.3   |
| 휴대폰 및 부품   | 5     | 483           | 17.7  | 44            | 35.1  |
| 섬유·의복·가죽제품 | 763   | 380           | 14.0  | 3             | 2.2   |
| 생활용품       | 89    | 308           | 11.3  | 4             | 3.5   |
| 전기·전자제품    | 96    | 240           | 8.8   | 18            | 14.5  |



| 품목           | 품목수   | 대중국 수입액(2018) |     | 대한국 수입액(2018)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신발 및 모자류     | 169   | 175           | 6.4 | 1             | 0.8  |
| 가전           | 58    | 138           | 5.1 | 8             | 6.6  |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 89    | 107           | 3.9 | 3             | 2.3  |
|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 373   | 60            | 2.2 | 28            | 22.8 |
| 잡품 및 수집품     | 110   | 38            | 1.4 | 2             | 1.4  |
| 목재 및 종이류     | 58    | 38            | 1.4 | 1             | 0.8  |
| 의료, 정밀광학기기   | 53    | 33            | 1.2 | 1             | 1.8  |
| 화학공업제품       | 160   | 31            | 1.1 | 0.4           | 0.4  |
| 귀금속          | 57    | 31            | 1.1 | 1             | 0.6  |
| 비금속제품        | 66    | 30            | 1.1 | 1             | 0.1  |
| 유리 및 도자제품    | 91    | 28            | 1.0 | 0.2           | 0.2  |
| 농수산물         | 1,131 | 19            | 0.7 | 2             | 1.8  |
| 자동차, 자동차부품   | 13    | 7             | 0.3 | 0.3           | 0.3  |
| 시계류          | 157   | 6             | 0.2 | 0.007         | 0.0  |
| 악기류          | 41    | 6             | 0.2 | 0.4           | 0.3  |
| 철도 및 부품      | 1     | 5             | 0.2 | 0.03          | 0.0  |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OCUS』, 2019년 24호

2022년 5월, USTR은 美 무역법 307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 301조 관세 전반에 대한 4주년 정례 검토를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9월 2일, USTR은 의견수렴 결과 미국내 산업계로부터 유지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1차, 2차 관세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연방 관보에 공고하였다.

2023년 12월, USTR은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별도 면제 중이었던 77개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제품(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에 대한 면제 조치를 2023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관세 면제 기간 연장 및 공개 의견수렴이 대중 관세 관련 결정과 4주년 정례 검토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2024년부터 관세 면제 항목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美 재무부·상무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USTR, 美 노동계는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정례 검토 결과 발표 등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USMCA 개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말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미국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집행, 노동 및 환경 규범,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한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s)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USMCA 개정의정서 및 이행법안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구성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규칙을 도입하는 등 집행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규범 및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멕시코에 한정) 노동 담당관(Labor Attachés), 환경 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Attachés) 제도 및 미국 의회로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 등의 규정이 마련되는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이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역내 노동가치비율 요건을 강화하여 시간당 최소 16달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에 사용된 철강의 70% 이상이 역내산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역내산 철강 수요의 진작을 도모하였고,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승용차와 경량 트럭의 경우 기존 NAFTA에서 규정한 북미 역내부가가치 비율인 62.5%를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최종적으로 북미산 비중을 75%에 맞추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생물의약품에 대한 10년간의 자료 독점,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권 인정 및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추가 3년간의 정보 독점 보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의약품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와 달리 USMCA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금지를 못하도록 이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localization) 조치 요구 금지는 물론 소스 코드 공개 금지 역시도 의무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USMCA 개정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규정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하고 노동과 환경 규범에 대한 강화된 이행과 모니터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USMCA 개정의정서와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덧붙여, 미국은 USMCA를 통해 반도체·전기차 등 분야를 포함한 강력한 지역경제 블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2023년 1월에 개최된 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도체 투자 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 국한해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터리 구성품의 경우에도 북미산 비중을 50%(2023년 기준, 2028년 100%)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 영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EU<sup>51)</sup>는 유럽의 27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로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은 크게 증가해 왔다(2002~08년 연평균 16.8% 증가).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한·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 영향으로 2010년대 들어 수출은 정체,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역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다만 2020년대 들어서는 2021년 1,259.4억 달러, 2022년 1415.0억 달러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EU 상품 수출은 681.8억 달러, 수입은 678.6억 달러, 무역수지는 3.3억 달러 흑자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상품 무역 전체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이다.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15.8%), 정밀화학원료(9.1%), 자동차부품(6.0%), 선박해양구조물·부품(5.8%), 철강판(4.5%)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13.7%), 반도체제조용장비(9.7%), 농약·의약품(8.6%), 신변잡화(3.7%), 반도체(3.1%) 등이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은 110.9억 달러, 수입은 189.4억 달러로 7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44.6%), 기타사업서비스(29.8%), 지식재산권사용료(7.5%), 기타서비스(7.0%), 여행(4.1%),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4.0%)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32.1%), 여행(24.5%), 운송(23.1%), 지식재산권사용료(7.0%),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6.3%) 등이다.

51)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함.

한국의 대EU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908.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누적금액의 11.5%(3위)를 차지하고 있다.<sup>52)</sup>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EU 투자는 총 428.6억 달러로 주요 투자 대상국은 룩셈부르크(44.5%), 헝가리(10.3%), 프랑스(8.9%), 폴란드(8.6%), 아일랜드(6.8%) 등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42.3%), 제조업(25.5%), 부동산업(18.2%), 건설업(3.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3.1%) 등이다.

EU의 대한민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997.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4.0%(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EU의 대한민국 투자는 총 277.8억 달러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32.5%), 몰타(31.8%), 독일(12.9%), 룩셈부르크(7.3%), 프랑스(5.1%), 아일랜드(4.3%) 등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34.3%), 화공(19.7%), 정보통신(13.5%), 도·소매유통(7.8%), 전기·가스(4.3%), 운송·용기계(4.2%) 등이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로 EU를 탈퇴한 영국에 대한 2023년 한국의 상품 무역은 수출 59.6억 달러, 수입 51.5억 달러이다. 최근 5년 한국의 대영국 투자는 총 36.9억 달러(금융·보험업 등), 영국의 대한민국 투자는 총 55.8억 달러(금융·보험, 화공 등)이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었으며, 이후 EU측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산권 행사 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도 발효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어, EU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법률법인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2021.1.1)에서는 양국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적용하

52)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통계는 기간에 상관없이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에 대한 통계치를 집계함. 이하에서 EU의 대한민국 투자 통계 역시 동일하게 27개국에 대한 통계치를 집계함.

기로 합의하였다. FTA 상대방이 EU 28개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세를 할당, 원산지 및 지재권 규범의 일부 변경이 있었다. 또한 양국은 2022년 2월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개선 협상 개시에 앞서 2023년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EU산 재료·공정 활용 또는 EU 경유 운송 제품도 양국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한시 조항을 2년 추가 연장하였다. 2023년 11월 국민 방문 계기 양국 산업 장관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24년 1월부터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수입 규제

###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유럽위원회는 2021년 12월 식품에 대한 추가 규제 사항을 발표하였다[(EU) 2021/2246]. 동 규정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식품에 특별 화물 검사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조항에 추가하였다. 이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위험에 따른 조치로 한국의 경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 규정 (EU)2021/2246에 따라, 즉석 면류 제품 또는 식물성 식이 보충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EU의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샘플 검사 및 분석 결과가 포함된 공식 인증서(Official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한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발암 물질로, 2021년 8월 한국 라면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 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어 EU로부터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 공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동 사례는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에 대한 EU와 한국의 검출 기준 차이로 인한 것이다. EU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을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량과 합산하여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허용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검출기준[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일률 기준 0.01 ppm]이 적용되며, 2-클로로에탄올은 자연발생 가능한 오염물질로 별도의 검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한국 라면 제품에서 확인된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은 한국에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EU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의 검출량으로 인정되어 검출 기준 초과 시 문제가 된 경우이다.

이후 EU의 정기적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한국산 식이 보충제는 2023년 1월, 즉석 면류는 2023년 6월부터 공식 인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EU국가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즉석 면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의 일정 비율에 대해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강제노동제품 금지 규정안 발표

2021년 9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강제노동 제품 금지 법안 제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부터 1년 후, 2022년 9월, EU 집행위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EU 역내 시장에서의 생산, 판매,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2022.9.14.).<sup>53)</sup> 오랜 논의 끝에 2023년 11월 유럽의회 수정안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EU 이사회 입장문이 나오지 않아 최종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동 규정안은 적용 범위를 특정 산업이나 국가로 한정하지 않아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다.

동 규정안의 이행은 예비, 조사, 조치 등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예비 단계에서는 시민사회의 고발, 특정 제품과 지역에 대한 통계, 기업들이 실행하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강제

53)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53 final,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노동제품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강제노동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EU 역내외를 불문하고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행한다. 마지막 조치 단계는 강제노동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EU 회원국별 담당 기관이 해당 제품의 수출입 금지 및 EU 시장 내 제품을 철수하도록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 유럽에서 최종 생산이 이루어졌다 해도 중간단계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럽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동 규정은 향후 EU이사회 입장문 발표 이후, 3자협의(EU집행위-EU이사회-유럽의회)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적용된다.

## 통관

### EU 수입 통제 시스템(ICS2)

EU의 수입통제시스템인 ICS2(Import Control System 2)는 물적 요소의 이동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ICS1을 개선한 것이다. ICS2에 따르면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EU 회원국 항만 또는 공항에 도착 전에 사전 반입요약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를 통해 각종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NS에 포함되는 자료는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수입되는 상품의 상태, HS Code, 운송방식, 선적지, 하선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렇게 전자적으로 입수된 정보는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공유된다. 도착지 세관에서는 사전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만약 부적절 할 경우 검사 대상이 되거나 입항이 거부되거나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한편 ICS2는 2021년 3월(1단계)부터 시행되어 2023년 3월부터 2단계가 이행되면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단계에서 ICS2의 대상은 항공특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한정되었으나, 2023년 3월 1일부터는 그 대상이 항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되었다. 그리고 2024년 3월(3단계)부터는 해상운송 및 내륙의 수로·도로·철도 화물까지 그



대상이 확장될 예정으로, 사실상 모든 물품에 대해 위험 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

###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 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의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EU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한 「WEEE Directive 2012/19/EU」(이하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소비자가 사용한 후 폐기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국과 제조·유통업체의 의무

첫째, 회원국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유통업체는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기능이 유사한 폐가전을 무료로 반납 받을 책임이 있다. 셋째, 유통업체는 전자제품 판매 면적이 400㎡ 이상인 소매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유사 신규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폐전기 전자제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체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시스템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회원국은 가정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업체나 대행기관이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회원국은 가정 소비자들 이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소비자의 신제품 구매 시 수거·처리비용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일곱째,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연간 최소 수거율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점차 강화된다.

◦ 「WEEE Directive 2012/19/EU」에 따른 회원국의 연간 최소 수거율 목표

| 시기            | 연간 최소 수거율 기준                                                                                                    |
|---------------|-----------------------------------------------------------------------------------------------------------------|
| ~ 2015년       | - 가구당 최소 4kg 또는 회원국에서 전년도 3년간 수거된 WEEE의 평균중량 중 높은 수치                                                            |
| 2016년 ~ 2018년 | -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45%<br>;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총중량/이전 3년간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평균 중량                                       |
| 2019년 ~       | -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65% ;<br>;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총중량/이전 3년간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평균 중량<br>- 또는 회원국내 발생한 폐전기전자제품(WEEE)의 85% |

② 품목군별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 의무화

「개정 지침」은 2015년 8월까지와 그 후로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로 분리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의무화였다.

◦ 2018년 8월 14일까지의 회수 및 재활용·재사용 준비 목표

| 구 분 |                               | 2015년 8월까지 |     | 2015.8~2018.8 |         |
|-----|-------------------------------|------------|-----|---------------|---------|
|     |                               | 회수         | 재활용 | 회수            | 재활용/재사용 |
| 1   | 대형가전 <sup>54)</sup>           | 80         | 75  | 85            | 80      |
| 2   | 소형가전 <sup>55)</sup>           | 70         | 50  | 75            | 55      |
| 3   | IT와 정보통신 장비 <sup>56)</sup>    | 75         | 65  | 80            | 70      |
| 4   | 소비자 장비와 태양광패널 <sup>57)</sup>  | 75         | 65  | 80            | 70      |
| 5   | 조명장치 <sup>58)</sup>           | 70         | 50  | 75            | 55      |
| 5a  | 가스방전 램프                       | -          | 80  | -             | 80*     |
| 6   | 전기/전자 공구 <sup>59)</sup>       | 70         | 50  | 75            | 55      |
| 7   | 완구, 레저 및 스포츠장비 <sup>60)</sup> | 70         | 50  | 75            | 55      |
| 8   | 의료 장비 <sup>61)</sup>          | 70         | 50  | 75            | 55      |
| 9   | 계측기구 <sup>62)</sup>           | 70         | 50  | 75            | 55      |
| 10  | 자동판매기 <sup>63)</sup>          | 80         | 75  | 85            | 80      |

\* 재활용율로 한정

그리고 2018년 8월 15일부터는 적용대상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며, 6개 카테고리(아래의 품목 리스트는 예시임)에 따라 수거 및 회수 비율이 정해지게 된다.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회수 및 재활용·재사용 준비 목표

| 구 분 |                                | 회수 | 재활용/재사용 |
|-----|--------------------------------|----|---------|
| 1   | 열교환 장비 <sup>64)</sup>          | 85 | 80      |
| 2   | 스크린, 모니터류 <sup>65)</sup>       | 80 | 70      |
| 3   | 전구류 <sup>66)</sup>             | -  | 80      |
| 4   | 대형 장비류 <sup>67)</sup>          | 85 | 80      |
| 5   | 소형 장비류 <sup>68)</sup>          | 75 | 55      |
| 6   | 소형 IT 및 정보통신 장비 <sup>69)</sup> | 75 | 55      |

54) 대형 냉각기기, 냉동고, 냉창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요리기구,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쿠커, 난방기기, 전기 히터, 전기팬, 에어컨 등.

55) 진공청소기, 섬유편직기기, 다리미, 토스터, 튀김기기, 커피 그라인더, 전기칼, 커피기기, 헤어드라이어, 칫솔, 면도기, 시계, 저울 등.

56) 자료처리기기, 미니컴퓨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계산기, 노트북, 노트패드,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이프라이터, 포켓 및 책상용 계산기, 사용자 터미널 및 시스템, 팩시밀리, 텔렉스, 전화기, 유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등.

57) 라디오 기기, TV 세트,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하이파이 레코더, 오디오 앰프, 음향기기, 태양광패널.

58) 형광등, 형광램프, 고집적 방전램프, 저압력 나트륨램프, 기타 조명기기.

59) 드릴, 톱, 재봉기, 목재/금속/기타 재료 가공/편치기기, 액체/가스 분사기, 제초기 등.

60) 전기 기차/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기, 전기 스포츠장비, 슬롯머신 등.

61) 방사선기기, 심장기기, 투석기기, 심장순환기기, 핵의학기기, 시험관 진단용 연구장비, 분석기, 의료용 냉동기 등.

62) 연기 탐지기, 난방통제기, 온도계, 기타 측정기기.

63) 온음료 자동판매기, 고체 제품 자동판매기, 냉음료 및 온음료 병행 자동판매기.

64) 냉동/냉창고, 에어컨, 제습기,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65) 표면적 100㎠ 이상 스크린을 가진 장비 : 스크린, TV, LCD 사진액자, 모니터, 랩탑, 노트북 등.

66) 직관/컴팩트 형광등, 고집적 방전램프, LED 등.

67)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스토브, 영상장비, 음향장비, 섬유편직기기, 대형 컴퓨터, 대형 인쇄기, 복사기, 대형 의료기기, 대형 통제장비, 대형 자동판매기기, 태양광패널.

68)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환기장비, 다리미, 체중계, 라디오, 비디오 카메라, 전기/장자완구, 스포츠장비, 레포트 컴퓨터, 연기 감지기, 온도계, 소형 의료기기, 내장형 태양광패널 내장형 소형 장비 등.

69) 휴대폰, GPS, 휴대용 계산기, 라우터, PC, 프린터, 전화기 등.

### ③ 수거·처리시스템 자금 부담

가정 발생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최소한 수거시설로부터의 운반·처리·회수·처분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필요시 소비자로부터의 분리수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제조업체는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자사 제품의 회수·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의 시장 출시 시 폐전기전자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보증하도록 하며, 제조업체는 관련 제도 가입이나 재활용 보험 등의 형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수거·처리·회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제조업체와 사용자간 다른 방식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후 EU 집행위는 2018년에 해당 지침을 다시 일부개정하여, 폐기물 계층 구조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sup>70)</sup>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Directive 2011/65/EU)」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장비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침은 2006년부터 도입되었고, 2011년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부터는 RoHS 2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유럽이사회는 RoHS 지침의 부록 II를 개정한 지침「(EU) 2015/863」을 발표하여 규제물질을 추가하였다.

RoHS 2는 적용대상에 의료장비와 모니터링·통제장비를 추가하고 WEEE와 유사하게 모든 전자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품목을 11개 제품군

---

70)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Directive 2008/98/EC)」에서 언급된 예시: ①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에 대한 요금 및 제한, ②발생 폐기물의 실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 부과하는 쓰레기 계량부담제, ③제품(특히 식품)의 기부에 대한 재정적 보조금 등.

으로 분류하고 있다. RoHS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전기·전자제품은 일정<sup>71)</sup>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부터 유해물질 사용 제한 의무가 적용되며, 2019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적용대상이 명확한 면제 대상 외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② 전기·전자제품의 수리, 재사용, 성능 개선을 위한 케이블과 스페어 부품도 제품과 동일한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된다. ③ WEEE와 유사하게 군사·우주용 장비, 대형 고정 장비·장치, 승객·화물 운송수단과 비도로 이동식 장비, 능동식 인쇄삽입형 의료장비, 태양광 패널, B2B 기반의 R&D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④ 회원국은 기존 지침(2002/95)의 대상범위가 아니면서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2019년 7월까지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⑤ 회원국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기존 6종)와 일부 프탈레이트 물질(DEHP, BBP, DBP, DIBP 4종 추가) 등 총 10 종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RoHS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 대상물질                 | 최대 포함농도 |
|----------------------|---------|
| 수은                   | 0.1%    |
| 납                    | 0.1%    |
| 카드뮴                  | 0.01%   |
| 6가 크롬                | 0.1%    |
| 폴리 브롬화 비페닐(PBB)      | 0.1%    |
| 폴리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 0.1%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1%    |
|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 0.1%    |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0.1%    |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0.1%    |

71) 의료장비와 모니터링·통제장비는 2014년 7월 22일 이후, 검진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통제 장비는 2017년 7월 22일 이후임.

이처럼 EU가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어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 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 영국의 국경검역 및 통관시스템(BTOM), 한국을 포함한 비EU국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영국은 2025년까지 국경검역 및 통관시스템인 국경목표운영모델(BTOM: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구축하여 동물성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경 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식품을 통한 질병과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고 불법 수입에 맞서 동물성식품의 위생검역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년 1월 31일부터 BTOM의 일부 조치가 EU국가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EU국가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sup>72)</sup>

동물성제품(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식품, 동물부산물 등)을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상품에 따른 위험분류체계와 이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칙을 따라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 유래 제품, 동물 부산물은 고위험, 중간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상품과 원산지에 따른 위험에 따라 적절히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리된다.

72) GOV.UK, BTOM risk categories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 imports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summary tables, 2023.3.26.(Updated).

◦ 동물성제품에 대한 BTOM 위험분류체계 및 규정(비EU 국가 대상)

| 위험분류 | 공동 준수사항            | 위생증명서 | 서류 및 화물검사                 | 제품군                   |
|------|--------------------|-------|---------------------------|-----------------------|
| 저위험  | - 사전 수입 통지 제출      | 면제    | 면제 (단, 특정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 가능) | 복합식품복합식품 (상온, 멸균제품)   |
| 중간위험 | (화물도착 최소 1일전)      | 필요    | 검사 가능 (100% 검사 대상은 아님)    | 복합식품복합식품 (상온, 멸균제품 외) |
| 고위험  | - 지정된 국경통제소를 통한 반입 | 필요    | 검사 대상                     | -                     |

주: 복합식품은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원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하며, 동물유래 원료는 육류,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유제품, 달걀, 꿀, 곤충을 말함.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EU의 규정을 차용하여 국경 통관 및 검역,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해왔으나 BTOM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규정 및 국경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영국은 EU국가 및 비EU 국가에 대한 수입규칙, 검역 규정 등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어 수출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환경 규제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0개국(27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EU의 ETS는 3개 온실가스, 즉 CO<sub>2</sub>, N<sub>2</sub>O, PF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73)</sup> 유상할당 비중은 발전의 경우 100%, 산업의 경우 70%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비중이 원칙에 비해 높은 편이다.

73) 우리나라의 ETS는 CO<sub>2</sub>, CH<sub>4</sub>, PFCs, HFCs, SF<sub>6</sub> 등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함.

2019년 12월 EU집행위가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표 시킴에 따라 EU의 ETS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해양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개정이 완료된 ETS에 따라 EU는 도로수송과 건물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도(ETSII)를 2027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2028년까지 ETSII 도입을 1년 늦출 수 있으며, ETSII의 배출권 최고가격을 사실상 €45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기존 산업, 에너지 등 기존 ETS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축(2021년 7월 집행위 제안은 61% 감축)하고, 연평균 배출권 감축율은 2024-27년 간 4.3%, 2080-2030년 간 4.4%으로 상향하였다.<sup>74)</sup> 무상할당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해서 2034년 완전 폐지하며, 감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sup>75)</sup>

##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sup>76)</sup> 방지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률안을 2021년 7월 제안하였다. EU 입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2023년 5월 발효되었으며, 2023년8월에는 전환기간(2023년10월~2025년말)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이행법령이 시행되었다.

---

74) 현 제도 기준으로는 2030년 감축 목표는 43%이며, 연평균 감축 목표는 2.2%/년

75) (2026) 2.5% → (2027) 5% → (2028) 10% → (2029) 22.5% → (2030) 48.5% → (2031) 61% → (2032) 73.5% → (2033) 86% → (2034) 100%

76)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매)하는 것이다. CBAM은 6대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간접배출 및 6대 품목과 관련 있는 전구물질(precursors)과 나사·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비재(downstream)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물질(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유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담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의 부합성, 탄소함량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egated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행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바, EU측의 도입 준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국도 2023년 12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EU의 CBAM과 유사하게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등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부과 품목과 세부 이행 규정은 2024년 실시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부속서 I)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제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체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이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

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sup>77)</sup>,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지,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재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장 등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당·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과일·야채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2023년말 현재 EU의 3개 입법기관(EU이사회, 유럽의회 및 EU집행위)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 중이며, 3개 기관 간 합의에 도달한 경우,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상임위 및 본회의) 각각의 검토를 거치고 관보게재를 통해 법으로 발효된다.

77)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2018년 1월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sup>78)</sup>

2018년 5월 EU 집행위는 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 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 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의 설정, 판매 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의 책임 제고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제정안을 제안하였다.<sup>79)</sup>

그 후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동 지침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 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음료 컵), △생산자책임강화<sup>80)</sup>(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sup>81)</sup>(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sup>82)</sup>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sup>83)</sup>,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78) EU 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79) EU 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2018. 5. 28. 보도자료) 참고.

80)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81)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82) EU 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 12. 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83)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2021년 발표된 플라스틱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한 플라스틱의 일부로 간주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환경에 무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물질(polymer)들의 특성, 연구개발 필요성, 상용화 가능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EU 내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등에 대한 정책방향(Framework on biobased, compostable and biodegradable plastics)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방향은 특정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사용 여부보다는 바이오기반플라스틱의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재료(biomass)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재료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중(양)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생분해성(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지,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 예정이다. 퇴비화(자연상태에서 유기물질로 분해) 가능한(compostable) 플라스틱 역시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기물과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티백, 커피관련 용품(커피캡슐), 과일과 야채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동 정책방향은 시장에 신호를 주고, 민간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EU집행위원회가 EU환경청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sup>84)</sup> 최근의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17,168개 기업이 22,502개 물질에 대해 104,078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9,868건으로 86.3%, 중소기업이 14,210건으로 13.7%를 차지하며,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8.3%, 수입기업이 34%, 제조기업이 26.7%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수/화학물질 수는 독일이 29,289건/11,682개, 프랑스가 11,460건/5,794개, 네덜란드가 10,897건/4,521개, 이탈리아가 9,511건/4,923개 등이다.<sup>85)</sup>

---

84)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85)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한 업무지침을 공개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정할 화학물질 관련 법안의 근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까지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서 구성되는 새로운 EU집행위원회에서 REACH 전면 개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은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대상으로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난연제, 비스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REACH에서는 개별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별로 평가를 통해 규제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앞으로는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과불화화합물(PFAS)<sup>86)</sup>에 대해서는 REACH 전면 개정에 앞서 포괄적 규제(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2023년 1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PFAS 생산, 유통, 이용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제출했고, ECHA는 2024년까지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EU집행위원회에 PFAS 규제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PFAS의 위험성이 입증될 경우 EU집행위는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안을 제안해야 한다.

86) PFAS는 탄소(원소기호 C)와 플루오르(원소기호 F)의 결합체가 포함된 수 천 종류의 화학물질 그룹으로서 절연성, 내열성, 윤활성 등과 함께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대기·토양·물·인체·동식물 등으로 흘러갈 경우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프라이팬 코팅제, 종이·의복 방수처리제, 윤활유부터 반도체 식각용 기체, 군용 및 우주용 장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됨.

## EU 친환경 분류체계

유럽은 2020년 6월 22일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동 규정을 발효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였다. 이로써 그린본드 기준이 마련되어 유럽은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sup>87)</sup>

현재까지 공통의 분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유럽 소비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EU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22년 7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일정 요건하에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었다.

##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이행

EU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증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

---

87)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검색일: 2022. 1. 20)



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운할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3년말 동 법안에 대한 EU 입법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되었으며, 2024년 중 발효가 예상된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 (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sup>88)</sup>(life cycle) 전체에 걸쳐 환경,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활용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분류해 두었다.

88)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함.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량,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계획을 관리·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무역구제 조치

###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발효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이 2018년 6월 8일 발효되었다. EU는 개정된 반덤핑 규칙(2017/2321)을 통해 기존의 무역구제관련 법(반덤핑규칙 2016/103654) 및 상계관세 규칙(2016/103755) 상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EU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사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89)</sup>

본 개정안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규정의 종료에 따른 EU의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바, 직접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의 왜곡 등의 이유로 PMS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EU는 2017년 12월

89)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중국 대상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증대한 왜곡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로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증대한 왜곡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EU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77건(반덤핑 조치 151건, 상계조치 25건, 세이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2022년에 EU가 신규로 조사 개시한 건은 반덤핑 4건(중국 3건, 터키 1건), 상계관세 1건(러시아)이다.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23년 12월 기준,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철강 세이프가드 포함)이며,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현지 자동차, 전자제품 업체 등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으로 우리 정부와 업체가 공조하여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여 19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2021.1월~6월)하였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10개 품목군은 2024년 6월까지, 5개 품목군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해당 조치의 추가 2년(~2026년 6월) 연장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 EU 지재권 보호에 대한 감시 리스트 발표

EU 집행위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정책패키지(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sup>90)</sup>를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 USTR이 매년 발간하는 ‘Notorious Markets List<sup>91)</sup>’를 벤치마킹한 EU 역외시장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리스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sup>92)</sup>)를 발표하였다. 동 리스트는 EU의 기업, 협회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R 침해가 의심되는 시장(온/오프라인 마켓) 관련 의견수렴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시행하고, Europol, EUIPO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R 침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실제 시장 등 4분야로 분류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의 52개의 EU 역외 웹사이트 및 시장을 감시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동대문 시장이 2018 EU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2020년 수정된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서는 개선 사례(Positive development)로 소개되면서 제외되었으며, 2022년 작성된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마켓은 포함되지 않았다.

## 정부조달

###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시행

EU 집행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가에서 보조금(foreign subsidy)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전략산업, 중요 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럽 핵심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우려하여 2023년 1월부터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을 시행하고 있다.<sup>93)</sup> 동법 제정은 회원국이 역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state

90)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707-F1-EN-MAIN-PART-1.PDF>(검색일:2018.12.21.)

91)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2017-notorious-markets-list>(검색일:2018.12.21.)

92)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검색일:2018.12.21.)

aid)은 집행위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반면, 역외 기업은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유럽에 진출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역외보조금은 ①제3국 정부, 또는 제3국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s)가 ②EU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혜택(benefit)을 부여하고, ③그와 같은 혜택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한 개 이상의 기업 또는 산업에 한정되는(specific) 경우를 의미한다<sup>94)</sup>. 역외보조금 규율 수단은 ①제3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수령한 기업이 EU에서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결합을 하거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신고 의무 부여 및 ②역외보조금으로 역내시장 왜곡 혐의가 있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집행위가 직권조사 실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역외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위는 이를 수령한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기업결합 금지, 역외보조금 반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른 기반시설 접근 허용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역외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EU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주요 내용

| 구분    | M&A         | 공공조달           | 기타                                                           |
|-------|-------------|----------------|--------------------------------------------------------------|
| 규제 수단 | ◦ 기업결합 사전신고 | ◦ 공공조달 참여 사전신고 | ◦ 직권조사<br>* 신고요건 미만의 기업결합·공공조달을 포함,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 |

93) 동법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집행위의 직권조사 권한,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사전신고 의무 조항이 적용 개시되었다.

94) 제3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 중 특정성(specificity) 및 혜택(benefit)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외보조금으로 인정된다.

| 구분    | M&A                                                                                                                                                                                                                             | 공공조달                                                                                                                                                                                       | 기타                                                                                                                                                                                                                                                                                                                                                                                                 |
|-------|---------------------------------------------------------------------------------------------------------------------------------------------------------------------------------------------------------------------------------|--------------------------------------------------------------------------------------------------------------------------------------------------------------------------------------------|----------------------------------------------------------------------------------------------------------------------------------------------------------------------------------------------------------------------------------------------------------------------------------------------------------------------------------------------------------------------------------------------------|
|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이 EU에서 설립되고,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li> <li>○ 최근 3년간 제3국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 규모가 5천만 유로 초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li> <li>○ 최근 3년간 제3국별로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은 경쟁 왜곡 가능성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li> <li>○ 단, 다음 유형의 보조금은 경쟁왜곡 효과가 크므로 규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구조조정 계획, 자구노력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li> <li>(ii) 무제한적 채무 보증</li> <li>(iii) OECD 공적 수출신용 협약에 위반되는 수출금융 조치</li> <li>(iv) 기업결합 직접 지원 보조금</li> <li>(v) 공공조달에서 부당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li> </ul> </li> </ul> |
|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li> <li>○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 금지</li> <li>○ 예비조사(25영업일) 후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심층조사(90영업일+20영업일)</li> <li>○ 미신고,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금지결정 불이행 시 매출액의 10% 이내 과징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li> <li>○ 심사기간 동안 계약체결 금지</li> <li>○ 예비조사(20영업일) 후 필요 시 심층조사(110영업일+20영업일)</li> <li>○ 미신고시 매출액의 10% 이하 과징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권조사: 예비조사 후 경쟁왜곡이 의심되면 심층조사(개시일부터 최대한 18개월내 결정 노력)</li> <li>○ 경쟁왜곡 효과와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위법성 판단</li> <li>○ 특정 분야 등에서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시장조사가능</li> </ul>                                                                                                                                                                        |
| 시정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인정될 경우, 조건부 승인 또는 기업결합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으로 인해 저가 입찰 등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조사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li> <li>○ 집행위가 제재 부과(보조금 반환, 투자제한, 자산매각 등)</li> </ul>                                                                                                                                                                                                                                                                                    |

자료: 법무법인 태평양(2022.5.31.), 'EU 신(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Legal Update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되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는 EU의 전략산업이면서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심한 산업으로 EU내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특히, M&A나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향후 EU집행위가 발간하는 역외보조금 평가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역외보조금 규정(FSR) 이행 본격화

EU는 2023년 7월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시행하였는데, 최근 심층조사를 개시하면서 본 규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상품 교역에 대한 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에 기반하여 규제할 수 있으나 기업결합, 정부조달 등 상품 교역 이외 분야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EU는 수출국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자 FSR를 도입하였고, 특히 중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 집행위 발표에 따르면 규정 도입 이후 100일 동안 공공조달 분야에서 100건<sup>95)</sup> 이상, 기업결합은 53건<sup>96)</sup>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기업들이 규정 불이행에 다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달 관련 FSR은 주로 중국의 국영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불가리가 교통부 철도차량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중국 CRRC, Qingdao Sifang Locomotive에 대해 심층조사를 개시하였다<sup>97)</sup>. 또한 루마니아 정부의 태양광 발전 공공조달에 참여한 중국 Longi의 독일 자회사, 중국 국영기업인 Shanghai Electric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개시하였다<sup>98)</sup>.

중국에 대한 EU의 규제 강화는 EU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우리기업들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EU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SR 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신고와 관련정보 파악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리스크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95) <https://public-buyers-community.ec.europa.eu/news/100-days-public-procurement-notifications-under-foreign-subsidies-regulation>

96)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document/download/22197012-2036-4b1e-8b02-0eb8b2d6e666\\_en?filename=kdar24001enn\\_competition\\_FSR\\_brief\\_1\\_2024\\_100-days-of-FSR-notification-obligation.pdf](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document/download/22197012-2036-4b1e-8b02-0eb8b2d6e666_en?filename=kdar24001enn_competition_FSR_brief_1_2024_100-days-of-FSR-notification-obligation.pdf)

9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887](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887)

9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80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803)

WTO 보조금협정에 기반한 기존의 보조금 조사와 FSR에 기반한 보조금 조사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 규정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FSR은 보조금협정에 비해 조사당국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EU 시장에 진출하는 제3국 기업을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EU는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보조금 조사와 더불어 보완적으로 FSR도 활발하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sup>99)</sup>

## EU 공공조달 입찰 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참여 제한

역외보조금법에 따라 규모 25,000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제3국가별로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수혜 내역과 수혜 예정인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계약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사전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계약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를 거쳐 보조금으로 인한 저가 입찰로 판명될 경우 ‘부당한 혜택(unduly advantageous)’<sup>100)</sup>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어 조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액의 1% 이내의 과징금을, 보조금 수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최대 3년간 공공조달 입찰에서 배제된다.

동 법을 통해 처음 시행되는 정부조달 부문에서의 역외보조금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은 EU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직·간접적인 조달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EU의 경쟁업체의 신고 남발, 불필요한 조사 및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

99)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10>

100) 공공조달의 경우 역내시장 왜곡 효과는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역외보조금법 제27조 참조)



## 외국인직접투자 사전심사제도 도입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U도 2016년 중국 Midea가 독일 로봇제조회사인 Kuka를 인수할 때 유럽 내에서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의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LP가 독일 반도체 회사인 Aixtron의 인수를 시도했을 때, 독일 정부가 처음에는 투자를 허용했다가 다시 허가를 철회하고 재심사한 후, 안보상의 이유로 동 투자 거래를 최종 불허한 바 있다.

당시 EU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왔으나, 점차 첨단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M&A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FDI가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사전심사 제도<sup>101)</sup>를 도입하게 되었다.

EU의 FDI 사전심사 규정은 2017년 제안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회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동 규정은 안보 및 공공질서에 근거하여 EU 회원국들의 FDI 사전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EU 회원국들 간 또한 EU 집행위와 회원국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단기술, 식량·에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사전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sup>102)</sup> EU 회원국에서 이러한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그 국

101) 동 제도는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임. EUR-Lex의 동 문건 (<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참고.

102) 동 규정의 제4조 1에서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

가는 투자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에 대해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통보 받은 EU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해당 투자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EU 회원국은 자국의 사전심사 결과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의 FDI 사전심사 제도는 EU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되, 투자 유치 회원국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는 협력에 기초하고 있어 동 제도의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신보호주의의 확산 속에서 EU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동 제도를 찬성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이 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EU의 FDI 사전심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되어 나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FDI 규제가 당초 중국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점차 첨단기술 및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4년 1월, FDI 사전심사제도 개정에 대한 EU 집행위 제안서 초안이 나온 바, 향후 구체적인 개정 진행 결과와 EU 역외 기업들의 EU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 이탈리아 외국인투자 심사강화(Golden Power)<sup>103)</sup>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심산업 기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Golden Power」

---

는 특히 (a) 에너지, 운송, 수자원,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우주, 국방, 선거 및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는 물리적·가상적 중요 인프라와 그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토지 및 부동산과 민감한 시설, (b)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학을 포함하는 (EC) No 428/2009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술 및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c) 식량 안보, 에너지, 원자재를 포함한 중요 투입물의 공급, (d) 개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e)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03) 박진석(2021). 「이탈리아 외국인투자 심사강화 법률 Golden Power 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22일)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방산, 국가안보, 인프라(에너지, 교통, 통신), 고 기술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심사가 강화되었다. 이후 2019년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모바일 통신(브로드밴드, 5G 등)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탈리아의 핵심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심사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즉 E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① 핵심 인프라(에너지, 교통, 수도, 보건, 통신, 언론, 데이터 프로세싱 및 저장, 항공우주, 방산 관련 전자전기, 금융 인프라 및 인프라를 위한 토지매입 등) ② 핵심기술(AI, 로봇,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술, 방산, 에너지 저장, 핵관련 기술 및 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③ 핵심 산업동력 및 자원(에너지, 산업재의 원재료, 식량 안보) 등으로 심사대상이 확대되었다. 개정된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장되고 있어 연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산 및 국가안보 산업은 EU기업과 비EU기업 모두 신고대상 기준이 동일(3~5% 이상의 지분 취득)한 반면 이외 산업에서는 EU 및 비EU 기업간에 신고대상 기준이 차이난다. EU기업은 의결권을 보유한 지분 5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비EU기업은 1백만 달러 이상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 지분 취득 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기한은 주식 취득 등 신고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심사에는 최소 45일이 소요되며 정부의 임의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 외국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Golden Power를 적용할 수 있다.

##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강화

영국은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최소한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가 영국의 최대 통신

회사 British Telecom에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차원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영국 내 중요 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의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이후에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투자 및 거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었다. 이에 2018년 6월 군사용, 컴퓨팅 하드웨어, 양자기술 등에 이뤄지는 투자에 대해 정부가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기업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29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 1월 4일 발효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보안 및 투자법」에 의하면 첨단소재, 인공지능, 산업용 핵연료, 데이터 산업, 국방, 에너지 등 17개 산업군<sup>104)</sup>에 해당하는 적격법인 혹은 자산<sup>105)</sup>의 주식 및 의결권을 인수 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설립된 투자 및 안보 기관(ISU: The Investment and Security Unit)에 신고해야 한다(의무 사전신고 제도, Mandatory Notification).<sup>106)</sup> 의무 사전신고는 25% 이상의 주식 및 의결권을 신규로 인수하거나 기존 지분에 추가지분이 25%를 초과할 때 마다 해야 한다. 또한 내부 결정 영향력에 있어 내부 의결 안건을 통과 또는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의무 사전신고 누락 시 인수자, 투자자 및 경영진은 벌금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의무 사전신고 대상 인수거래는 무효가 된다.

104) 17개 산업군은 다음과 같음. ①Advanced Materials ②Advanced Robotics ③Artificial Intelligence ④ Civil Nuclear ⑤Communications ⑥Computing Hardware ⑦Critical Suppliers to Government ⑧ Cryptographic Authentication ⑨Data infrastructure ⑩Defence ⑪Energy ⑫Military and Dual-Use ⑬Quantum Technologies ⑭Satellite and Space Technologies ⑮Suppliers to the Emergency Services ⑯Synthetic Biology ⑰Transport

105) 적격법인(Qualifying Entity)에는 기업, 유한책임 파트너십, 기타법인, 파트너십, 협회, 신탁 등이,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에는 토지, 유형자산,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됨 (<https://www.gov.uk/guidanc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acquisitions#contents>).

106) 「국가보안 및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박지혜(2021)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892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8924)

인수거래가 의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자발적 신고제도, Voluntary Notification). 인수거래가 의무 사전신고 대상인지 모호할 경우 자발적 신고를 통하여 거래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또는 자산의 인수합병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인수자 등에게 심사통지를 할 수 있다(콜인제도, Call-in Power). 심사통지 권한은 의무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기간이 없으며, 자발적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5년이다. 다만 거래 종료 후 해당 사실을 신문 혹은 ISU에 공지한 자발적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심사통지 권한은 6개월로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해당 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잠재적인 신고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Guidance)<sup>107)</sup>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17개 산업군에 대한 구체사항에 대한 지침을 현행화하였다.

#### 벨기에 FDI 사전심사 제도 공식 발효<sup>108)</sup>

2023년 7월부터 벨기에에서도 FDI 사전심사 제도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EU의 FDI 사전심사 제도로부터 착안된 것으로 대부분 EU 회원국은 국내법을 통해 FDI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

벨기에의 FDI 사전심사 제도는 EU 제도와 동일하게 안보, 공공질서 및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비EU 국가의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당 상품의 생산역량을 벨기에로 리쇼어링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역내 외국투자자본이 과도하게 유통되는 것을 줄이고 전략적 부문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한계기업이 외국인 소유로 이전되는 투자를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벨기에에는 비EU

107) 영국 국가 안보 및 투자 법 지침(2023) 참고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notifiable-acquisitions](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notifiable-acquisitions)

108) 심은정(2023). 「벨기에 FDI 스크리닝 발효 및 EU 외국인 투자 규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7월 9일)

투자자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외국인투자자가 벨기에 내에서 신규 및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의 경우 또는 기존 경제활동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심사는 투자 거래 규모나 매출액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와<sup>109)</sup> 관련된 벨기에 사업체 또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인 에너지, 방위, 사이버보안, 디지털 인프라 또는 전자 통신 분야의 벨기에 기업 및 단체의 의결권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규정 적용 대상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는 연방심사위원회(ISC: Interfederal Screening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하며, 검토기간 중에는 투자 클로징(거래종결)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미준수 시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경쟁정책

### EU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 시행

EU 집행위는 2020년 7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및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sup>110)</sup>(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을 시행하였다. EU 집행위가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개자 지위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개자 행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거래의 불

109) 특정 분야는 ① 에너지, 운송, 수자원, 건강, 전자통신 및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처리 또는 저장, 항공우주, 방위, 선거 또는 금융, 민감한 시설, 물리적·실질적 핵심 인프라 등 ② 공공(보건) 안전, 국방 및 안보, 군사장비,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공학,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기술, 나노기술, 이중용도품목,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및 자원 ③ 에너지 및 원자재와 같은 필수 공급망 및 식량 자원 ④ 전략적으로 민감한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통제 ⑤ 민간 보안 부문 ⑥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의 보장 ⑦ 생명공학 분야(투자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최소 2,500만 유로 이상) 등이다.

110) EU 집행위(2019), "Regulation 2019/1150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

공정 차단, 플랫폼에서의 배열순위의 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본 규정이 제정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1)</sup> 첫째, 규제 대상인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 ①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③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④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상 이용자 간 계약관계 존재를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는 공정성 증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증진을 위해, 이용 약관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 공개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약관 변경 최소 15일 전에 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와 해당 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시해야 하며, 직간접적인 대가가 배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관·검색엔진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넷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불만 처리를 위해 내부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해 최소2명의 조정관을 임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를 규율하는 규제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측 플랫폼을 이용하는 역내 및 역외 모든 기업들이 중개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숙지가 필요하다.

111) 공정거래위원회(2020),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2호(2020.8.21.) 참고.

##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EU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집행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야 하며, 게이트키퍼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게이트키퍼는 10가지 유형의 핵심플랫폼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 첸)<sup>112)</sup>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서 아래 표에 의한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정량요건 충족 시에는 정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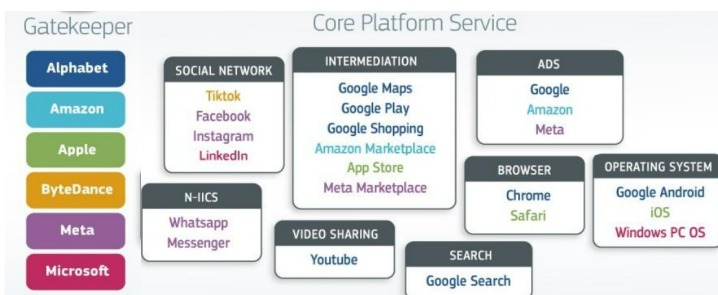
|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                                                                                                                                                                    |
|--------------------------------------------------------------------------------------|--------------------------------------------------------------------------------------------------------------------------------------------------------------------|
| 정성요건                                                                                 | 정량요건                                                                                                                                                               |
| 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br>(significant impac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이상 회원국에서 동일 핵심플랫폼서비스 제공하고,</li> <li>◦ 최근 3년간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li> </ul> |
| 입점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간 EU내 월평균 최종 소비자 수 45백만 이상이고,</li> <li>◦ EU에 등록된 입점업체(business users) 수 연간 1만개 이상</li> </ul>                         |
| 현재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위를<br>(entrenched, durable position)<br>확보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획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동안 매년 위의 게이트웨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li> </ul>                                                                               |

112) 온라인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SNS, 비디오공유 플랫폼, 번호무관 메시지서비스(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가상비서(virtual assistant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온라인 광고서비스 등 총 10개 영역을 의미한다.



2023년 9월 집행위는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 등 총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총 22개 핵심 플랫폼을 디지털시장법 적용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들 6개 게이트키퍼는 2024년 3월까지 자신의 핵심 플랫폼이 DMA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이와 동시에 집행위는 Microsoft의 3개 핵심 플랫폼(Bing, Edge, Microsoft Advertising) 및 Apple의 1개 핵심 플랫폼(iMessage)이 정량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개시하였으며(최대 5개월 소요), Apple의 iPadOS가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조사도 개시하였다(최대 12개월 소요).

#### 게이트키퍼 지정 현황



자료: EU 집행위

한편, DSA는 불법콘텐츠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DSA는 EU 내에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업체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EU 인구의 4,500만 명(EU 인구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유튜브, 틱톡 등 17개) 및 플랫폼(빙, 구글 등 2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0월 13일 미국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대상으로 최초로 DSA에 따라 불법콘텐츠, 허위 정보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이래 알리 익스프레스, 틱톡, 메타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등 DSA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언택트 시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독점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디지털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등장하고 있다. 향후 우리는 EU의 DMA 및 DSA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도입 및 개선 과정에서 국제 논의 쟁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시장의 새로운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본 법안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무역 장벽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5월 25일 EU는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하였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무선인식(RFID) 태그 등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힐 권리), 정보이동권 등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

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로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 등이 있다. 우리정부는 EU와의 약 5년여 간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채택 직후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EU FTA를 보완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 12월 한-EU GDPR 적정성 결정 시행 3주년 계기 동 결정에 대한 EU의 제1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GDPR 시행의 실질적 효과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4년 1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967건과 약 44억 2백만 유로에 달한다. 그 중 2023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아일랜드 정부의 결정이었는데, 메타(Meta) 기업을 대상으로 1월, 5월 각각 3,900만 유로 및 12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9월에는 틱톡(TikTok)을 대상으로 3.45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GDPR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럽 역내 진출 우리 기업들은 개별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국 감독기관의 주요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일 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관계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상대국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1년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714.3억 달러로 낮아졌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76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한국의 대일본 상품 수출은 290.2억 달러, 수입은 476.6억 달러, 무역수지는 186.4억 달러 적자이다.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8.2%), 철강판(8.7%), 반도체(4.9%), 금·은·백금(3.6%), 농약·의약품(3.2%)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5.5%), 반도체제조용장비(9.7%), 철강판(5.6%), 플라스틱제품(3.7%), 합금철·선철·고철(2.6%) 등이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2012년 130.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는 저조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93.6억 달러로 반등하기도 했으나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 8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일본 서비스 수입 역시 2008년(106.2억 달러)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115.5억 달러)을 전후로 증가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 6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4년까지 흑자 이후 2019년까지 적자를 보였는데, 최근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2022년 2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35.9%), 기타사업서비스(29.9%), 여행(15.4%)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운송(32.8%), 기타사업서비스(23.5%), 여행(21.2%), 지식재산권사용료(12.5%) 등이다. 여행서비스의 경우 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2022년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14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일본 투자금액은 58.1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40.0%), 부동산업(25.7%), 도매·소매업(11.0%), 정보통신업(10.0%), 제조업(4.5%) 등이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375.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의 12.8%(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총 46.7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22.3%), 정보통신(17.5%), 화공(17.1%), 도·소매유통(11.3%), 기계장비·의료정밀(8.3%) 등이다.

한국과 일본 간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한·중·일 FTA 협상은 2019년까지 제16차 공식협상이 진행 되었다. 양국의 협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행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향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 2월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다.

## 수입규제

###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환 및 외국 무역관리법」과 「수입무역관리령」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IQ 대상품목 등을 매년 2회 공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수입절차 구조는 경제산업성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꽂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김 등 10개 품목)와 ②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구분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김은 2005년에 對한국 쿼터만 운용하는 방식에서 글로벌 쿼터와 함께 對한국 쿼터를 운용하는 할당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할당방식은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가 김 IQ 배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자격을 갖춘 상사·단체가 경제산업성에 할당 신청을 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에서 수입할당증명서 발급 수령자를 통보하면 상사·단체는 김 수입을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일본은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세부쿼터별 물량 신청 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수입금지 품목

일본의 관세법(제69조)에서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지정 약물(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폭발물, ▲화약류,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법에 정하는 1종 병원체 등,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아동 포르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환송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각 법령에서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화이트국가 제외 및 개별허가 전환

일본은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으로 수출 시 건당 개별허가(기존 포괄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상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다.

2019년 9월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하였으나, 2019년 11월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간 정책대화를 진행하였고, 한국은 정책대화 개최,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수출관리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일본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0년 6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중간재 관련 다수의 품목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우리기업의 부품·소재 조달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 만큼 그 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수출허가 제도

| 구 분  | 일반포괄허가    | 특별일반포괄허가  | 개별허가   |
|------|-----------|-----------|--------|
| 유효기간 | 통상 3년     | 통상 3년     | 통상 6개월 |
| 신청자격 | 모든 기업     | CP기업      | 모든 기업  |
| 신청접수 | 경산성+지역사무소 | 경산성+지역사무소 | 경산성 본성 |
| 신청서류 | 2종        | 2종        | 7종     |
| 처리기간 | 통상 1주     | 통상 1주     | 통상 90일 |

### 일본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일본은 경제규모 및 무역규모에 비해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발동하지 않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일본은 총 8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증인데, 이 8건 모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이며, 현재 발동중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주로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발동중인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8건은 모두 한국(3건)과 중국(5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반덤핑 관세

현재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중인 건은 3건(수산화칼륨(2815.20), 탄산칼륨(2836.40), 아연도금철선(7217.20))이다.

일본의 수산화칼륨(2815.20)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2015년 2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 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조사 전인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년간 49.5%의 반덤핑관세(중국산의 반덤핑 관세는 73.7%)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7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과세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 8월, 과세기간 연장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확정하여 반덤핑 과세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4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탄산칼륨(HS 2836.4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일본은 2020년 6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탄산칼륨은 일반적으로 백



색 분말 또는 무색 액체이며, 주로 액정 패널을 비롯한 유리류 원료, 중화면류에 첨가되는 원료, 세제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산 탄산칼륨의 대일본 수출액은 2019년 약 428만 달러였으며, 2015년부터 소폭 증가추세였다. 2021년 3월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잠정조치(관세율 30.8%)가 내려졌고, 2021년 6월 잠정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6년 6월 23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2021년 3월 일본 니치아강업공사를 포함하는 4개사가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철선(7217.20)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고, 2021년 6월 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22년 12월 한국에 대해서는 9.8~24.5%, 중국에 대해서는 26.5~41.7%의 반덤핑 관세를 5년 동안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 정부조달

### 분산조달방식 운영에 따른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조달청이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집중조달방식이 아니라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산조달방식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다만,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성

(건설공사 및 건설컨설팅 업무 등)과 총무성(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은 전자조달시스템<sup>113)</sup>을 활용하여 참여자격 신청,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조달방식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 시장에 외국공급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동 협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조달 규정, 조달범위, 입찰방식, 경쟁입찰 조건, 입찰 참가자격 획득 절차, 입찰정보 취득 등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sup>114)</sup>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정부조달고충처리대책실)는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물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의 정부조달에 있어서 구체적인 불만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운용<sup>115)</sup>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내각부의 불만 접수·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13) 국토교통성 : <https://www.mlit.go.jp/appli/file0000004.html> 또는 <https://e-bisc.go.jp>

총무성 : [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utatsu/index.html](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utatsu/index.html)  
또는 <https://www.geps.go.jp>

114) 외무성 : <https://www.mofa.go.jp/mofaj/gaiko/wto/chotatu.html>  
또는 <https://www.mofa.go.jp/policy/economy/procurement/index.html>

115) 내각부 : [https://www5.cao.go.jp/access/japan/chans\\_main\\_j.html#chu2](https://www5.cao.go.jp/access/japan/chans_main_j.html#chu2)

###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공고

일본은 매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서 수입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의 생산단계부터 수입 후 일본내 유통 까지 각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검사(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일정한 신뢰도로 법 위반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수를 기본으로 식품군별로 법 위반율, 수입신고건수, 수입증량, 위반내용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연간 총 10만 건 내외에서 검사건수를 정하고 있다. 만약 모니터링검사에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소에 대하여 해당 위반 수입식품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를 통해 동일한 제조자, 가공자 또는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동일한 수입식품에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국의 규제 및 위생관리체제 상황, 해당 수입식품 등의 법 준수 이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수입식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검사명령(전수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특정인에 의해 제조 등이 이루어진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수입식품의 검사건수 전체에 대한 위반율이 5% 이상인 경우로, 생산지 등에서의 식품위생상 관리 상황 등으로 보아 계속 법을 위반하는 식품 등이 수입되어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위반사례, 검사명령 대상 품목 및 사업자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수출 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0개 품목군 등이다. 추가적으로 일본정부는 TPP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표시대상 원료는 원료 함량이 가장 많은 원재료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일정 수준 이상의 GAP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Global GAP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거래에도 통용되는 GAP에 관한 규격·인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일본내 식품기업에 대해 HACCP시스템에 의한 제조공정관리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수입되는 식육은 HACCP에 근거한 위생관리, 우유·유제품 및 수산식품의 위생증명서 첨부를 수입요건으로 하였다. 향후 HACCP시스템에 근거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 강화

최근 일본은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에 들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깻잎, 청고추가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일본은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거나 명령검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sup>116)</sup> 2022년 10월 현재, 방울토마토 1성분, 토마토 1성분, 들깻잎 2성분, 풋고추 3성분, 홍고추 1성분, 참외 1성분에 대하여 일본 검역당국의 명령검사(전수 검사)를 받고 있으며, 파리고추 1성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검사(30%)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국인 만큼 대일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준치를 숙지하여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서비스·투자 장벽

###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일본은 국가 안전보장, 공공질서의 유지 및 공중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외환및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에 의한 일본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4월 말 「외환및외국무역법」을 일부 개정(6월 7일부 적용)하였다. 개정된 일본의 「외환및외국무역법」에 따르면

116) KATI(2021), 「2021년 1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참고.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 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전은 10% 이상 취득시 사전신고). 또한 핵심 업종(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군사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조업, 사이버 보안, 전기·가스·석유, 통신, 수도, 철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7월 15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구 등도 핵심 업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 법 개정에는 따른 대내 투자 축소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정 기준(경영 관여 없는 투자 등) 충족시 사전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기업의 對日 투자시에는 동 개정안에 따른 사전신고 제도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이 요구되며, 심사 기간(원칙 30일)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외환법 개정 주요내용

|               | 개 정 전                                                         |                                                                                      | 개 정 후              |  |
|---------------|---------------------------------------------------------------|--------------------------------------------------------------------------------------|--------------------|--|
| 사전신고<br>출자비율  | 10% 이상 출자                                                     |                                                                                      | 1% 이상 출자           |  |
| 사전신고<br>대상행위  | 회사 사업목적의 변경 등                                                 |                                                                                      | 임원취임, 주요사업 양도 등 추가 |  |
| 사전신고<br>면제 제도 | 경영 관여 없는 투자(주가지수연동 투자 등)<br>비공개 기술, 정보 취득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                                                                                      |                    |  |
|               | 대상<br>예외                                                      | - 국유기업 등 외국정부 영향하에 있는 자<br>- 지정업종 중 무기 제조나 원자력, 전력 등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br>있는 업종에의 투자 |                    |  |

「외환및외국무역법」 외에도 각 업종별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으며, 주요 법령 및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외국인투자 제한 법령 및 규제내용

| 업종        | 법령              | 주요 규제내용                                                                                                                  |
|-----------|-----------------|--------------------------------------------------------------------------------------------------------------------------|
| 광업        | 광업법             | 광업권 취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또는 일본 법인으로 한정                                                                                         |
| 통신업       | 일본전신전화<br>주식회사법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직접 차지하는 의결권 비율과 국내 법인을 통해서 외국인 등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의결권 비율을 합한 의결권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서환을 금지 |
| 방송업       | 전파법,<br>방송법     | 무선국 개설에 대해서, 외국인의 직접 의결권 비율과 간접적 의결권 비율을 합계한 의결권 비율이 5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                                           |
| 수운업       | 선박법             | 일본 선박의 경우 경영총의 3분의2 이상이 일본 국민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음                                                                            |
| 항공<br>운수업 | 항공법             |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등이 임원 또는 의결권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 것 등의 사업허가 요건 존재                                                           |

## 디지털 무역 장벽

### 디지털 분야 규제 동향

일본은 ①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보안 등을 확보한 후, 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Data Free Flow With Trust’ 구상 아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통해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디지털 무역 장벽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체결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양국은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제외하고, 정보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경 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자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상자에 대해 자국내에서의 컴퓨터 관련 설비의 이용·설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자국의 수입·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이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면서 원활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외국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도의 정보 통신 사회의 진행에 따라 개인 정보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기본 이념 및 정부의 기본 방침, 기타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밝히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활력 있는 경제 사회와 풍요로운 국민 생활 실현에 이바지하고, 개인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2017년 개정을 통해 국경을 넘는 정보 이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해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보유한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이전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일본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관련 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관련 정보’란, 인터넷 열람 · 검색 이력, 위치정보, 쿠키정보 등(행태정보, 기기정보 등) 정보 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개인 식별을 위해 다른 정보와 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개인관련 정보를 식별 목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제공자는 제공 받는 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및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국외에서 제공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획 등을 제공하고 본인 동의 획득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의료정보 및 금융정보 시스템의 설치 제한

일본은 의료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취급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정보를 수탁 관리하는 정보처리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국내법의 집행이 미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컴퓨팅 설비를 국내로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日 FISC(금융정보시스템센터, 비영리재단)의 ‘안전대책기준’에서 금융정보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거점은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역(국가, 주 등)에 소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플랫폼사업자(Platform Provider)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일본은 「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보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플랫폼사업자(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플랫폼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로 하여금 유해 정보의 열람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기로서 청소년에 의해 사용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 후 해당 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외 IT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일본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본사 등기를 의무화하였다(2021년 시행). 이를 기반으로 구글, 메타, 트위터 등 복수의 해외 IT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본사를 일본에 등기하도록 일제히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위반시에는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 기타

###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 및 「건설업법시행령」등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건설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의 합계가 4천만 엔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격 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증'과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의 자격증 및 외국에서의 강습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엄격

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 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등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일반 도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등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도로통행이 허용되면 운송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활어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등 양국 간 활어 운반과 수출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운협회 - 전국 항만노동조합 연합회 - 전일본 항만운수 노동조합동맹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약 7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터미널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중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1,248.1억 달러, 수입은 1,428.5억 달러, 무역수지는 180.4억 달러 적자이다. 특히 2023년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는데,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2년 이래 처음이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9.0%), 합성수지(5.7%), 무선통신기기(5.6%), 정밀화학원료(5.0%), 평판디스플레이·센서(3.4%)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3.8%), 정밀화학원료(10.0%), 건전자·축전기(5.9%), 컴퓨터(4.6%), 무선통신기기(4.0%) 등이다.

서비스 무역은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93.4억 달러, 수입이 199.3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수지 역시 5.9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50.7%), 여행(25.0%), 기타사업서비스(7.4%),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6.4%), 지식재산권사용료(5.4%)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가공서비스(28.1%), 운송(23.7%), 여행(22.6%), 기타사업서비스(15.6%) 등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931.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1.8%(3위)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277.1억 달러이며, 제조업(90.9%)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업 중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 서비스업 중에는 도매·소매업(3.2%)이 주요 업종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74.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5%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금액은 12.9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전기·전자(31.7%), 화공(13.8%), 도·소매유통(11.9%), 기계장비·의료정밀(10.4%), 부동산(7.9%), 금속·가공제품(7.3%) 등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한·중 FTA 제1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되면서 2020년 9월까지 제9차 협상이 진행, 이후 2022년 12월까지 후속협상의 회기간회의가 지속되었다. 또한 2022년 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인 RCEP을 발효시켰다.

## 수입규제

###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와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2022년 기준 41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자동수입허가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지방 상무부서나 상무부에서 발급받는데, 베이징 상무부에서의 심사는 대체적으로 까다롭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복잡하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스템 관리를 시행하면서 이전보다는 소요시간이 많이 줄어 10일 근무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

###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화

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징벌적 벌금(7만 1,000~ 71만 달러)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했는데,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 고체폐기물,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하였고,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으며, 2020년부터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IECSC) 2013」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신화학물질 등록은 보통신고(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0T(10T 포함) 이상), 간이신고(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 포함)), 비안신고(신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 등 3가지 신고유형이 있다. 단, 최초 수입 화학품은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 뿐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해 생태환경부에 수입등록된 것이라도 미등록 외국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해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제도**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

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육류·유제품·수산물·별꽃 제품·제비집 관련 생산 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생산·가공 기업은 물론, 식품을 보관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식품첨가제(영양 강화제 포함), 식품 전용 소독제·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업체는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산물, 냉동만두, 건강식품, 견과류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 통관

###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

중국의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으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HDMI 모니터<sup>117)</sup>이다. WCO(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하였다. 중국측은 WCO의 분류의견을 받아들여 HDMI 모니터를 HS8528.59에서 HS8528.52로 6단위 세번을 변경하였다. 단 중국은 국내법으로 운영 가능한 HS 6단위 이후의 HS코드 및 세율 체계를 자의적으로 마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세율(0~15%)의 부과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응은 WCO의 분류의견을 일견 반영한 듯 보이나, 국내법으로 세율구조를 변경하여 과거와 동일한 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WCO의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HDMI 모니터 사례 외에도 여러 품목에서 자의적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

117)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음.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음.

고 있다. 흑양파즙 품목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이를 야채주스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 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 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HS코드 변경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해관(세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목분류의 적용을 추진하는 ‘전국 해관(세관) 통관 일체화’라는 통관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세관의 선진국형 행정제도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통관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상품검험(해관총서 상품검험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



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9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관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중요한 식품 수출의 경우 긴 통관시간이 수출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통관일체화 개혁 실시 후에는 통관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다. 또한 검사검역을 샘플 추출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통관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반 통관의 경우 2~3일, 샘플 검사에 해당될 경우 10일 정도의 통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중국도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 인삼·홍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6년 이상의 인삼(제품류 포함)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은 일반식품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기존 6년근 이상 인삼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원식품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신자원식품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기존 6년근 이상 인삼제품(보건식품)의 등록 및 통관<sup>118)</sup>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118) 중국은 6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위생허가를 요구함. 중국에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할 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중국 질

## 한·중 FTA 사후적용 제한

한-중 FTA에서는 ‘사후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FTA 특례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후적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각성 관할 해관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1년 이내로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포괄 확인이 어려우므로 관할 해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사전조건이 있다. 즉, 통관단계에서 “사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라 해관에 수입신고 외에 ‘보충신고’ 및 중국 해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해 업무 숙지할 필요가 있다.<sup>119)</sup>

###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한 수출제한 조치 시행

중국 내 비료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중국) 국내가격 급등으로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 기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규제 강화를 통해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염소산칼륨도 2022년 4월 1일부터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법정검험검사목록 외 수출입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 시행

중국해관총서는 자국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및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된 법정검험검사목록 외 수출입 제품에 대해 연간 샘플링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범위 및 검사기준을 발표한다.

---

병예방통제센터에서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됨.

119) 이에 대한 근거는 한-중 FTA 협정문,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참고.

2022년 기준, 수입 검사 품목은 학용품, 영유아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구강기구, 전자식비데, 모조악세사리로 노인, 영유아, 학생 등 민감한 사용자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검사의 경우 중국해관총서 연간 계획에 따라 시행 범위가 상이하게 규정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관련 규정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2022년 07월13일부 시행)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은 2023년 10월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기강판), 화학 9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유, 아세톤, 비스페놀A,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실리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4건이다.

2023년 3월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의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를 시작했으며, 10월 한국산 폴리아세탈 수지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2023년 10월 24일~2028년 10월 23일)한다고 공시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 보조금

###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장려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부터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시 지급하던 국가 보조금을 모두 종결하고, 차량구입세 면제/감면 등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2023년 6월 중국 공신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서는 ‘신에너지차 차량구입세 감면 연속 및 개선 관한 정책 공고’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구입한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면제하되 1대당 3만 위안 상한으로 면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 구입한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반액으로 면제하되 1대당 1만 5천 위안 상한으로 감면해준다.

2023년 7월 중국 공신부는 ‘더블크레딧 제도’를 개정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에너지 승용차 표준 차종의 평균 크레딧 40% 내외 하향 조정하고, 크레딧풀제도를 도입한다. 크레딧풀이란 기업의 크레딧 총점(=신에너지차 생산이 많을 경우)이 수요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플러스 크레딧 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크레딧풀로 예치된 플러스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중국의 더블크레딧(双积分) 제도는 내연기관차 연비향상·신에너지차 비중 확대·기술혁신·산업육성에 목적을 두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함. 내연기관차 연비 도달지표와 신에너지차 생산대수 지표로 구성되며 신에너지차 생산비율 및 생산대수가 많은 제조사에 유리하다.

### 철강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부로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무원은 관련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고 철강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수출 관세 인상 및 수출세 환급을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수입을 보면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0%’의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크롬철, 합금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 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

다. 2021년 중국은 광석, 철강, 금속제품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 유출을 막고 자원을 자국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5월 1일부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이 폐지된다. 수출세 환급제도는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성격인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3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공고’(关于提高部分产品出口退税率的公告)에 따라 현재 중국은 자국산 철강 수출기업에 대해 13%의 증치세를 돌려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열연판, 열연롤, 중판, 강관재 등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철강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수출입 세칙(2023)’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부분적인 스테인리스강 판재의 자유무역협정세율을 2022년의 0.8%, 2%, 4.6% 및 6.0%에서 0.4%, 1%, 4% 및 5.5%로 인하했으며, 이 외에도 스테인리스강 잉곳 등 초급 모양 제품 및 스테인리스강 반제품에 ‘0%’의 잠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 로봇 기업 보조금 비중 확대

「중국 제조 2025」에는 2025년까지 로봇·양자컴퓨터·항공우주·신소재·바이오·AI(인공지능) 등에서 세계 강국이 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 기업에 약 3,000만 위안(48억 7,9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AI치헨(AI奇点)이 분석한 중국 베이징시 정부의 로봇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면 R&D, 상용화 등에 걸쳐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2023년 8월 16일 베이징시경제정보화국은 ‘베이징시의 로봇 산업 혁신 발전 촉진 조치’를 발표,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16조의 조치를 제시하고,

고성능 전용 칩, 인공지능 등 로봇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최고 3,000만 위안을 지원할 것과 100억 위안 규모의 로봇산업펀드를 조성해 혁신단체 육성, 기술성과 이전 및 기업의 인수합병 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3월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비전 요강’에서는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로봇, 집적회로, 의료 장비 등 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고, 위험한 일자리의 로봇 대체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2021년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 15개 부처가 발표한 ‘14.5’ 로봇산업 발전기획에서는 2025년까지 로봇 산업 매출액을 연평균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제경쟁력 있는 선도기업, 성장성이 뛰어난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화/잠신화) ‘소거인’ 기업을 육성하며, 국제영향력 있는 3~5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 1월 공업정보화부 등 17개 부처가 발표한 ‘로봇플러스’ 응용행동 실시방안에서는 제조업, 에너지, 의료건강, 양로 및 교육 등 10대 응용중점 분야에서 100종 이상의 로봇 혁신응용 기술 및 솔루션을 돌파할 것과 200개 이상의 수준 높은 로봇 전형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보급하는 한편, ‘로봇플러스’ 응용 레버리지 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자금/자원 지원을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2021년 중국 로봇 시장규모는 839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그 중 산업용 로봇 445.7억 위안, 서비스용 로봇 302.6억 위안, 특수용 로봇 90.7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2021년 중국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66,044대를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 기초, 비대면 선호, 인력 부족 등으로 로봇 시장수요는 급상승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반도체 부족 등 불확실 요인도 공존한다.

2022년 중국의 로봇 산업 매출액은 1,700억 위안 이상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44.3만대, 서비스로봇 생산량은 645.8만대, 특히 산업용 로봇 설치량은 세계 과반수로, 9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통계결과, 2023년 1~3분기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32.05만대이고, 서비스로봇 생산량은 39.3% 증가한 664.77만대이며, 동 기간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1% 증가한 20.7만대, 4분기에는 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2023년 판매량은 0.1% 증가한 28만대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핵심기술 자주적 능력의 꾸준한 제고, 내수 개선 기조에다가 국산 대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미래 로봇시장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광둥성 불산시는 로봇 및 핵심부품 핵심기술 중대돌파프로젝트에 최고 1,000만 위안 보조금, 중점프로젝트에 최고 500만 위안 보조금, 공공혁신(연구개발)플랫폼에 최고 5,000만 위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로봇 제조업체 다이룽(达意隆(002209.SZ))은 2023년 312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획득했다.

2023년 6월 선전시 인민정부는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 고수준 응용 본격화 행동방안(2023-2024년)’을 발표하고, 지능형 로봇, 스마트센터, 커넥티드 카, 스마트 해시레이트 칩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지원계획을 실시하고, 광둥성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업혁신센터 설립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제조업 고품질 발전 3개년 액션플랜(2023-2025년)’을 발표하고, 로봇 사용밀도는 인구 1마명당 360대 도달,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로봇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2023년 1~5월 기준, 중국의 로봇 관련 기업은 56.29만 개이고, 로봇 관련 기업 신규 등록은 7.07만 개로, 전년 동기대비 35.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조달

### 정부조달 관련 법·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2003년 시행)과 「입찰법」(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 기관 또한 중앙·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재정부가 운영하는 정부조달망,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국공공자원교역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입찰정보 취득의 편리성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는 것들도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어 법규와 실제 이행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sup>120)</sup>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다른 국제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120) 중국 「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한·중 FTA는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sup>121)</sup>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챕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 사항과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 조항”을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sup>122)</sup>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일부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

###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16개 분야<sup>123)</sup> 96개 품목이다. 2023년 8월 중국 정부는 <국가인증감독위원회의 강제성 제품인증 인증서와 마크 관리 보완을 위한 공고>(2023년 제12호)를 통해 CCC전자인증서로의 전환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발급된 유효한 서면인증서는 계속 유효하나, 변경 혹은 만기갱신시 전자인증서로 전환된다.

121)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한·중 FTA와 중·스위스 FTA 뿐임. 중·스위스 FTA(제13.4조)도 추후 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122) 한중 FTA 협정에서 정부조달 분야 합의 사항은 제17.13조~제17.17조에 포함되어 있음.

123) 대상이 되는 16개 분야는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전동 기구, (6) 전기 용접기,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8) 전자제품 및 안전 부품, (9) 조영기기, (10) 자동차 및 부품, (11) 농기구, (12) 소방제품, (13) 건축자재, (14) 유아용품, (15) 방폭 전자기기, (16) 가정용 가스 연소기구임.

CCC 인증절차는 총 6단계<sup>124)</sup>로 진행되는데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 2025년 5월 1일부터 스쿠터헬멧 등 중국강제인증(CCC)

### 미취득시 수입 금지

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스쿠터헬멧, 방폭램프, 제어장치 등에 대해, 2025년 7월 1일부터는 상업용 가스연소기구, 난연전선 및 케이블, 수성 내벽도로, 가연성가스 감지 경보제품, 전자좌변기 등에 대해 CC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을 경우 상품의 출고, 판매, 수입을 금지한다.<sup>125)</sup>

###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해관 통합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해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 모두 통일된 기준을 실시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해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124)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으로 이루어짐.

125)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Management for Electronic Toilets, e-Bike Helmets, Commercial Gas Appliances and Other Products, Announcement No. 9, 2024.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現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관 신고 시 사전 식품 라벨 등록(備案) 절차를 취소하고, 식품 라벨자료와 기업 서약서를 제출해 통관을 시킴으로써, 절차는 간소화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 했다. 따라서 제품 수입시마다 기업들은 라벨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한 후, 관련 자료는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수시로 검사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해관의 합병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2019년 해관 총서는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에 관한 공고」를 통해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포장식품 라벨 등록 요구를 취소하고 수입 포장 식품 라벨은 식품 검사 항목 중 하나로 해관에서 식품 안전 및 수출입 상품 검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입한 포장식품이 현장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를 위해 선정된 경우, 수입자는 자격 증명서, 수입한 포장식품 라벨 원본 및 번역본, 중국 라벨 견본 및 기타 인증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새로운 관리 규정은 등록을 취소하였는데 등록제에서 선별검사제(추출제,抽查制)로 변경되었다. 신규 규정은 라벨 심사의 주체 책임을 수입상으로 변경하였는데 수입상은 반드시 수입 포장 식품의 중국어 라벨이 중국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 또는 비안(備案) 진행중인 화장품은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필히 부합되어야 한다. 기존에 등록 신청 혹은 비안 진행 중인 화장품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화장품 등록자, 비안자는 2023년 5월 1일까지 필히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16일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치약제품의 라벨표기 내용 의무화, 제품특징에 따라 라벨에 사용법을 표기해야 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어린이용 치약은 관련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해야하며, NMPA의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에 ‘어린이용 치약’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유해물질이 규제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 잘못된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인체영향,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한 등을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2018년 03월 15일, 공업정보화부 웹사이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공고 2018년 제15호(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公告2018年第15号)”를 발표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도달 관리목록 (제1차)(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达标管理目录 (第一批))”과 “기준도달 관리목록 사용제한 물질 응용 예외목록(达标管理目录限用物质应用例外清单)”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후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한정표준요구에 강제로 부합되어야 하며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 합격평정제도의 관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도달 관리목록 (1차)”에는 모두 12가지(냉장고(용적 $\leq$ 800l), 에어컨, 세탁기(마른 옷 무게 $\leq$ 10kg), 전기 온수기(용량 $\leq$ 500L, 커피 포트, 전기 주전자, 스팀냄비 등 액체 가열기능이 있는 제품 제외), 프린터(와이어 프린터, 디자인 상 종이 이외의 재질만 인쇄 가능한 프린터 제외), 복합기(인쇄지 $\leq$ A3, 인쇄속도 $\leq$ 60장/분), 팩스기, TV, 감시용 모니터(재질로는 CRT, DLP, LCD, LED, OLED 등이 있고 용도로는 보안,

CCTV 모니터, 방송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등), 마이크로 컴퓨터(데스크탑, 모니터, 키보드, 태블릿 PC, PDA 등 포함), 이동 통신 휴대기(위치측정, 단순 통화 기능 웨어러블 제품은 제외), 전화기(PSTN 보통 전화기와 IP전화기 포함)) 종류의 제품이 포함되며, 상응하는 제품 범위 및 정의를 제시하였다.

##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생태환경부는 「수출입업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 제도를 통해 독성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입업격제한유독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되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에 규정된 화학물질들은 특별히 허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출입이 금지된다.

2018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목록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국제 거래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채택 관련 로테르담협약 등에 의한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제한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162개에서 10개로 조정했으며, 새로 수정된 2020년판은 PFOS, 테트라메틸납 등 8개 항목으로 수정했다. 새로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출입 시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수출입업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의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입환경관리통행통관서(环境管理放行通知单(방행단, 유효기간 6개월))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新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新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에 따라 환경관리등기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0년 4월 29일 「新화학물질 환경관리등기방법 (생태환경부령 제12호)」을 개정·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동 방법에서는 과거의 간이신고(簡易申報)를 등록(备案)으로 조정하고, 원래의 일반 신고 대상 중 적은 양에 대한 것을 간이등기로 조정<sup>126)</sup>하는 등 등기 요건도 일부 변경하였다. 특히 데이터 신청 방면에 4개의 주요 조정이 있었다. ①데이터 등급 분류의 제출 요구 최적화: <등기가이드>에서는 출원 데이터를 최소 요구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로 구분함. ②환경 리스크 평가 분석 보고서와 사회 경제적 효익 분석 보고서의 요구사항 규정 ③ 테스트와 비테스트 데이터 요구 사항을 세분화함. 최소 요구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는 테스트 보고서로부터, 최소 요구 데이터의 특수 데이터는 주로 테스트 보고서로부터, 기타 요청 데이터는 테스트 보고서로부터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함, ④농약 중간체, 의약 중간체, 수약 중간체의 특수 데이터 요구 사항을 세분화 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되었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물 최대 허용기준<sup>127)</sup>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법규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조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으로 법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126)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일반등기,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간이등기,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신화학물질 단체나 반응체 함유가 2%를 초과하지 않는 중합체 등은 등록 대상 (제10조)

127)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하며, 우리나라의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를 명시하고 있음.

2022년 5월 4일 국무원은 〈新오염물질 관리 행동 방안(新污染物治理行动方案)〉을 발표했고, 관련하여 9월 27일 생태환경부는 〈新오염물질 중점관리 목록(2022년판)(의견수렴 초안)〉重点管控新污染物清单 (2022年版) (征求意见稿) 을 발표하였다. 목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유독유해오염물질, 환경내분비교란물질, 항생제 등 4개 카테고리 14종의 새로운 오염물질을 포함한다. 그 중 대부분은 특수 상황을 제외한 생산·가공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6종은 생산·가공사용 및 수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 수출입금지 6종: Hexachlorobutadiene, Pentachlorophenol, its salts and esters, Dicofol, Perfluorohexanesulfonic acid, its salts and related compounds 3 (PFHxS), DecoloranePlus and its cis and trans isomers, Obsolete category.

##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생산 금지

2020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과 관련된 이행 통지」를 발표하고 2026년을 기점으로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생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한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등록증 증서 유효기간 내 계속 유효하다. 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의료기기로 수리(등록)된 수은 온도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계속 의료기기 기준에 따라 심사 기준을 거쳐 등록을 허가하고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하며, 해당 등록 증서의 유효기간 또한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및 수은 함유 혈압계 제품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sup>128)</sup>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NMPA의 수입의약품등록

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10월 중국 CFDA(現 NMPA)는 신약과 의료기기 시판 승인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한 임상시험데이터를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그 동안은 외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 내 임상시험 수행으로 인해 타국가 시판허가에 비해 6~7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로 중국 시판 승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NMP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sup>129)</sup>된다. 또한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raw data), 생산기록서 등은 영어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NMPA는 중국 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심사과정도 생물학적동등성 허가에서 승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수입제품의 제품기준(specification)은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NMP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입고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128) 2018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시장관리감독총국(SAMR)으로 식품안전 분야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의약품, 화장품 분야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설립되었음.

129)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NMP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NMP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2020년 수정판)」(2021년 6월 1일 시행) 제2장 제13조, 제14조, 제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NMPA는 2, 3등급 의료기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임상 평가를 진행할 때 기존의 문헌 자료, 임상 데이터가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드시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 3등급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중 인체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반드시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 제2등급, 제3등급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외 등록신청자는 지정 국내 기업 법인이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부서에 등록신청 자료와 등록신청인이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부서의 해당 의료기기 시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 의료기기는 등록신청자가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부서의 시판 허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입 의료기기는 제2장 규정에 의해 이미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입 의료기기에 중문 설명서, 라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중문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관련 기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 1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통상 6~9개월, 2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10~12개월, 3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임상시험으로 인해 통상 12~18개월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NMPA는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

고 자국 내 NMP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입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자료로는 해외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의료기기 제조기업 자격증,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리인 등록을 위한 위임장, 해외 정부 의료기기 관리청에서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는 승인 증명서, 적용되는 제품 표준(및 설명), 의료 기기 설명서, 의료 기기 검측 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등록 시험 보고서(2등급, 3등급 의료 기기에 적용), 의료 기기 임상 시험 데이터, 제조자가 발행한 제품품질보증서, 중국 내 제조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승낙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등록증, 중국 지정 A/S 기관의 위임장, 수탁기관의 승낙서와 자격 증명서(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등록을 신청해야 함) 등이 있다.

###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지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2021년 4월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이하 '규범')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sup>130)</sup> 1월 1일부터 화장품 인증(注册)취득인·등록(備案)인은 규범의 요구에 따라 NMPA가 지정한 사이트에 인증·등록한 화장품의 효능 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규범 시행 전 화장품 인증·등록 절차를 마친 제품은 2년 내, 즉 2023년 5월 1일 전 화장품 효능 개요 업로드를 마쳐야 한다. 올해 5월 1일~12월 31일 사이 화장품 인증을 취득했거나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내년 5월 1일까지 개요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위생안전성 검사와 위생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인증서류의

<sup>130)</sup>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321110.html>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NMP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국가약감국(國家藥監局)은 2020년 6월에 「화장품등록비안자료관리규정」을 제정하고, 2021년 5월1일부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중 본문 내용은 총 6장 60조로 총칙, 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 요구, 등록 및 비안 자료 요구, 변경 사항 요구, 말소 연기 등 사항의 요구와 부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자료의 양식과 규범적 요구, 사용자 개통 자료, 화장품 등록 비안 자료, 변경 및 연장 자료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등록 비안 과정에 필요한 신청서, 정보표, 개술표 등의 서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중국 국내 책임자 위임서, 제품수행의 기준, 등록연기 자체검사 상황 보고 등의 샘플 작성과 제품 수행의 기준 편성, 원료 안전 관련 정보의 보고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2022년 12월 중국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 안전기술규범」(GB31241-2022) 강제인증(CCC)을 발표하여 동 규범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표준은 18kg 이하로 사용자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제품에 적용되며 휴대용 사무용품(노트북, PAD 등), 이동통신제품(휴대폰, 무선전화, 무선기 등), 휴대용

오디오/비디오 제품(휴대용 TV, 휴대용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카메라, 캠코더, 녹음펜,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스피커 등), 기타 휴대용 제품(전자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게임기, 전자책, 이동전원, 휴대용 에너지 저장 장치, 휴대용 프로젝터, 웨어러블 기기 등) 등이 해당된다. GB31241은 IEC62133 대비 과전류, 과전압 등의 보호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과충전 조건이 다른 등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다. 따라서 한국 KC인증을 받은 제품 혹은 다른 국제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 시험에서 GB규격에 부적합할 수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sup>131)</sup> 해당 표준의 시행과 더불어 2014년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배터리 및 배터리 팩 안전요구」 표준은 폐지된다.

## 2022년부터 모든 수입 식품기업 대상 해관 등록번호 발급 정책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은 중국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2년에 제정된 현행 중국 식품 등록관리규정은 5개 식품(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양봉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관리 규정은 모든 식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모든 식품 상품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고, 나아가 등록번호를 제품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할 경우는 징계를 받게 된다. 한국 식품기업들도 중국 해관 미등록으로 인한 사업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동 정책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기업 등록 및 번호 발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1) 이시영(2023). 「[기고] 중국 휴대용 전자기기 배터리 강제인증 시행의 의의 및 대응방안」.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10일).

###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AMR)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SAMR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sup>132)</sup>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성분구성’은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 중국 해관총서, 한국산 김 제품 검역 시 미생물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검역 기준이 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이하 ‘국가표준’)을 기초로 품질 관리와 제품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국 내 수입 식품에 대한 통관 검역이 강화되었으며, 검역 시 코로나 검사 및 소독 절차가 추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으로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식품안전국가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 국가표준과 코로나로 강화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김 제품 수출 시 중국 현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132)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할 때 반드시 SAMR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신선식품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코로나 방역조치 시행

2022년 1월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발원지의 관리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세관의 방역 통제 개선 조치를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법규에 따라 수출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 검사 조사를 시행하여, 수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 상황이 중국의 수입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문제성 해외 식품생산 기업은 기한 내 시정, 수입 잠정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22년 4월 한국산 냉동 농어 중 일부 제품의 외포장 샘플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전 지역 해관에서 일주일간 해당 업체의 수입신고 금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22년 9월 비콜드체인 식품 수입시 통관신고서에도 '예방성 소독'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통관검역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USTR은 중국을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된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인도 등과 함께 우선감시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21년에 특허법·저작권법·형법을 개정하고 지재권 보호조치를 취했다곤 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압수된 전체 복제품 품목의 83%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짝퉁 공장이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

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발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2019년 4월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또한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신설된 국가지식재산권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11일 「저작권법」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이번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23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재산권의 소속을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로 변경하여 기관의 위상과 업무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게임사의 한국게임 표절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 게임을 표절하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국 게임회사 유주게임즈가 2019년 6월 출시한 ‘블랙엔젤’은

국내 게임회사 웹젠의 대표 게임인 ‘뮤’ 시리즈의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블랙엔젤’이 웹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유주게임즈의 한국 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에 손해배상금 1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위메이드도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 2’를 베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2021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의 시작 장면과 그래픽, 아이템 모양, 게임 시스템 등을 그대로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국 게임사들이 꾸준히 중국 게임사들의 지재권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국 특성상 재판부로부터 게임표절을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우며 소송 기간이 긴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 한국 드라마·예능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및 표절

중국 방송·연예 당국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공식적으로는 풀지 않고 있으나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많아 음성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불법 복제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다수의 연예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것이 만연해 있으며 넷플릭스의 세계적 히트작 ‘오징어게임’의 불법 시청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짝퉁 DVD, 영상 파일, 관련 굿즈 등의 판매가 일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인기 예능과 드라마 등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불법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듀스101’, ‘쇼미더머니’, ‘삼시세끼’ 등의 한국 예능을 ‘우상연습생’, ‘랩 오프 차이나’, ‘상왕더성취(向往的生活·동경하는 생활)’ 등으로 불법 리메이크하였으며 한국만 빼고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중인 중국 드라마 ‘진수기’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무단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있다. 2020년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내의 프로그램 포맷 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운 우리 새끼’, ‘윤식당’,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무려 20건 이상 권리 침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령 이후 판권을 사는 것에 대한 국가적 제재가 있어 암암리에 한국산 콘텐츠를 표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 서비스·투자 장벽

### 외상투자법과 외상투자법실시조례 시행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과 「외상투자법실시조례(外商投資法實施條例)」가 시행했다. 「외상투자법」은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것으로 모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 법은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적용범위,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외자 3법과 비교할 때 「외상투자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중국 자연인과 공동 투자하여 법인설립 가능, 중국투자자와 공동투자 시 외국측 최저 지분비율 폐지, 중국에 법인설립 없이 신규 프로젝트건설에 투자가능,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도입, 지방정부의 행정간섭과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제한, 지방정부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명시,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외상투자기업의 지배구조 재편 등이다.

「외상투자법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에 의해 제정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되었다. 동 조례는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확립, 강제기술이전 금지, 수용 금지 및 수용시 합리적 보상 지급,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외상투자기업의 정책·표준 제정 참여, 외자정보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 등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2021년 개정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2021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을 각각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분야, 위성TV 방송을 위한 지상 수신시설 및 주요 부품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중국정부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왔으며,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31개로 줄였고 금융,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놓아 외국인 투자에 더욱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2021년 개정판은 총 12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에 비해 제조업 중 2개 항목이 감소했다. 기존의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자기업은 ‘중국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외 기타 영역은 2020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한편,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3년 10월 18일 진행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정상포럼에서 중국은 제조업에 대한 외상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 개정판에 추가된 설명 조항에 의하면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의 투자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발행 및 상장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여기서 "반드시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상장을 상대로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는 의미로,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상장 활동 자체를 심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며 해외투자자의 지분율은 현행 해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투자자가 적격외국인

기관투자자(OFIG),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OFIG) 주식시장 거래 상호 연결 메커니즘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지분율과 동일한 요구조항을 의미한다. 즉 개별 외국 투자자 및 관계인 투자비율이 전체 회사 지분 10%를 넘지 않고, 전체 외국 투자자와 관계인 투자비율 합계가 회사 지분 3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역내외 동시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가 동일 기업의 역내외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외상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전에 기존 해외 상장 기업이 외국인 지분 요건을 초과한 경우 해외 발행 주식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A주 주식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의 주요 내용

| 구분                       | 특별 관리 조치 내용                                                                                                                                                                                                                                                                                                                                           |
|--------------------------|-------------------------------------------------------------------------------------------------------------------------------------------------------------------------------------------------------------------------------------------------------------------------------------------------------------------------------------------------------|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br>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br>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br>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
| 채광업                      |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
| 제조업                      |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br>7. 투자 금지: 종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종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                                                                                                                                                                                                                                                               |
|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
| 도·소매업                    | 9. 투자 금지: 연초 관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
|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 10. 국내 수상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br>11.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말아야 함<br>12.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말아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br>13.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

| 구분                      | 특별 관리 조치 내용                                                                                                                                                                                                                                                                                                                                                                                                                                                                                                 |
|-------------------------|-------------------------------------------------------------------------------------------------------------------------------------------------------------------------------------------------------------------------------------------------------------------------------------------------------------------------------------------------------------------------------------------------------------------------------------------------------------------------------------------------------------|
|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 <p>14.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통신 업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중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p> <p>15.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p>                                                                                                                                                                                                                           |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 <p>16.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p> <p>17. 시장조사는 합치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 방송,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p> <p>18. 투자 금지: 사회 조사</p>                                                                                                                                                                                                                                                                                                                              |
|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 <p>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p> <p>20. 투자 금지: 인문사회 과학 연구기관</p> <p>21.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 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 제작/ 지역 지질도, 광산 지질, 지구 물리, 지구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p>                                                                                                                                           |
| 교육                      | <p>22. 취학전 교육 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이어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p> <p>23. 투자 금지: 의무 교육기관, 종교 교육기관</p>                                                                                                                                                                                                                                                                                                |
| 위생 및 사회 업무              | <p>24. 의료 기관은 합치에 한함</p>                                                                                                                                                                                                                                                                                                                                                                                                                                                                                    |
| 문화, 체육 및 오락업            | <p>25.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p> <p>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p> <p>27.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 (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 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p> <p>28.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p> <p>29.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p> <p>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p> <p>31.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p> |

2022년 10월 28일 중국 정부는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022년판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과 22개 중서부지역에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기술·부품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특히 동박적층판(CCL) 전용 전자급 유리섬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 제조업 분야와 수입 자동차 도소매, 산후조리원, 통번역, 친환경 기술 개발, 노인 주거시설 개조, 양로서비스 교육, 캠핑장 운영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 전국 장려목록 항목수 비교

|    | 산업        | 17년판 | 19년판 | 20년판 | 22년판 | 비교                               |
|----|-----------|------|------|------|------|----------------------------------|
| 1  | 농·임·목축·어업 | 10   | 15   | 17   | 23   | 5개 항목 신규 추가<br>녹색사료 제조는 제조업에서 이동 |
| 2  | 채광업       | 5    | 5    | 5    | 5    |                                  |
| 3  | 제조업       | 270  | 312  | 353  | 368  | 36개 항목 신규 추가, 20개 항목 삭제          |
| 4  | 에너지 공급    | 15   | 18   | 21   | 21   | 2개 항목 신규 추가, 2개 항목 삭제            |
| 5  | 공공 인프라·운송 | 14   | 15   | 21   | 22   | 1개 항목 신규 추가                      |
| 6  | 도소매       | 3    | 3    | 5    | 7    | 2개 항목 신규 추가                      |
| 7  | ICT       | 0    | 1    | 2    | 2    |                                  |
| 8  | 임대 및 비즈니스 | 5    | 6    | 8    | 12   | 4개 항목 신규 추가                      |
| 9  | 과학기술      | 17   | 27   | 32   | 35   | 3개 항목 신규 추가                      |
| 10 | 공공시설·환경산업 | 4    | 6    | 6    | 6    |                                  |
| 11 | 교육        | 1    | 1    | 2    | 4    | 2개 항목 신규 추가                      |
| 12 | 위생 사회업무   | 2    | 3    | 5    | 8    | 3개 항목 신규 추가                      |
| 13 | 문화·체육·오락업 | 2    | 3    | 3    | 6    | 3개 항목 신규 추가                      |
|    | 합계        | 348  | 415  | 480  | 519  |                                  |

자료: 김성애(2022). 「중국 신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2023년 1월 1일부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 (11월 8일).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은 955개로 2020년판 755개보다 200개 항목이 증가하였다. 2022년 판에서는 신발·모자·의류·완구·가방 개발 및 생산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과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분야 항목이 지역의 상황에 맞춰 신규로 추가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과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외자유치 정책이 산업고도화, 내수 및 일자리 확대를 동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국 및 중서부 장려목록에 해당될 경우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②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인 토지 제공 및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③ 기업 소득세 면·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1년 개정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 시행

2021년 12월 27일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1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는 2020년 30개에서 27개로 감소하였다. 또 제조업 항목 2개를 모두 삭제했는데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자기업이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을 삭제하고 내외부 자본 일치 원칙으로 관리하여 제조업에 대한 개방이 더욱 심화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 진입 요구조건이 완화된 점인데, 시장조사 영역에서 라디오 및 TV의 청취와 시청 조사는 반드시 중국 측이 통제하는 외에 기타 외자 진입규제가 취소되었다. 사회조사 영역에서는 외국 투자자가 사회조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중국 측의 주식 보유 비율이 67%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법인 대표는 중국 국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 구분                       | 특별 관리 조치 내용                                                                                                                                                                                                                                                                                                                                             |
|--------------------------|---------------------------------------------------------------------------------------------------------------------------------------------------------------------------------------------------------------------------------------------------------------------------------------------------------------------------------------------------------|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됨.<br>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 (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br>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
| 채광업                      | 4.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허가 없이 희토류 광구에 들어가거나 광산 지질자료, 광석 샘플 및 생산공정 기술 취득을 금지함)                                                                                                                                                                                                                                                         |
|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 5.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
| 도·소매업                    | 6.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
|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 7. 국내 수상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br>8.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말아야 함. 공공 항공 운송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말아야 하며, 이중 농업, 임업, 어업, 공공 운송 항공사는 합자, 기타 공공 항공사는 중국 측이 지배하는 것으로 제한된다.<br>9.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br>10.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
|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 11.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 통신 업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축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상하이 FTA 시험구역의 기존 지역[28.8km <sup>2</sup> ]에서 시범 정책을 모든 FTA 시험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br>12.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
|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 13.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br>14. 라디오 TV 방송, 시청 조사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사회 조사 중국 측 지분은 67% 이상 점유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말아야 함                                                                                                                                                                              |
|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 15.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br>16. 투자 금지: 인문 사회 과학 연구 기관<br>17.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 구역 경계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

| 구분              | 특별 관리 조치 내용                                                                                                                                                                                                                                                                                                                                                                                                                                                            |
|-----------------|------------------------------------------------------------------------------------------------------------------------------------------------------------------------------------------------------------------------------------------------------------------------------------------------------------------------------------------------------------------------------------------------------------------------------------------------------------------------|
|                 | 전자지도 편집, 제작/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 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교육              | 18. 취학전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여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 됨)<br>19. 투자 금지: 의무 교육 기관, 종교 교육기관                                                                                                                                                                                                                                                                         |
| 위생 및 사회<br>업무   | 20. 의료기관은 합작에 한함                                                                                                                                                                                                                                                                                                                                                                                                                                                       |
| 문화, 체육 및<br>오락업 | 21.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 함)<br>22.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br>23.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축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br>24.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br>25.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br>26.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 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박물관<br>27.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

## 내연기관 차량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의무

중국 정부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의무 생산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2016년에 발표된 「기업평균연료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병행관리 잠행방법」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량을 연간 생산·수입량이 3만대 이상인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 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까지 충족해야 한다. 한편 중국 자동차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로 외자는 로컬계와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시장이 진출이 가능하다.



##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고, 중국 도·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적용시킨다.

##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019년 7월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의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 생명보험사 지분 100% 취득허용 시기를 기존 2021년말에서 2020년말로 1년 앞당겼으며, 실제로 2020년 4월에 시행함으로써 외자 지분취득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에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생명보험업을 공식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회사에 대해 일부 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 11개 조치

| 분 야                   | 발표내용                                            |
|-----------------------|-------------------------------------------------|
| 채권<br>시장<br>선진화       | ① 외자기관의 은행간 및 거래소 모든 종목에 대한 신용평가 허용             |
|                       | ②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전국단위 채권발행 주관업무 허용                  |
|                       | ③ 외국 기관투자자의 은행간 채권발행 주관업무 허용                    |
| 금융업<br>진입<br>제한<br>완화 | ④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상업은행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합작 및 지분투자 장려 |
|                       | ⑤ 외국 자산관리회사가 지배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설립 허용                 |
|                       | ⑥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관리회사의 투자설립, 지분참여 허용              |
|                       | ⑦ 외국자본의 자금중개사 단독출자설립 또는 지분투자 허용                 |
|                       | ⑧ 생명보험회사의 단독투자(100%) 제한을 조기 철폐(2021년→2020년)     |
|                       | ⑨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 지분제한을 조기 철폐 (2021년→2020년)   |
|                       | ⑩ 외자 보험회사의 진입요건 완화(30년 업력요건 폐지 등)               |
|                       | ⑪ 외국투자자의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분제한(25%) 철폐              |

##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서 중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기본통신은 49%까지, 부가통신은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중국 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외상투자 장려업종’, ‘외상투자 제한업종’ 및 ‘외상투자 금지업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총 10번 개정하였다.<sup>133)</sup>

133) 2018년 개정에서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이 있었음.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온라인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초통신업무는 49% 이내, 부가 가치통신업무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개정 목록에서 전자상거래는 제한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통신회사는 ‘중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통신사업에 한해, 부가 통신 사업 외국인 주식 비율이 50%(전자상거래, 국내 다방통신, 메모리 중계류, 콜센터 제외)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초 통신사업은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sup>134)</sup>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sup>135)</sup>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존재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어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작권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134)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 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함.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함.

135)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음.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출판관리장정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함. 「인터넷출판관리장정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률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함.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함.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에 대한 허가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열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2015 개정판 '외국인 투자영화관 잠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독자 영화관 및 영화관 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영화관의 등록자본은 6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중외합자 영화관은 등록자본 중 중국 측의 투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 등 전국 시범도시에서 등록자본 중 외국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최고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자·합작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실시<sup>136)</sup>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규정(2006)」, 「외국인투자법(2020)」,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2020)」 등 기존에도 외국인투자가 자국

136) 이원석(2021).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통상이슈브리프』, No. 3.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UNCTAD, Investment Policy Monitor, "China - Measures on National Security Review of Foreign Investment" (19 Dec 2020) 참고.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632/china-measures-on-national-security-review-of-foreign-investment>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기 법에는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실무적으로 실시해오던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査辦法)」을 통해 명문화 하였다.

2020년 12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주관기관, 심사대상, 심사 및 허가, 반려절차 및 소요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에 따르면 ①군사시설, 군수산업, 방위산업 전반 및 군사시설 주위 지역에 의한 투자와 ②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에너지, 자원, 장비제조, 기초시설, 운송서비스, 문화상품 및 서비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상품,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영역 관련 투자 및 관련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투자는 투자 전에 중국 당국에 안전심사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투자란 ①외국 투자자가 기업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②외국투자자가 기업지분의 50% 미만을 취득하더라도 그 표결권이 이사회(동사회),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③기타 외국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경영상 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관련기관은 자산, 지분 처분 명령과 함께 투자실행 전의 상태로 복귀와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외 해당 외국투자자는 국가신용정보 시스템상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일방적 제재 및 제재 차단 입법<sup>137)</sup>

중국은 2021년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137) 마광(2023). 「[기고]일방적 제재 및 제재 차단 입법에 따른 외상투자기업의 대처 필요」, kotra 해외시장뉴스, 5월 18일.

나서 지원하고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제재반대법」과 「외국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제재반대법」에 의하면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 또는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을 억제·억압하고, 중국 공민과 조직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38)</sup> 대응 조치로는 ①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비자 취소 또는 추방 조치 ②중국 내 동산 및 부동산과 그 밖의 각종 재산에 대한 봉인·압수·동결 조치 ③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협작 등의 활동에 대한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 ④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중국 공민과 조직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온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레이시온테크놀로지, 노스롭그루먼을 동 법에 의해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139)</sup>

## 환경

###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 추진

중국은 친환경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환경정보공개를 확대하였고, 환경법을 위반할 때 누적일수에 따라 기업을 처벌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2017년에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2008년

138) 세계법제정보센터.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49498&AST\\_SEQ=53](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49498&AST_SEQ=53).

139) 최서은(2023). 「중국, 대만에 무기판 미국 기업 두곳 제재」, 경향신문. 9월 15일.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151647011#c2b>

3월)하였으며, 대기, 수질, 토양, 생태 등 분야별 법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면서 생태환경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2020년 9월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고, 그 일환으로 전국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리방법」을 발표한 후, 「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검증 지침(시범 시행)」(3.26), 「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 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3.28), 「탄소배출권 등기관리규칙」, 「탄소배출권 거래관리규칙」 및 「탄소배출권 결산관리규칙」(5.14)을 계속 제정·공포, 2021년 7월 16일부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한편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2020.1)’,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2020.7)’를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두께 0.025mm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와 두께 0.01mm 미만인 농지용 폴리에틸렌 초박막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판매가 금지되며,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과 치약의 생산도 금지되고,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도 금지된다.<sup>140)</sup> 중국 정부는 우선 시행지역에서 동 규제를 실시한 후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인 바, 중국 내에서 유통업, 요식업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중국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의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2013년부터 베이징, 상해,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푸젠 등 8개의 지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운영하였다. 2021년 7월 전국을 통합하는 탄소배출

140) Kotra(2020), 「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조치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2020.7.22.)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ldx=183581>

권거래소를 출범하였는데 이는 중국 배출량의 30%에 해당한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전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연 26,000tCO<sub>2</sub> 이상 배출하는 기업들이 해당된다.<sup>141)</sup>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2월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방법’ 발표 등 탄소배출권 등록·거래·정산 및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검증 등을 위한 규정과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제1차 이행주기 보고서」에 따르면 제1차 이행주기에 포함된 배출단위는 발전업종(타 업종 자가발전소 포함)으로 2013-2019 기간 어느 1년의 탄소 배출량이 2.6만tCO<sub>2</sub>(종합에너지 소비량 약 1만 톤, 표준탄 기준) 이상인 기업 또는 경제조직 2,162개(연간 탄소 배출량 약 45억tCO<sub>2</sub>)이며, 탄소배출권 누적 거래량은 1억 7,900만 톤, 누적 거래액은 76억 6,100만 위안, 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42.85 위안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산둥성, 내몽고자치구, 강소성이 많았으며 이들 3개 성·자치구의 할당량이 전국 할당총량의 33.71%를 차지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2021, 2022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량 총량 설정 및 배분 실시방안(발전업종)」을 발표하고, 발전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두 번째 이행주기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7월 중국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생태환경부 자오잉민 부부장은 향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되는 업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상품의 종류와 거래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3년 10월에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2023-2025 일부 중점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유색, 제지, 민간항공 등 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만tCO<sub>2</sub>(종합에너지 소비량 약 1만 톤, 표준탄) 이상인 중점기업을 연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및 검증 범위에 포함시켰다.

---

141) World Bank. 2021.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620>



## 네트워크안전법

중국 정부는 2016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은 201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동법의 제정 목적은 “네트워크<sup>142)</sup> 안전<sup>143)</sup>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의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1조), 이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및 네트워크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가 이루어진다(제2조). 중국은 네트워크의 운영 안전을 위해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제도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교란, 침해 또는 무권한 접근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제도에 따른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제21조). 이와 같은 안전 의무로 ▶네트워크 안전 책임의 이행을 위한 내부 안전 관리 제도와 운영매뉴얼 제정 및 네트워크 안전 담당자의 지정 의무, ▶네트워크 안전 침해 행위(컴퓨터 바이러스 및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를 방어하는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 ▶네트워크 운영상태 및 안전사건의 모니터링·기록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 및 규정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일지 보관(최저 6개월) 의무, ▶데이터 분류, 중요 데이터 백업, 암호화 등 조치를 취할 의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를 규정한다(21조).

「네트워크안전법」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해 중점보호를 실시하며, 핵심 정보의 중국 내 저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에서 핵심 정보 인프라는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142) 이 법에서 네트워크는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단말기 및 관련 설비로 구성되었고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고 정의함.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제76조.

143) 이 법에서 네트워크 안전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침입, 교란, 파괴, 불법사용과 우발 사고를 방지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시키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벽성, 비밀성, 사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고 정의함.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제76조.

교통, 수력,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한 업종과 분야, 그리고 일단 파괴되거나 기능상실 또는 데이터 누설로 인해 국가안전,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 공공이익이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는 기타”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전술한 동 법의 제21조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더해 ▶안전관리 전문기구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설치와 그 담당자 및 핵심 직무 담당직원에 대한 안전배경 심사 실시 의무,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네트워크 안전 교육, 기술교육, 기능평가 실시 의무, ▶재해복구를 대비한 중요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의무, ▶네트워크 안전 사건 긴급대비책의 제정 및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실시 의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4조). 그리고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의 수요로 인해 해외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 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안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시정 명령과 경고 및 불법소득의 몰수는 물론 과태료의 부과와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영업 및 업무 허가증 취소 등 처벌을 한다(제6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중국은 개인정보의 권익 보호, 개인정보 처리 활동 규율,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2021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 개인정보는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각종 관련 정보를 전자방식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정의되며(단, 익명처리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사용·가공·전송·제공·공개·삭제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제4조). 그리고 민감개인정보는 ‘이미 누설되었거나 불법으로 사용되어서 자연인의 인격적 존엄성에 해를 끼치거나 신변·재산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정의(민감개인정보는 생체인식·종교 및 신앙·특정 신분·의료 건강·금융 계좌·행적 등의 정보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는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갖추어지고 엄격한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8조). 또한 민감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이나 부모·후견인(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제31조).

## 데이터안전법

2021년 9월 중국 정부는 데이터 처리 활동의 규범화와 데이터 안전 보장, 데이터 개발 및 이용 촉진,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그리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발전 이익 보호 등을 목적(제1조)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이하 「데이터안전법」)을 시행했다. 동 법에서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처리 활동과 안전 관리·감독은 물론 중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처리 활동도 「데이터안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 법에서 데이터는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데이터의 처리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을 포함”하며, 데이터 안전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며, 계속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정의한다(제3조).

「데이터안전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의 유형 및 등급 분류 보호 제도를 구축하며, “데이터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변조·파괴·누설되거나 불법적으로 획득·이용될 때 국가 안전, 공공 이익 또는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초래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해 보호”된다. 동 법에 따라 국가 핵심 데이터(국가 보안, 국민경제, 중요 민생, 중대 공공 이익 등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데이터의 유형 및 등급 분류 보호 제도에 따라 중요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확정하고, 목록이 포함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1조).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안전 위험 평가·보고·정보 공유·모니터링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데이터 안전 응급 처리 메커니즘 등을 구축하며, 국가 안

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심사하기 위한 데이터 안전 심사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 안전·이익의 보호 및 국제 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제 데이터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며, 특정 국가나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투자·무역 등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국가나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한다.

동 법에 규정된 주요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할 때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며, 전 과정 데이터 안전 관리 제도 구축과 데이터 안전 교육 훈련 실시, 데이터 안전 보장을 위한 필요한 기술 및 기타 조치 시행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특히 중요 데이터 처리자에 대해 데이터 안전 책임자와 관리 기관, 그리고 데이터 안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그리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데이터 안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른 사용자 고지 및 주무부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규정에 따라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주무 부서에 보고<sup>144)</sup>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다(제30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안전 관리는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르며, 기타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에서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안전 관리는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제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1조). 그 외에도 데이터 수집시 합법적이면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할 것(제32조)과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출처를 설명해야하고 거래 쌍방향의 신분을 심사하며, 심사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부여(제33조)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행정 허가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도록 한다(제34조).

---

144) 「데이터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위험 평가 보고에는 처리하는 중요 데이터의 종류, 수량,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할 때의 상황, 데이터 안전 위험 및 그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동 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각종 방법(办法)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 2022년에 제정된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과 2023년 제정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등의 규정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sup>145)</sup>

---

145) 임종천(2023), 「중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과 우리의 대응」, CSF 중국전문가포럼, 참고.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1433&mid=a20200000000&board\\_id=4](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1433&mid=a20200000000&board_id=4)



## 인도네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상품 무역은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 약 3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약 200억 달러)을 전후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212.9억 달러(수출 91.4억 달러, 수입 1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0.6%), 철강판(7.9%), 합성수지(6.2%), 자동차(5.6%), 반도체(5.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2.2%), 천연가스(15.9%), 동광(10.7%), 의류(4.5%), 식물성물질(4.0%)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4위 수출상대국 및 제13위 수입상대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8위 수출상대국이자 제5위 수입상대국이다(2023년1~11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181.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2.3%를 차지하며, ASEAN 국가 중에는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총 71.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요 업종은 제조업(48.3%), 금융·보험업(36.0%), 도매·소매업(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4%) 등이다. 제조업 중에는 화학물질·제품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1962~2023년 기준 53백만 달러로 크지 않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FTA는 2007년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 2009년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다. 또한 2022년 양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인 RCEP이 발효되었으며, 2014년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던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9년 협상이 재개, 2020년 12월 정식 서명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 수출규제

###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수출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되는 광물의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생산량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보크사이트 수출액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주요 광물의 매장량이 많다.<sup>146)</sup> 과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가공된 광물의 수출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나, 2009년 「신광업법」이 시행된 후 주요 광물을 중심으로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신광업법」에 따르면 광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5년 내에 제련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수출 업체들의 제련소의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광물의 수출 금지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의 수출을 금지한데 이어서 2023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구리 정광 등의 수출도 2023년부터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제련소의 건설 지연으로 2024년까지 수출 금지는 유예하고 그 대신에 수출세를 부과한다.<sup>147)</sup>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물 수출규제는 향후 다양한 품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출세를 부과하면서 일시적인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은 전

146) 이재호, 김소은(2022),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5. No. 4, p. 4 참고.

147) 한국무역협회(2023), 「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허용하는 대신 수출세 최고 10% 부과」, 무역뉴스 참고.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2076724&siteId=1>

기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인도네시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관련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의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하겠다.

## 수입규제

###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4G 휴대폰/휴대용 컴퓨터/태블릿(이하 4G 휴대폰)과 관련 자국산 부품(Local Contents, 이하 로컬컨텐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정보통신부 장관령 No.27, 2015」)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4G 휴대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을 위탁하는 제품이 아니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역부장관령(No.41/M-DAG/PER/5/2016)」은 3G 휴대폰은 API-U(교역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API-P(제조공정상 소비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자) 모두를 수입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G의 경우 API-P만이 수입허가대상이다. 당초 2013년 1월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에 의해 모든 휴대폰(3G, 4G 포함) 수입/판매사는 수입면허 갱신시(2016년)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였으나, 3G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장관령(No.41/M-DAG/PER/5/2016)」에 의해 생산시설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휴대폰 생산업체(삼성전자, LG전자)는 4G 휴대폰을 인니 현지에서 직접 조립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어 현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애플의 경우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R&D 센터를 건립하여 로컬컨텐츠 요건을 인정받기로 하고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애플 혁신 센터를 인도네시아에 개소하였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휴대폰 조립 공장의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비합법적 경로로 수입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는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향후 출국 이후 재입국하는 인도



네시아인은 휴대폰을 최대 두 대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국제모바일기기 식별 코드(IMEI)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기기의 사용은 제한된다.

### 전자제품(휴대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 라이선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sup>148)</sup>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t)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sup>149)</sup>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66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2023년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2023년 제36호)」에 따르면 합금강의 인도네시아 수입 시에는 수입자인증번호(API)의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번호(NIB)와 대외무역국이 발급한 수입 승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사전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법은 세관을 거치기 전 기술 검사의 진행을 의무로 하며,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148) 동 품목의 세부 코드는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이다.

149)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통관이 최소 22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nal Importir)규정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sup>150)</sup>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비자등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sup>151)</sup>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 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150) 특수관계의 종류로는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이 있음.

151) 무역부가 지정한 8개 항구는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임. 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함.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권고(RIPH: 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는 수입 주류에 대해 양허관세율을 150%로 적용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 22)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9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1,147개 최종 소비재 품목(HS 기준)을 대상으로 수입시 부과하는 선납 소득세(PPh 22)를 종전 2.5% 또는 7.5%에서 7.5% 또는 10%로 인상하였다. 선납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인증 강화 및 최저 수입 금액 설정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품목 중 SNI, BPOM, ALKES 등 수입을 위해 사전 등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장관령 (2023년 제31호)」를 발표하며, 소셜커머스에서의 제품 판매 및 결제를 금지하였고, 해외역직구 품목에 대해 할랄, SNI, 식약청(BPOM) 허가 등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최저 수입 거래 금액을 USD 100로 설

정하였으며, 직구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명시한 Positive List를 발표하였다.

## 통관

### 수입업체 통관 등급 분류 변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통관 심사 기준의 명확화 및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종전 4단계로 분류하던 심사 등급 분류 기준을 3단계로 축소시켰다(관세청장령, 「PER-2/BC/2022」).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업체 연혁 및 신용도, 수입화물 종류, 관세청 내부 평가 자료 등에 따라 총 3단계,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으로 분류되며, 각 단계별 수입 통관 시 통관 절차 단계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7년 말 수입금지·제한(LARTAS) 품목에 대한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를 도입하였다. 사회 안전, 국민 건강 등과 같이 통관단계에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관의 확인 없이 통관이후에 해당물품의 주무부처가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 통관 시(Border) 확인제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장관령(2023년 제36호)」를 통해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를 강화하는 통관 시(Border) 확인제를 도입하여 특정 품목에 적용하였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세관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에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농업부 장관령, 「No.42/Permatan/OT. 140/6/2012」)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선 원예 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종전 8개 항구에서 1개 공항, 3개 항구로 축소하였으며,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sup>152)</sup>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가인정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체결국 또는 PFA(Pest Free Area) 인정 품목에 대해서는 자카르타 항구(탄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기준 CRA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PF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세지역(KB)에 대한 규제완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관리 보세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52)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은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 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김,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음.

## 탁송화물 통관

인도네시아는 2016년 말에 탁송화물 수입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No.182/PMK.04/2016)」을 통하여 탁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간이신고(CN) 대상을 종전 중량 기준(100kg 이하)에서 금액기준(미화 1,500달러 이하)으로 변경하고, 간이신고 대상에 대한 관세율도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해 7.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개정을 통해 면세한도도 종전 미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2018년 10월 재개정을 통하여 미화 7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를 통해 미화 3달러(FOB 기준)로 탁송화물 면세 한도를 대폭 축소하였다. (현재 적용 규정 「재무부령 2023년 제111호」)

## 정부조달

###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정부조달은 절차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2023년 12월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306개로 2019년 205개 대비 101개가 증가하였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②LSPro의 서류 심사-③기술 심사-④패널 최종 검사-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SNI 발급에는 근무일수 기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비용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3가지 품목 기준 1,900달러인 반면, 외국 기업은 현장 실사 비용을 포함해 1만~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SNI 강제인증 품목 확대 추세에 따라 대인도네시아 수출 비관세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는 2015년 개정된 「제품 라벨 강제규정(73/M-DAG/PER/9/2015)」을 시행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9년(「Perdagangan No 79/2019」), 2021년(「PERMENDAG No 25/2021」)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44개 품목) ② 건설 자재(8개 품목) ③ 자동차 부품 등(27개 품목) ④ 섬유(26개 품목), ⑤ 기타 제품(19개 품목) 등 5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된다.

## 할랄 인증 의무화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득해야 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담당 기관인 할랄보장청의 시스템 준비 미비로 추가로 5년이 유예되었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 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식품은 2024년 10월부터,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계도기간의 종료 예정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새로운 할랄 라벨, 할랄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한 규정(「BPJPH No 40/2022」)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할랄 라벨 및 해외 기업들의 할랄 인증 비용 등이 명확화 되었다,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은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 2곳과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에서 받은 할랄인증도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2015년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민의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2019년 1월 갱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로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판중프리옥항을 통한 신선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물원료를 사용하는 공산품 등 하람 성분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에, 화장품 및 의약품은 2026년 10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 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 지연과 컨테이너 보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BPOM)의 검

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제도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경 사항에도 해당 식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등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2023년 12월 현재 SNI 강제 의무 대상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범위가 다양화(2023년 306개 품목이 SNI 강제 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SNI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SNI 신청 대상의 제조사는 ISO9001을 보유한 회사나 미보유 회사로 나누어 인증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9월 이후 접수된 건부터는 ISO9001을 보유한 제조사에 대해서만 SNI 인증서가 발급된다.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SNI 신청과 심사 진행은 가능 하나 ISO9001을 신청 진행 중에 있다는 소명 확인서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ISO9001:2015가 표준 기준으로, ISO9001:2007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ISO9001:2015을 다시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수입동물·어류·식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24년 7월 4일 수입동물·어류·식물 및 관련 제품의 검역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를 WTO에 통보했다.<sup>153)</sup> 이는 수입된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의 검역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씰(seal)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검역과정에서 수입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식품 등에 대한 통제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로 입국, 출국 또는 환승하는 모든 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

153) WTO(2024), G/SPS/N/IDN/149

이 규정에 따르면 수출국은 물품이 출발하기 전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수출 물품에 대한 정보 및 통지 서류인 사전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물품(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검역청이 미준수 통지서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물품 정보, 위반 사항, 조치 사항(폐기, 반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검역 대상(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의 검사, 처리 및 운송을 위한 표준화된 검역 문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검역 문서는 최종 문서 또는 주요 문서(운송 증명서, 운송 장비 출발 증명서, 거부서,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등)와 과정 문서 또는 지원 문서(사전 통지서, 운송 장비 도착 보고서, 운송 장비 적재 변동 보고서, 검역 조치 분석 결과 보고서, 물품 하역 승인/거부서 등)로 분류된다.

또한 검역 대상의 운송 및 취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역 봉인을 사용해야 한다. 검역 봉인은 검역기간 동안 무단 접근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검역관이 운송 차량, 컨테이너 및 검역 시설에 적용해야 하고, 검역 봉인이 부착될 때와 해제 될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로 한국산 식품 또는 동식물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은 검역시스템 및 검역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는 2023년 12월 기준, 한국산 상품 1건(석도강판(Tin Plat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도강판(Tin plate)의 경우 기존 2024년 2월 14일에서 5년 연장되어 2029년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가될 예정이다.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는 폴리프로필렌에 대하여 한국,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다.

## 세이프가드

반덤핑 규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치 또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동된 것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 상 어려움에 처한 국내 업체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제품 중 총 4건(겔린지, 과당시럽, 폴리스틸렌 및 의복/악세서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겔린지의 경우 2023년 6월 일몰재심이 개시되었고 9월 최종판정을 거쳐 11월부터 3년 간 부과 연장이 결정, 2026년 1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서 2023년 12월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 5건(올제품, 면직물, 반합성 필라멘트사, 반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면 재봉사)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서비스·투자 장벽

### 옴니버스법 제정에 따른 투자 개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알려진 해당 리스트는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투자 개방을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투자지분, 특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리스트는 2021년 2월 16일,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10호

(「Perpres 10/2021」)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다. 2016년에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은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 「Perpres 10/2021」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투자 금지 분야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Tax Holiday(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 17개에서 18개로, 사업분야는 기존 153개에서 169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 미만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 확대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 ○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 기존 대통령령<br>(대통령령 제-44호, 2016년)            | 신규 대통령령<br>(대통령령 제10호, 2021년)                              |
|------------|-------------------------------------------|------------------------------------------------------------|
| 인센티브       | 구체적 명시 부족                                 | 유무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
| 제한구분       | 3개<br>(투자 금지,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 5개<br>(투자 우선 개방,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기타, 투자금지)                |
| 투자금지업종     | 20개                                       | 6개                                                         |
| 현지기업 협업 업종 | 145개                                      | 89개                                                        |
| 투자지분제한업종   | 350개                                      | 46개                                                        |
| 지분한도 초과 규정 | 지분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명시된 한도 내로 재조정 필요 | 초과분에 대한 조항 없음                                              |
| 최소투자금액 규정  | 2018년 투자조정청 제6호 규제 외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명시되지 않음   |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 명시<br>(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100억 루피아 미만 가능) |

### 디지털세 도입

2020년 3월 인도네시아는 경제와 금융 안정을 골자로 하는 법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0)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였고, 2020년 5월 16일 국가 재정 정책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법률 2호(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0)를 제정해 OTT 서비스를 디지털세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① 연간 14.1조 루피아 규모의 잠재 거래 가치를 가진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② 연간 0.9조 루피아 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게임, 음악, 비디오, ③ 연간 7조 7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영화 거래와 ④ 연간 1조 8천억 루피아 규모의 특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디자인) 거래, ⑤ 연간 44.7조 루피아에 달하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⑥ 연간 16조 5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방송권 또는 구독형 TV 서비스, ⑦ 소셜 미디어와 연간 17조 1천억 루피아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OTT 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전자거래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2021년 11월 25일 기준 약 90여개의 기업이 디지털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 1년 매출액 600백만 루피아 또는 1개월 매출이 50백만 루피아를 초과하거나, ② 1년 방문객이 12,000명 또는 1개월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가 납부대상이며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출한 국제 조세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현재 도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2023년 관련 협약이 완비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세는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었지만, 디지털세 부과 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세금 납부 실적이 미비하다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한국 기업은 아직 없지만, 한국 주요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업도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 진출 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 베트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1992년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4배 가량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상품무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중국·미국·EU·일본과 함께 5대 무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534.9억 달러, 수입은 259.4억 달러, 무역수지는 27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3.8%), 평판디스플레이·센서(23.1%), 석유제품(6.2%), 무선통신기기(4.1%), 합성수지(3.7%)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17.5%), 의류(13.7%), 컴퓨터(8.0%), 반도체(7.9%), 산업용전기기기(5.4%) 등이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고 최근들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357.6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투자금액은 148.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60.3%)으로 세부적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학물질·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금융·보험업(15.5%), 도매·소매업(4.9%), 건설업(4.3%) 등이 주요 업종이다. 반대로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계 38백만 달러로 크지 않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확산적 FTA 체결로 교역 증대를 도모하는 국가이다. 양국 간에는 한·ASEAN FTA(2007년), 한·베트남 FTA(2015년)가 체결되어

있고, 2022년에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이 발효되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CPTPP 가입국인 만큼, 향후 한국이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한국과 베트남은 4개의 FTA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수출통제

###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각 품목별 수출세 부과 여부는 2023년 5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Decree No. 26/2023/ND-CP」의 부록 1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시행령은 구리 파이프, 비료, 숯, 주석, 미가공 아연 등 베트남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에 비해 불충분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높은 수출세율을 부과하였으며, 반대로 생산이 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수출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HS CODE 기준으로 수출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더라도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과 에너지 비용을 합한 가치가 제품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수출세 5%에 해당하던 건축용 석재 등 일부 68류 물품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5일자 개정안 「Decree No. 101/2021/ND-CP」를 통해 점차적으로 수출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2025년 20%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무역 거래 활동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의 발전과 수출입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대외무역관리법」(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Law 05/2017/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관리방식, 수출입 허가·금지·잠정중단·제한, 통관 전 검사규정 등 다수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결정문 등)에 중복·산재돼 있던 수출입 관련 규정을 「대외무역관리법」으로 통합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동 법의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대외무역 관리법의 세부 시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69/2018/ND-CP)로써 수출입 및 일시 수출입 활동의 관리, 물품의 환적, 임가공 활동, 무역 구제 조치 등에 대한 세부 조항 규정 및 상세한 수출 및 수입 금지 품목, 각 부처별 수출 및 수입 시 허가서 및 조건 충족이 필요한 품목 리스트 등이 발표되었다.

##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17년 6월에 발표된 대외부역관리법(「Law 05/2017/QH14」)과 2018년 5월에 발표된 동 법의 시행령(「Decree 69/2018/ND-CP」)을 통해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기, 탄약, 폭죽, 중고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일부 중고 자재와 운송수단, 화학물질,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 함유 자재·제품 등 14개 품목군이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소관 부처별로 지정해 놓고 있다. 특히,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저울관세할당(TRQ)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 담배, 국가안보 관련 물품, 국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목재류, 민간 항공기로 사용되지 않는 비무장 항공기와 군용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갑차, 페인트볼 총기류 및 기타 국가 안전과 방위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중고 기계·장비 등의 수입은 별도 규정을 통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

## FDI 기업의 무역 및 국내 유통 제한, 사업등록허가 절차 개선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할 수 없는 품목들을 시행령(「Decree 09/2018/ND-CP」)과 회람(「Circular 34/ 2016/ TT-BCT」)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담배류, 석유·역청유, 신문·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디스크·테이프 등의 기록용 매체, 항공기 등을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으며, 쌀, 담배류, 원유 및 가공유, 약품, 폭발물, 서적·신문·잡지, 귀금속 및 귀석,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의 현지 유통이 금지된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WTO등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개방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활동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령(「Decree 09/2018/ND-CP」)을 통해 사업등록허가, 소매점 허가, 사업등록허가 불필요 등 사례별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 일부 품목에 대한 자동 수입 라이선스 규정 폐지

그동안 베트남에서 비료나 철강재·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 수입 라이선스의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07/2017/ TT-BCT)에 따라 2017년부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발생하던 각종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 비료 수입 관련 시행규칙(2017년 5월 29일자 「Circular 07/ 2017/ TT-BCT」)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 비료 품목에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료의 수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또한 일부 철강재·철강제품의 수입 시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규칙(Circular 14/2017/TT-BCT)이 발효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동 품목의 수입이 보다 용이해 졌다. 다만, 일부 도금철강, 냉연철강, H형강, DAP

비료 등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입품의 품질검사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검사 대상에 속하는 물품으로 품질 관련 검사가 필요한 물품, 의료 및 문화 분야 물품, 동식물 검역 필요 물품, 식품 안전 검사 필요 물품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 수입 시에는 전문 기관의 동식물 검역 규정 및 품질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국가 기준 등에 따라 수출, 수입 품목이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 중 품질 관련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베트남은 2007년 제정된 「제품·재화 품질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Law 05/2007/QH12)에 따라 수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동 법 및 관련 시행령(Decree 132/2008/ND-CP)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Group-2에 속하는 제품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소지가 있는 기타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 품질검사 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검사 대상 품목(Group-2 품목)은 안전 위협 가능성과 시기별 국가 관리 필요성에 근거해 관할 행정부처에서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적합성 평가 결과 검사, 상품 라벨 검사, 표준 또는 규정 적합성 스탬프 검사, 검사 대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검사 등이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샘플 테스트가 요구될 수도 있다.

수입자는 적용 표준(applicable standards)을 공지하고 상품 라벨상에 해당 표준을 표시해야 하며, Group-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규정 적합성(regulation conformity)을 공지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규정 적합성 공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자체 평가 결과, 적합성 평가 기관의 평가, 관련 기술규정에 따른 규정 적합성 증명,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해 지정됐거나 품질검사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인정되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수출 국경 또는 수입 국경에서 확인한 평가 결과 중 하나를 근거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7년 8월 17일 베트남 국내 유통 또는 수입을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 페이지를 골자로 하는 총리 결정문(Decision 37/2017/QD-TTg)이 발표돼 10월 5일부터 발효하였다. 이후 품질관리는 각 부처별로 발표하는 Group-2 품목 리스트 및 세부적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 수입자의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의 시장 개방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저가의 저급 제품 및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완성차·중고차 수입규제

베트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완성차(Complete Built-Up)를 수입할 수 있는 자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자동차를 별도 범규에 따라 관리되는 수입품목 또는 FTA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 완성차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효과를 유발시키는 특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완성차의 수입 관세를 높이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일례로 버스, 미니 버스, 밴, 세단, SUV 차량에 적용되는 최혜국(MFN) 세율은 평균 70%다. 대신 앰블런스나 공항 버스, 영구차, 호송 차량 등 특수 목적의 차량은 이보다 낮은 5~20%로 MFN 세율이 형성돼 있다. 베트남은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 대해서도 완성차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아세안 무역물품협정(ATIGA, ASEAN Treaty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된 차량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기준은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내 판매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CIF가격+관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케팅 및 영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변화로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2011년 5월 12일자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20/2011/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수입·유통권 위임장 또는 수입·유통 지정업체 증빙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 외에는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7월 1일 개정 투자법이 발효되면서 「Circular 20/2011/TT-BCT」의 효력 또한 자동 소멸되어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완성차 생산·조립 및 수입업을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에 포함시킨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Law 03/2016/QH14)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장진입 장벽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019년 3월 수입차 및 중고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법률(16/2019/QĐ-TTg)이 발효되어 1999년~2008년에 생산된 차량은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차량 개보수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차량의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 품목 관련 결정문(04/2017/QĐ-TTg)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을 기존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확대한 바 있다.

베트남으로 차량을 수출할 시 차량 유형 인증서(VTA, Vehicle Type Approval)와 배출가스·품질·기술안전 검사가 요구된다.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VTA는 수출 국가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것이 요구됐는데, 국가별 상황이 달라 일부 수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화물선마다 매번 VTA를 발급받아야 해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 야기됐다. 결국 2020년 시행령 Decree 17/2020/ND-CP(발효일: 2020.3.22.)와 시행규칙 Circular 05/2020/TT-BGTVT(발효일: 2020.4.15.)를 통해 관련 규칙이 수정·보완됐다. 현재는 수출 국가에서 발급한 VTA를 제출하는 대신 베트남에서 바로 해당 차량 모델을 검수 및 테스트해 인증서를 발급받

을 수 있다. VTA 검사 결과는 36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한번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동일한 차량 모델에 대해 3년 동안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인증서 규칙을 수정한 것과 같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현지 생산 차량보다 수입 차량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해 현지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고안했다. 한 예로, 현지 정부는 베트남 내 ‘차량 제조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용 부품을 수입할 시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차량 원부자재 관련 기업’에도 2020~2024년 동안 동일 정책을 허가했다. (참고 자료: 베트남 시행령 Decree 57/2020/ND-CP) 즉, 베트남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관련 원부자재를(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해) 수입할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0%로 적용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제조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량 등록비를 50% 감면하고 특별소비세 납기일을 연장하는 등 단기 지원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조립·생산 승용차 및 화물차등록세 감면 결정서’(Decision No. 103/2021/ND-CP)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를 2021년 12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50% 감면한 바 있다.

덧붙여 현재 현지 정부 산하기관들은 장기 세금 및 신용 지원책을 연구 중이다. 베트남에서 차량 제조 시 투입되는 부품 중 현지 제조품은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관련 제안의 법률화 여부는 2021년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전기차 등록비를 면제하는 것과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특별소비세를 차종별로 감면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5일자로 발행된 ‘각종 등록비 관련 시행령’(10/2022/ND-CP)의 제2장 제8조 제5항의 c)에는 2022

년 3월 1일부터 3년간 전기차 등록비가 면제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이후 2년간 전기차 구매자의 최초 등록비는 내연기관차의 50%로 감면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11일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월 1일부터 5년간 3%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국회 87.4%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전기차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5~15%에서 1~3%로 인하된다. 이후 2027년 3월 1일부터 4~11%가 적용될 예정이다.

###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시행령의 세부지침 미비

대외무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은 총리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중고기계 수입 관련 결정(「Decision 18/2019/QD-TTg」)이 2019년 4월 19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1) 제조연한 10년 이내의 것 또는 일부 기계의 경우 제조연한 15년 또는 20년 이내의 것(제조연도부터 베트남 도착 연도기준), (2)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준(QCVN) 또는 국가표준(TCVN), G7국가표준 또는 한국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중고기계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중고부품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의 교체나 수리용으로 품목 및 수량이 인정될 시에만 수입 가능하다. 또한 동 시행규칙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신청과정에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제출하여 관할기관의 투자허가를 받을 시, 상기 수입요건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중고기계를 중고 생산과 일반 개별 기계설비로 구분하여 수입요건을 명시하였다. 생산 라인일 경우 제조연도로부터 10년 미만 사용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충족 및 원제품 대비 85% 이상의 성능,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 15% 미만일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기업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련 서류 이외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인감을 날인한 법인 등록증 사본, 2) 위탁 수입의 경우 수입위탁 합의 문서 또한, 검사원은 중고 기계의 제조연도 및 표준이 명시된 원제조업체의 인증 문서가 있는지 여부, G7국가, 대한민국, 기타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고기계, 설비, 생산라인을 검사하기 위한 지정 검사기간 정보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포털<sup>154)</sup>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한국공인검사원(KAIRI)가 지정되어 있다.

2022년 12월 20일자 총리령 28/2022/QĐ-TTg은 기존 18호 총리령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의 중고 생산라인 수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중고 생산라인 수입의 경우 성능 검사를 수출국가 현지에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이테크 기업의 중고 생산라인 수입 시 수입자의 제조지 혹은 투자 프로젝트 장소에서 검사 진행이 가능하게끔 하여 중고 생산라인 수입 절차 운용의 편의가 넓어지게 되었다.

신규 시행규칙 및 결정은 베트남 국내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저품질 중고기계 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낙후된 기술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시행규칙 대비 제조연한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수입허용 품질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의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 강화**

2021년 1월 8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 98/2021/ND-CP)」 및 (Decree No.07/2023/ND-CP)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2021년 11월 16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에 관한 문서 및 보고서 양식 규정 (Circular No. 19/2021/TT-BYT)와 문서 및 보고서 양식 추가규정 (Circular No. 19/2021/TT-BYT)에는 의료 기기 관련 의료기기 제조 적격 선언서, 의료기기 구매 및 판매 자격 선언서, 의료기기 수입허가서 등 보건부

---

154) <https://www.most.gov.vn/vn/tin-tuc/17111/danh-muc-to-chuc-giam-dinh-duoc-chi->



제출 서류 양식이 정리되어 있다. 2020년 9월 28일자 보건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Decree No. 117/2020/ND-CP)의 제78조를 보완하는 2021년 12월 28일자 시행령(Decree No. 124/2021/ND-CP)제26항에서는 의료기기 가격관리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동~2천만 동(50만원~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베트남에 의료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신규 문서 양식 규정을 숙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의료기기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베트남에 적법하게 신고할 경우 진출이 수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상황을 유연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나 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할 경우 기존 대비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관

### 양국 간 HS 코드 상이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기존 한국에서 적용하였던 HS코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HS코드 불인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특정 의료기기의 HS코드를 범물로 지정하는 등 HS코드 분류를 강제공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국제 HS 분류 협약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출입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방식 및 세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베트남 수입 시에는 베트남 현지 HS코드 분류에 따라 신고하거나 HS코드를 수입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HS코드를 확인받은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사후추징 등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신고서류의 검토 및 수리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요구 서류는 수출입 신고서,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HS Code 분류 및 수입관세 부과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어려움 △사소한 오류 등을 근거로 한 추가 부담금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상당한 통관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히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 syste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세관행정은 비교적 선진화 수준이 낮아 수출입기업에게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없이 세관과 담당자에 따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 등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세관간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타기관의 갖가지 승인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셋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를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아 수출입기업의 활용실익이 크다. 그러나, 베트남의 FTA 세관행정 상 불합리한 관행으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한다.

우선 HS코드가 한국과 베트남 간 상이한 경우 한국에서는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관세청 지침)’을 통하여 융통성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데, 베트남은 FTA 행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지침이 전무하여 기업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 HS코드를 사후에 자의적으로 변경요구하는 경우나, 수입국 HS코드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한,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제출하게 하고, 사후적용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서에 사후적용 의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FTA 사후적용 시 기납부 관세를 환급받는 데에 있어 실무적으로 환급액의 10%가량을 불법적 수수료로 징수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베트남은 현재 한-베트남 FTA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협정을 맺고 있다. 수입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대부분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베트남은 기존에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31일자 수출입 원산지의 결정에 관한 재무부 시행규칙 33/2023/TT-BTC의 발

표로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EVFTA 및 UKVFTA 2년) 내에 사후 적용을 하는 것으로 통일 되었다.

## 정부조달

### 내국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및 관행

베트남은 정부 전자조달 사이트<sup>155)</sup>를 통해 각종 투자·입찰·공공조달 공고(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정부 관보, 각종 법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에서는 입찰신문을 창간하고, 전국입찰네트워크 시스템<sup>156)</sup>을 구축하여 대표적인 입찰 정보와 입찰 결과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공공 입찰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공개 입찰, 제한입찰, 지정 입찰이며, 공개 입찰은 입찰자 수에 제한이 없고, 발주 기관은 참여조건, 시한 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서류 발행 10일 전까지 공지하게 된다. 제한 입찰은 발주기관이 응찰자를 제한(통상적으로 5개 이내)하여 공급 능력이 있는 입찰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입찰자 목록은 책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입찰은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 신속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때 사용되곤 한다.

베트남은 정부조달에서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 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55) <http://vpcp.chinhphu.vn/Home/cac-chuyen-muc-dac-biet/thong-tin-dau-tu-dau-thau-mua-sam-cong.vgp>

156) <http://thongtindauthau.com.vn/GioiThieu>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능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경쟁정책

### 국가 독점사업 및 국영기업 보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일례로, 베트남 국영기업은 교통, 전력, 석유·가스, 금융, 제지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투자법」 및 현재 개정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을 통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인허가 조건 규정을 금지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2023년 중 과거 정부 진행 프로젝트 중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 인허가 및 기타 사업허가서 발급 등 내부적인 조사로 인해 기존 진행되던 다수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만큼 정부 사업이라

할지라도 향후 감사 등을 통해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사업진행이 중단되기도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업 진행시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가 주어지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베트남 민간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독점사업을 명시한 별도의 법규가 부재한 상황으로, 각 산업별로 관할 부처가 마련한 법령을 통해서만 국가 독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발행된 베트남 국가 독점 상품 및 서비스 규정 시행령 초안(Circular No. 94/2017/ND-CP)에 따르면, 국가 방위와 안보, 공업화학 물질 제조, 유통·수출입, 다목적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금괴(gold bar) 생산 및 비가공 금의 수출입, 복권사업, 담배 수입, 해양 수로안 내, 해양안보, 항공기 운항, 출판, 조폐 및 화폐 발행, 철도 인프라 시스템의 개발·관리, 송전 및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 관개공사의 관리와 시스템 개발, 상류지역 삼림 식수 및 보호·일반 삼림 보호와 특수 목적의 삼림 이용 등 총 20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자, 2021년 투자법과 기업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위장사업자와 차명거래를 규제하고, 핀테크/전자상거래/모바일스타트업 등에 대한 ‘혁신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2014년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지분 51% 이상 가진 기업이라고 규정했다면,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51%이상 50% 초과 지분을 가진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조건부 사업 목록 변경, 투자 혜택 규정 재정비, 투자자 선정방식 통합, M&A사전 승인 제도 정비, 국가안보 관련 조건등을 강화하여 기존에 불명확하거나 미흡했던 제도를 일부 구체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불분명한 법규로 인한 시장진입 및 인허가 어려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여전히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지닌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는 유통업이나 교육업과 같이 명시적으로 베트남의 WTO 서비스 양허표 및 베트남의 현지법상 제한되지 않는 사업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인쇄업과 출판업과 같은 특정 분야는 아예 외국인 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 사업진출이 좌지우지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독점금지 규제

베트남 현행 경쟁법은 2018년 6월 전면 개정되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2020년 5월부터는 하위 시행령(Decree No. 35/ND-CP; 이하 “시행령 35”)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 및 독점 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경쟁당국은 조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VCA)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 VCC)로 구분되어왔으나 2004년 이후 VCA가 소비자보호 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VCCA로 변경되었다. VCCA는 산업 무역부 산하 기관으로 총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직속기구로 정보자문 교육센터를 두고 있다. VCCA는 경쟁법·소비자법을 집행하고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된 현행 경쟁법은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NCC)가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10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장점유율 외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법에서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시장 지배력’ 기준은 ① 기업의 재정능력 및 규모 ② 기술 및 기술 인프라 ③ 사회기반시설의 소유, 입수, 및 평가 권리와 같은 요소들에 바탕을 둔다. 그 외에도 개정 경쟁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

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정 경쟁법은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등 과장 허위 광고에 따른 처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독점행위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경쟁법 시행 후 구체적인 시행령 등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

### 베트남의 WTO 무역상 기술장벽 통보 현황

2007년 WTO 정식 회원국인 된 베트남은 WTO/TBT 협정에 의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발간된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의 TBT 협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8년 베트남이 WTO 통보한 신규 기술규정 사례는 총 152건이며, 2016년에는 20건, 2017년에는 23건, 2018년에는 23건의 TBT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베트남이 WTO 사무국에 총 20건의 TBT를 통보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2021년에 30개의 정기 고시와 5개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35/240 TBT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 수치는 2020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지금까지 WTO 가입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주요 신고 품목은 폭발물, 통신 장비, 차량, 의약품, 수입 식물 품종 및 식품 등과 관련 되어 있다.

### 국제표준 부합 일부 품목에 대한 베트남 내 품질검사 강제

베트남에서는 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규격에 있어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통용되는 등 특별히 더 엄격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할부처 혹은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베트남 CR 인증

베트남은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에 의거해 기업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강제 인증제도인 “CR 마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된 대상 품목은 (1) 가솔린 바이오 및 디젤, (2) 헬멧, (3) 장난감, (4) 전기제품, (5)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건축자재), (6) LPG, (7) 전자파 제품, (8) 시멘트 클링커, (9)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10) 비료, (11) 식품, (12) 가축사료 총 12개 품목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베트남 수출 기업은 제품 수출 전 제품 인증기관 또는 현지 바이어를 통해 CR 인증 마크 대상 여부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 수출 희망 기업은 베트남 인증 기관 및 정부 각 부처별 상이한 인증 절차를 사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K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기술 규정(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QCDPs)에 해당하는 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R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마크(CR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 안전, 환경, 위생과 관련된 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책과 절차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진출 기업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인증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마크 취득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시험 접수 후 약 2개월이며, 시험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주가 소요된다. 2021년 기준 통상적인 CR 인증 마크 취득 비용은 약 80만 원이나 공장심사 추가 시 80만 원, 파생모델 시험 시 16만 원이 추가된다.

베트남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STAMEQ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과 QUACERT (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산하 CR 마크 인증 기관) 가 있다. 한국 내 전기전자 제품 CR 인증 마크 대행 기관으로는 KTR(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으며 LED 제품 CR 인증 마크 대행 기관은 KTR(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조명연구원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INCENTECH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기술혁신센터) 에서 CR 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변동

2011년부터 「경제적·효율적 에너지 사용법(Law 50/2010/QH12)」을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자국 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같은 에너지 효율 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산업무역부 주관 하에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기기에 에너지라벨을 부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 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 (Decision 04/2017/QD-TTg)」이 공포돼 4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개 품목(LED 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으며, 기존 지정 품목 중 승용차의 적용 범위가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자발적 이행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말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에너지 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Circular 36/2016/TT-BCT)」이 공포돼 2017년 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시행규칙은 기존 복잡했던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 제도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의 인증제도 전환, 6개월을 주기로 갱신해야 했던 인증 갱신규정 폐지,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 인정 등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의 각종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 역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라벨 부착이 의무화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현지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준비해야 한다.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의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일정 기간마다 고시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제품에 부착되며 원산지, 제품코드, 용량, 에너지효율, 베트남 기술표준 등이 표시된다.

## 무역구제 조치

### 세이프가드

베트남은 2023년 하반기 기준, 반가공 합금 철강재 중 철강 바와 연선 제품(Steel billets and long steel products)에 대한 세이프가드(SG04)를 발동 중이며,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회 방지 조치로써 선 및 코일 상의 압연 제품에 대한 조치(AC01.SG04)를 함께 발동 중에 있다.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조사는 2015년 12월 개시되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국내 생산량 대비 급증한 수입으로 인해 자국의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정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일부 면제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국가로부터의 수입 물량에 대해 철강 바는 23.3%, 연선 15.4%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2968/QD-BCT). 2019년 재심 결과 2020년 부과 연장 결정(918/QD-BCT)이 있었으며, 2022년 11월 재심을 통해 제 7213호, 제 7214호, 제 7227호 및 제 7228호의 연선 제품에 대해서만 2026년까지 부과 연장이 결정(691/QD-BCT)되었다.

또한 2018년 7월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일부 HS CODE의 철강 선 및 압연 제품의 수입이 위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후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무역구제

우회 조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무역 구제 우회 방지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으로 일부 철강 연선 및 코일 상의 열간 압연봉의 HS CODE를 추가(1230/QD-BCT)하였다. 동 조치 또한 재심을 통해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결정(920/QD-BCT 및 693/QD-BCT)되어, 2026년까지 부과 예정이다.

## 반덤핑

베트남은 2023년 하반기 기준 총 9건의 반덤핑 규제와 함께 1건의 반덤핑 우회 방지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 중 한국산 제품 1건(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AD04)하고 있다.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은 한국산 및 중국산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결정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까지 5년간 동국제강 및 SK네트웍의 한국산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0.48%, 동부인천제강 및 ST인터네셔널의 경우 4.71%, 기타 한국기업의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2년 재심에 따라 기존 조치의 유지 결정(843/QD-BCT)이 있었으며 2023년도 10월 23일부터 최종 재심(2751/QD-BCT) 진행 중에 있다.

## 상계관세

베트남은 2023년 하반기 기준, 태국산 사탕수수당에 대해 반덤핑 조치와 함께 상계 관세를 부과중(AD13-AS01)이며, 해당 조치에 대한 무역구제 우회 방지 조치로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사탕수수당 1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구제 조치(AC02.AD13-AS01)를 발동 중이다. 해당 사탕수수당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42.99%와 상계 관세 4.65% 가 부과되고 있다.

## 선별적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제도로 전환

그동안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법인세 및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법상 8대 중점 투자우대 분야(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를 두고 있으나, 각종 엄격한 기준 하에서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를 우대하는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법률이 인정하는 투자허가 심사 기업 중 총 투자금이 6조 동(약 2.6억 달러)를 초과하는 신규, 확장, R&D, 혁신 프로젝트 또는 총 투자금이 30조 동(약 12.5억 달러)를 초과하며 3년 이내 10조 동(약 4.2억 달러) 투자를 집행하는 특별 우대 산업 분야 해당기업에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베트남에서 하노이, 호찌민, 기타 항만도시 인근의 공단 지역이 제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도 이러한 지역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단 지역 대부분이 투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최소 공단임대면적(1ha) 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공단은 경우에 따라 1ha 당 투자금액 3~4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투자우대 지역인 낙후지역의 경우 각종 산업인프라 미비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힘든 상황이라 실제 투자는 공단지역으로 제한된다.

## 적극적인 이전가격 과세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과세는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3년에 1회 빈도로 시

행되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일반조사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과세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사대 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수준의 정도를 판단하고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인 경우 당해 영업이익률 수준을 조정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에서는 특히 이전가격 문서화, 신고서 미제출 및 부실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Secret Comparable)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고서를 구비하고 이전가격 규정에 부합하는 경제분석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제시하여 당해 이전가격보고서(개별, 통합)를 기준으로 이전가격 과세기준을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132/2020/ND-CP)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교가능 대상에 대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권한 보유,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 인상, 정상가격 범위 축소 등이다.

시행령 132에 따라,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중립성을 평가할 때, 벤치마킹 스터디 수행을 위해 상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허용되며 또한 (세무당국의)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즉,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들의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s)을 산정하고 부과하기 위해 세무 당국의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이자 비용의 법인세 손금 인정한도가 EBITDA(이자 법인세 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에서 30%로 인상되었다.

국가별 보고서(CbCR) 관련 신규 지침도 변경되었는데, 연간 전 세계 연결기준 매출액이 VND 18조 동을 초과하는 “최상위 베트남 모회사”의 경우, 해

당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제143/2018/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에 따르면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 직업증명서 또는 직업허가서를 지니고 베트남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2018년 12월 1일부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3.5%(질병 및 출산 급여분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분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 왔으며, 2022년 1월 1일 1일부터는 매월 지급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월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및 사망 보험 가입이 강제되면 새롭게 22% 보험료 납부의무가 추가되는데, 회사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의료 및 사회보험료 납부 총액은 총급여의 32%(개인 10.5% + 회사 21.5%) 수준으로, 보통 개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12월 1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Social Insurance)」을 체결하였다. 이는 상대국에 진출한 각종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사회보험

중 퇴직 및 사망보험에 한정된다.

사회보험협정은 파견 근로자에 대해 60개월(추가 36개월) 동안 원래 사용자가 속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지 채용자에 대해 60개월 동안 현지 채용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보험협정 제6조 및 제7조). 그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 주재 파견 근로자 및 베트남 현지 채용자에 대해 노령/유족보험료에 관한 베트남 법령의 적용이 일정 기간 면제된다. 양국간 사회보험 협정은 국회 비준을 모두 마쳤으며 2024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 외국인 소매·유통업 진출 제한 및 신규 시행령

베트남은 외국인의 소매·유통업 영위에 대해 ‘조건부 투자분야’,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와 같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8년 1월 15일 발효된 시행령 No.09/2018/ND-CP)을 통해 외투법인의 무역 및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발급 요건과 소요시간, 관할 기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소매유통/유통유 수입 및 유통/물류서비스/상품임대/무역촉진 서비스/무역중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입찰제공 서비스 등 사업 분야에 대해 영업허가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이외 별도의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다만, 수입/수출 및 도매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서가 필요치 않다.

신규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수요심사(ENT) 규제가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는 ENT 대상이 아니었으나,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이제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도 별도의 소매점포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여전히 ENT 심사대상이며 ① 소매점포의 규모가 500㎡ 미만 ② 상업센터 내부에 위치 ③ 미니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ENT 심사가 제외된다.



신규 시행령은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ENT 위원회 개설을 통해 ENT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였다. ENT 신청 서류 접수 7 영업일 이내에 지역 인민위원회는 ENT 위원회를 개설하고, 위원회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NT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ENT 심사결과 발표 후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산업무역국(DOIT)은 ENT 심사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산업무역부(MOIT)는 10 영업일 내에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SEL의 경우 산업무역부(MOIT)의 의견을 받은 후 3 영업일 내에 발급된다.

### 베트남의 개정된 투자법 및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투자법(Law No. 67/2014/QH13)」(2015년 시행)을 전면 개정한 「2020년 개정 투자법(Law No. 61/2020/QH14)」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 개정 투자법」은 기존 「투자법」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을 변경하였고, 외국인투자자의 M&A 승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가 더욱 축소된 반면 국가 안보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투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큰 변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법」 제23조에서는 외국인지분이 51% 이상인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2020년 개정 투자법」 제23조에서는 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지분율이 50%이상~51%미만인 기업들도 2021년부터는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투자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 투자법」 제26조에서 외국인투자자가 M&A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①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②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5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더 증가하는 경우, ③ 도서, 국경지

역, 해안지역 및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베트남은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을 규정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에 폭죽사업과 채권추심업이 추가되었다(제6조 1항). 그리고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는 기존 「투자법」 대비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 8개의 사업(생수·정수·음용수 유통사업, 건축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전자식별·인증 서비스, 수입 신문 유통 서비스, 어선 등록, 선원 훈련·재교육 사업, CITES 부록에 규정된 동식물 중 관련 사업 및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중 분류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반면 상사중재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동, LPG 용기 제조·수리, 물류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공동주택 운영·관리교육 서비스, 외국기업 제공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 등 23개 사업은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없어졌다.<sup>157)158)</sup>

또한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베트남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투자활동을 일시 중지, 중단,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3항), 구식 기술을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재원을 남용하는 투자는 사업 운영 기간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4조 4항). 그 외에도 「2020년 개정 투자법」은 변경된 투자 인센티브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개정된 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sup>159)</sup>

한편,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은 2015년 제정된 舊투자

---

157) 「2020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제외된 24개 사업 중 1개 사업(채권추심업)은 투자 금지 분야에 포함되었음.

158) 베트남의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 목록은 「2020년 개정 투자법」의 부록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 「투자법」의 부록 4(목록)와 비교를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159) 베트남의 「2020년 개정 투자법」 원문과 국문번역본 및 영문본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음.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28233&AST\\_SEQ=1087](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28233&AST_SEQ=1087)

법 2015의 세부조항 및 이행지침을 대체하며, 2021년 3월 26일부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동 시행령은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토지 임대와 관련된 시행령(Decree 46/2014/ND-CP), 골프장 영업 및 건설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52/2020/ND-CP), 투자자 선정 입찰과 관련 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Decree 25/2020/ND-CP), 일부 제한된 사업영역을 위한 안보와 질서에 따르는 조건을 규정하는 시행령(Decree 96/2016/ND-CP), 산업 및 경제구역 관리를 위한 시행령(Decree 82/2018/ND-CP), 도심지 개발과 투자 관리를 위한 시행령(Decree 11/2013/ND-CP), 첨단기술구역을 규제하는 시행령(Decree 99/2003/ND-CP)을 직접 투자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개정이 있었다.

### 기업법과 투자법 변경사항 및 조건부 사업 추가

2022년 3월 1일 발효된 기업법과 투자법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인 「Law 03/2022/QH15」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민간 암호 제품과 서비스는 제외하고,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투자법(Law 61/2020/QH14)」 하의 조건부 사업 목록에 추가했다. 또한 「Law 03/2022/QH15」를 통해 「기업법(Law 59/2020/QH14)」의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직원총회 의사록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규정,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의 주기적인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조항도 수정되었다.

## 환경

###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을 대체하는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특히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과 비교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요금 규정 변경,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거자가 수거를 거부할 권리를 추가한 것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투자 사업의 경우 그룹 1로 분류하여 예비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본 개정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내 탄소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의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관한 관리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베트남 내 탄소 시장의 설립과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호법과 관련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① 폐기물 및 중고 차량, 기계에 대한 수입 제한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수입 등이 금지된다. 폐기물은 수입 금지 대상으로 일부 재생 목적의 폐기물만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폐기물 수입을 위해서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② 특정 물품에 대한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보호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제안된 베트남의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로써 포장재, 충전지 및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 및 이너튜브, 전기/전자제품, 교통수단, 가솔린/오일/그리스, 석탄 HCFC 용액,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는 제초제, 농약, 소독제 등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재활용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해당 품목의 수입자 혹은 생산자는 정해진 재활용률만큼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재활용 부과금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의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은 환경이나 토지 이용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투자 사업을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크게 분류하였었는데, 「개정 환경보호법」은 규모, 용량, 생산 유형, 비즈니스, 서비스, 친환경 요인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투자사업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4가지(그룹 I~IV)로 분류하고, 각 종류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로 분류된 그룹 I은 사전 환경영향평가(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IA)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그룹에 속한 프로젝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

## 디지털 무역 장벽

###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발효

베트남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율하는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7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금지된 콘텐츠<sup>160)</sup>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제공, 게재, 전송될 수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26조의 1항 및 2항),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은 베트남 내에서 일정 기간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국외 업체는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의 3항).<sup>161)</sup>

이후 2022년 8월 15일, 사이버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Decree No.53/2022/ND-CP)이 제정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통신 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스, 베트남 사용자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domain) 사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이메일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된다.

160) 금지된 콘텐츠는 동 법의 16조에 규정하고 있음.

161)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업체로서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함. 이 항에서 규정한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함.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번역자료 참고.

또한 2022년 10월부터, 베트남 내 상거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및 IP주소, 서비스 사용 시간, 가장 최근의 로그인 내역 등 베트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베트남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도록 강제되었다.

데이터는 최소 2년간 저장해야 하며, 범죄수사 목적의 시스템 로그인 정보는 최소 1년간 저장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公安부의 요청을 받으면 1년 이내에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을 완료하고 현지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사용자가 반국가 선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은 ▲역사왜곡 ▲민족의 혁명적 업적 부정 ▲민족적 단결 훼손 ▲종교모독 ▲성별 및 인종적 차별 등도 금하고 있다.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경우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데이터 현지화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포함하며, 이에 비합치하는 조치는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PTPP 협정에서 베트남은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을 보면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비합치조치로 포함한 분야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법을 CPTPP 회원국의 기업에게 적용할 경우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의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수집 처리와 관련이 있는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CPC 843\*\*), 기타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공급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설립된 허가받은 업체와의 상업적 약정 요건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합작투자 요건을 두고 있어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제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저장을 베트남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규제의 적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sup>162)</sup> 반면, 전자계입업의 경우 국경 간 공급을 미양허하고 합작 형태(외국인 출자 49%까지 허용)의 상

162)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협정문 중 베트남측의 서비스 양허표 참고.

업적 주재만을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베트남 지식재산권 체계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은 2005년 지재권 법을 처음 도입,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를 위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음. 2005년 제정된 법은 포괄적·점진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국제 협약 체결에 따라 지재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09년, 2019년, 2021년에 크게 개정된 바 있다.

베트남 특허청(NOIP)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 건수는 3만9,044건으로 2019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6~7%씩 증가 중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권 출원 비중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특허, 실용신안, 상표권출원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은 3위를 기록('19년 기준) 중이다.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22년 재산권 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49를 기록해 전체 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82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19개 국가 중에서는 15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 한 해에만 모조품, 저품질 제품, 상표권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069건 이었으며 부과된 총 벌금은 약 380억 동(US\$ 160만)에 달하였다. 이중 상표권 위반 및 모조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2만7,602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499개 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약 86억 베트남 동(약38만 달러)의 벌금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라이선스 계약

해외 제조사는 직접 수입, 등록된 상표·제조방식·산업디자인 등을 사용한 베트남 현지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현지 배급사 또는 에이전트 지정, 신규 투자법에 따른 벤처 설립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서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베트남 내 라이선스 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는 크게 두 단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반드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정보(성명, 주소), 라이선스의 기초정보, 라이선스 범위(지리적 제한 명시), 계약 조건(사용료 등), 라이선스 가치, 허가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을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서, 계약서, 지적재산의 보호명칭증명서, 공동소요자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계약은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현지 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및 전문지식 활용,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 수반되는 자금조달 부담 및 위험 분산 등 현지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해야할 만큼의 시장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엄격한 규제, 관할 당국 승인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재식재산권 침해 위험, 라이선스 사업을 구축하는데 수반되는 상당한 관료주의적 장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적합한 상품 제조 및 판매 능력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는 2차 라이선스(sublicense)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베트남에는 2차 라이선스의 합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라이선스 계약자가 자신의 라이선스 사용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랜차이즈 사업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나, 2007년 WTO 가입 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2007년 이래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및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6년 발표된 「상법 시행령」(Decree 35/2006/ND-CP)과 시행규칙(Circular 09/2006/TT-BTM)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ASEAN FTA에서 프랜차이즈 서비스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49%)을 철폐한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에서 동 분야에 대해 상업적 주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점 설립이 허용되도록 양허를 한 바 있다. 현재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서비스는 외국투자자에 개방되었으며, 투자에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매업 라이선스 계약의 대부분은 해외 가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기업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금의 조달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비효율적 공급망, 자산비용 상승 및 직원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상표 및 디자인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진출 시 조속히 브랜드명과 상표를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을 따르기 위한 검증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업 허가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합작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건을 명확화 해야 한다. 아직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관련 법령의 정비, 소비패턴의 변화, 경제개발 속도 등에 맞추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향후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 상표권 침해 사례 빈번

베트남은 상표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상표 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해 보호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이다. 등록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조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유통하거나 상표의 선존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선출원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영미법 국가의 ‘사용주의’ 원칙과 달리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 산업디자인, 발명·실용신안 등은 반드시 베트남 지식재

산권관청(지재권청)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등록 체계는 상당히 잘 정립돼 있고 절차가 간단하나 업무 적체로 인한 심사지연이 큰 문제이다. 이에 반해 지재권의 집행 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한계점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악의의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상표의 선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악의의 출원인이 선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거나 출원신청한 상표와 선존재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가장 설득력있는 증거는 악의의 출원인과 권리 소유자 간의 사업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계약서이다. 따라서 베트남 최초 진출 단계에서 투자자 명의의 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 증가

최근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이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 협회(VATAP)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 모조품의 종류는 화장품과 식품은 물론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

모조품이 통관되어 베트남 내로 유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 보호를 신청·등록해야 한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은 없으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된다. 베트남 세관 당국에 의한 지재권 보호 기간은 해당 신청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 노동법

현재 베트남 노동법(45/2019/QH14)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있으며 노동법 하위의 시행규칙은 일정한 주제별로 몇 개의 시행규칙으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단체교섭위원회 및 생식기능·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업무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10/2020/TT-BLĐTBXH, 이하 “근로계약 시행규칙”), 노동법상 포함되는 근로, 계약, 안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노동법 시행령(145/2020/ND-CP)”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별도의 노동조합법(12/2012/QH13)을 두어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보험법(58/2014/QH13), 고용법(38/2013/QH13), 의료보험법(25/2008/QH12), 노동안전위생법(84/2015/QH13) 등 노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이 있다.

또한,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제2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에 관한 시행령(70/2023/ND-CP)을 두고 있는 만큼, 베트남 내 일정 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및 현지에서 채용되어 베트남에서만 근무하는 경우 모두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에는 기본 근로시간, 초과근로, 휴식시간, 여성근로자 보호, 근로계약 형태, 근로계약의 종료,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다.

## 베트남 부동산 사업법

2022년 3월 1일 시행된 부동산 사업법(Law 12/VBHN-VPQH)의 여러 조항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담은 시행령(Decree 02/2022/ND-CP; “시행령 02/2022”)에서는 기존 주택 및 건설 공사에 대한 임대 및 구매 계

약, 미래에 건설될 주택의 임대 및 구매 계약,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일부 양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 임대차계약, 건설공사에 대한 양도에 대해 별도의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전 시행령(Decree 76/2015/ND-CP) 하에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200억 동(한화 약 10억 6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현 투자법(Law 61/2020/QH14)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 대한 법적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었는데, 시행령 02/2022의 자기 자본 규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 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삭제한 현 투자법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Decree 02/2022/ND-CP)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1) 아파트 매매 계약서; (2) 개인 주택 매매 계약서; (3) 콘도텔 및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4) 주거용 주택 또는 건설 프로젝트의 임대 계약서; (5) 토지 사용권 임대 및 전대 계약서; (6)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 등 여러 가지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포함하였다.

##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sup>163)</sup>

2023년 11월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제출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규칙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과 관련 결의안 초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되었다. 재무부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및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미국, EU 국가 등도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163) 박정호(2023).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우리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12일). 참고

현재 베트남 투자 외국기업의 평균 적용 법인세율은 12.3%이며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 미만의 특별 우대 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기본세율 20%).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방법인 '높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는 베트남에 신규 투자 및 확대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투자유치 감소 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 대상은 ① 총 투자규모 12조 동(4억 8,880만 달러) 이상, 연간 20조 동(8억 1,467만 달러) 이상 매출 달성 기업 및 이와 동일한 조건의 첨단 기업 또는 ② 외국투자기업으로 3조 동(1억 2,220만 달러) 이상 투자한 R&D 프로젝트이다. 지원 방법으로는 고정자산 구입비용, 인력양성 교육비용, R&D 비용, 첨단제품 생산 관련 비용 등 투자비용 지원이 예상되며, 시행 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9년 1월 1일까지 5년간이다.

###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10%에서 8%로 완화**

2022년 1월 11일 베트남 국회는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결정서 (Resolution No. 43/2022/QH15)를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8%로 기존 대비 2%p 인하했다.

그러나 통신·정보기술·금융서비스·은행·증권·보험·부동산거래·금속·코스스·정제석유·화학제품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에서 제외된다. 결정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므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8% 적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2023년 말 베트남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2% 인하 및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 인하조치를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기준 완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방성·시 노동보훈사회국(공단관리사무소에 위임 가능)에서 발급하는 증서이다. 노동허가증이 없거나 노동 허가 면제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 출국 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지속 근무 및 체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승인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시행 이후 많은 외국기업은 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 인접 범위 및 증빙서류의 구체화, 명확화를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2023년 9월 18일 ‘시행령 70/2023/ND-CP’를 발표하며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요건이 구체화 (특히, 운영책임자, 관리자) 되었고, ‘요건 충족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제시하며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전문가” 인정요건 완화 (대학 전공과 노동 허가 신청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② “운영책임자”의 정의 구체화 (운영책임자를 기존의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장’에서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며 본사의 지시를 받는 자’로 확대) ③ “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 관리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증빙서류로 학위증 외 졸업증명서와 같은 인증 서류를 포함, 기 발급받았던 노동 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대상 확인서도 근무 경력 증빙으로 인정) 이다.

개정 노동법 제154조와 시행령(152/2020/ND-CP) 제7조는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최소 10영업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노동 허가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말레이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1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증가하면서 2013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부침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97.7억 달러, 수입은 152.4억 달러, 무역수지는 5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20.7%), 반도체(20.0%), 정밀화학원료(5.9%), 철강판(4.7%), 합성고무(2.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26.6%), 석유제품(16.9%), 반도체(16.1%), 반도체제조용장비(7.1%), 식물성물질(3.1%) 등이다.

1968년~2023년9월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2.3억 달러,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누적금액은 19.4억 달러이다.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76.1%)으로 1차금속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는 금융·보험업(7.0%), 도매·소매업(5.5%), 건설업(4.4%)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1962년~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68.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투자의 상당 부분이 2000년 전후 등 과거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최근 5년(2019년~2023년)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1.8억 달러(비중 0.2%)로 크지 않다. 최근 5년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62.6%), 부동산(14.8%), 도·소매유통(9.4%) 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FTA는 2007년 6월부터 한·ASEAN FTA가 발효되었고, 또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2019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 9월까지 3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는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 수출통제

###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sup>164)</sup>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23년 10월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2,400링깃/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3.0~8.0%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sup>165)</sup>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 수입규제

###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면허제도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불가(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수입제한 품목을

164) 「관세법 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함.

165) Malaysian Palm Oil Board(MPOB) 발표자료 참고.  
<https://bepi.mpob.gov.my/index.php/export-duties>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한 점도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Malaysia)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제반 서류가 준비되면 MITI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7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다.

###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sup>166)</sup>를 수입할 경우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AP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 특정 조건은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기존 A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현지 반제품 현지조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기존 AP는 없으나 25년 이상 된 고전 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말한다. AP 할당량을 부미푸트라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신규 Open AP 정책과 Franchise AP 정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66) 이에 포함되는 HS 품목코드는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임.

## 반덤핑 조사 및 제소<sup>167)</sup>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10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65개 국가 중 1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 67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부와 58개국 중에서 17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철강제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연맹(MISIF)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강공장들이 외국산 저가 철강수입품들에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체들이 말레이시아 당국

### 167) 자료 출처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ByExpCty.pdf](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By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ByRepMem.pdf](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ByRepMem.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RepMemVsExpCty.pdf](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RepMemVs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RepMemVsExpCty.pdf](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RepMemVsExpCty.pdf)
- <http://www.matrade.gov.my/en/28-malaysian-exporters/trade-statistics/3792-top-10-major-import-countries-2017>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anti-dumping&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anti-dumping&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safeguard&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safeguard&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23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산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 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스코-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23년 7월 27일부터 2028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하고 있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폭 1,300mm 이상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 0%, 기타 한국기업은 3.84%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의 경우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은 9.98%, 기타 한국기업은 34.94% 부과하고 있다.

## 정부조달

###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가 발행하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동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이 받을 수 있다. 국 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sup>168)</sup>과 불 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 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22.11.29)되면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CPTPP 회원국의 기업들은 말레이 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입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에 현지 지사를 설립 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현지기업 을 파트너로 발굴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 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168)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함.

## 서비스·투자 장벽

###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무역업 면허(WRT: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Trad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요건(최소 100만 링깃(약 2.8억 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 판매제품 중 말레이계 생산업체의 제품 비중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 장벽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2010년 6월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발효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은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10만~50만 말레이시아 링깃

의 벌금, 혹은 1~3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 인터넷 접속차단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부 웹 사이트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데 적용되는 법안은 1998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며, 동 법의 제정 목적은 통신멀티미디어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통신멀티미디어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부여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멀티미디어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동 법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기타

###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U)<sup>169)</sup>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Proton, Perodua)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세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 공장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9) CKD(Complete Knock Down)는 반조립제품을, CBU(Complete Built Up)는 완제품임.



## 태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우리나라의 태국에 대한 상품무역은 2023년 총 149.2억 달러(수출 75.5억 달러, 수입 73.7억 달러),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 간 상품 무역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1년 138.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는 감소세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5.6%), 반도체(10.0%), 합성수지(5.9%), 석유제품(4.9%), 기구부품(3.6%)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2.8%), 기호식품(6.9%), 석유제품(6.5%), 고무제품(5.1%), 컴퓨터(4.2%) 등이다.

한국과 태국 간 투자관계는 주로 한국의 대태국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33.5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4%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금액은 6.9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36.5%), 금융·보험업(24.6%), 도매·소매업(21.5%), 정보통신업(5.5%), 건설업(4.3%) 등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대로 1962년~2023년 태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1.9 달러이며, 전기·가스(88.6%)에 대해 2023년 크게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과 태국 간 FTA는 한·ASEAN FTA의 투자협정이 2009년 9월 1일 발효,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되다. 또한 한국과 ASEAN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sup>170)</sup>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태국 투자청(BOI)으로부터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오류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 관리가 필요하며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 불충분<sup>171)</sup>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170) Kotra 국가·지역 정보, 태국 통관제도 참고.

171) Kotra 국가·지역 정보, 태국 통관제도 참고.

### 태국 재무부 장관령에 따라 자국산 우선 원칙 부활

태국은 지난 25년간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로 사용되어 오던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1992)」(이하 「조달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새로운 법인 「정부조달 및 공급관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pplies Management Act, B.E. 2560(2017)」(이하 「조달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기관, 독립기구 등 전국 9,000개의 기관에서 정부조달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법」에서는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조달관련 뇌물수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뇌물수여자와 수혜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조달법」의 특이 사항으로는 과거 「조달 규정」제16조를 통하여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업 육성 진흥에 관한 내용을 두어 정부조달시 태국 입찰 참가자에게 외국 입찰 참가자에 비해 일정부분의 입찰 가격 혜택을 부여하던 일명 ‘Buy Thai’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조달법」에서는 발주처의 자율성을 허용하여 외국산 또는 자국산 조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주처가 자국산 구매를 우선시할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할지라도 태국표준공업규격(TIS: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인증을 득한 제품일 경우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태국 재무부는 2020년 1월 「국가차원의 진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조달 및 조달 절차에 관한 장관령 1호」를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12월 상세내용이 포함된 2호를 발표하였으며, 7.1 항목에 공공프로젝트 추진 시 국내산 자재 조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일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자국산 우선원칙이 재적용 되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1년 10월 14일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산 우선

원칙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3호를 발표하였다. 제3호에 따라 정부 기관은 조달법 상 명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정부 기관의 판단하에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3년 8월 31일 「국가차원의 진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조달 및 조달 절차에 관한 장관령 4호」를 발표했다. 제4호에는 디지털 품목 조달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했으며,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16년 동안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 압력을 받아왔으나, 2017년 12월 USTR은 11년 만에 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상향조정 한 이후 2023년까지 연속적으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sup>172)</sup> 과거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는 대미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태국에 있어 특혜관세적용 문제와 함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캠페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모조품 파괴행사,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반·CD·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권 인식이 매우

172) 미국 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2023 Special 301 Report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권과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11월 7일 발효했으며,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2019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태국은 현재 6개 국제기구 및 조약<sup>173)</sup>에 가입되어 있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특허법 B.E2522(1979)을 개정하고 있다. 2022년 9월 내각은 개정안의 초안을 승인했고 현재 국무원의 기술심사 하에 있다.<sup>174)</sup>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선등록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경쟁정책

### 독점규제

태국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173) 태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은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마드리드 협정(Madrid Protocol),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임.

174)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연례 보고서

폐지하고 2017년에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2017))」(이하 「신 경쟁법」)을 발효하였다.

「신 경쟁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립기구인 ‘경쟁위원회실(Office of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을 설립하였으며, 경쟁위원회실에서 불공정거래 판정, 경쟁관련 대 내각 의제 상정,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회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의 범위가 명확해져 가격 담합, 수량 제한 등 불공정 규정 설정, 담합 입찰, 배타적 판매구역 설정 등이 불공정 경쟁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신 경쟁법」에서는 과거 민사 및 형사처벌 규정에 더하여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현재까지 139건의 사건을 공표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합병 통제 및 절차에 관한 사건이었다.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23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15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조사가 2010년대에 들어 10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무역통상구제조치국에 의하면, 2023년 11월 기준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8건 모두가 철강금속 제품(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연용 열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도색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강관, 석도 강판,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것이다.

대한국 반덤핑 조사 관련, 태국 정부는 2020년 4월 7일 한국, 대만, 중국, 유럽산 석도강판(HS7210.12)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해 22.67% 반덤핑 세율을 부과한다. 2020년 5월 15일부로 한국, 중국, 유럽산 크롬 도금 강판(HS7210.5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한다. 단, 위 두 품목은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둔 것에 이어, 이후 각 6개월씩 세차례 부과를 유예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 세이프가드 조치

태국은 2022년 11월 기준 한국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2020년 9월에는 알루미늄호일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8월 국내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종결 처리되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 모두 규제가 시작되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반덤핑의 경우 5년 부과 후 5년 연장, 세이프가드 규제의 경우 3년 부과 후 3년 연장 등)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

### 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을 자국산업 보호조치로 활용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전자기기, 의료기기, 플라스틱, 형광등, 저탄소강 선재, 철강 등 19개 분야 143개 품목(2023년 8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으로부터 강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sup>175)</sup>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

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품 통관 시에도 화물보관 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태국 산업표준원의 강제인증 취득 품목인 경우, 인증 획득은 제품 통관 및 시장 유통에 필수사항이며, 규격 미취득 시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복잡한 규격 신청 프로세스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TISI 승인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서류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공장실사, 샘플테스트 및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기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의료기기, 철강 분야에 새로운 품목이 강제인증 대상으로 추가된 바, 태국 진출을 앞둔 관련 기업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 서비스·투자

### 외국인 투자 제한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태국의 「외국인사업법 1999(Foreign Business Act, B.E. 2542 (1999))」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태국은 외국인 투자를 List One, List Two, List Three의 3가지로 분류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외국인 사업법 1999」 제8조).

List One은 9개의 업종(신문방송사업, 쌀·작물 경작,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약재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또는 문화재의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및 승려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을 포함하며, 외국인의 50% 이상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

175) 강제인증 품목조회는 TISI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

는 제외한다. List Two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내각이 승인하고 상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가 60%(또는 75%)까지 가능하다. 동 목록에 포함되는 산업은 국가안보 등 16개 업종이며, 세부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직조/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List Three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태국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동 목록은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1개의 업종이 포함되



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 목록에는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베니어판·칩보드·하드보드 제조업, 석회분 생산업,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브로커, 에이전트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경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지방 농산물의 국내 거래(태국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의 농산물 선물거래는 제외),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또는 점포 당 자본금 2천만 바트 미만일 경우 모두), 도매업(점포 당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제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금지에 있어 크게 2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 위의 1~3의 업종 중 50% 이상 지분 보유 금지 또는 제한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있고(「외국인사업법」 제10조, 제 11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 둘째로 List Two, List Three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의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 디지털 무역 장벽

### 태국 디지털 무역 관련 법규

태국 내 전자상거래,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등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2001년에 제정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B.E. 2544(2001))」,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 2019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B.E. 2562(2019))」그리고 2022년 전면 발효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t, B.E. 2562(2019))」이 있다.

2022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제공자가 개인

정보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수정,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1항과 2항은 개인 정보가 이용 또는 공개 목적에 따른 필요를 다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개인정보 관리자가 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 정보 삭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 주체의 신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로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는 정보처리자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관련될 경우 전송된 데이터의 도착국가 또는 최종 국제 기구는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수집자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고유의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가 수집자의 해외 자회사 등으로 전송될 경우에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29조). 이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정보통제자는 태국 내 대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정보통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제37조 5항)는 규정 등이 있다.

2019년 제정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B.E. 2562 (2019))」에는 전자 기록 및 서명과 종이 기록 및 수기 서명의 법적 동등성을 확립했다. 「전자거래법」 제31조는 태국의 모든 디지털 비즈니스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022년 6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E. 2565(2022))」에는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관한 해외 및 국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디지털 플랫폼 제공업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태국의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은 동 법을 위반한 컴퓨터 데이터,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공공질서 및 공공도덕에 위배되는 컴퓨터 데이터 등을 관련 부처의 장관이 법원 요청을 통하여 차단, 배포금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인도와 한국은 2010년 1월 1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시킨 이후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양국 간 상품무역은 기간별로 부침은 있었으나 2018년(214.9억 달러)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277.8억 달러)까지 최고 실적을 연이어 경신하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상품 무역은 수출 179.5억 달러, 수입 67.3억 달러로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역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2014년) 이후 제조업 장려 정책(Make in India)을 통해 스마트폰 및 자동차 생산 공장 등을 증설했으며, 또한 인프라 정비 등 정책에 따른 철강·일반기계, 반도체 부품, 석유화학 등 분야의 수요 증가로 부품·소재에 대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2.7%), 반도체(10.9%), 합성수지(9.7%), 자동차부품(6.7%), 석유제품(4.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24.6%), 알루미늄(13.3%), 농약·의약품(10.3%), 식물성물질(4.3%), 연제품(3.7%) 등이다.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81.3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1.0%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누적금액은 21.5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9.3%), 금융·보험업(11.2%), 정보통신업(8.5%), 도매·소매업(7.9%), 부동산업(7.7%) 등이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트레일러, 금속 가공제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5.9억 달러로 크지 않다.

한국과 인도 간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2016년부터 개선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1월 제9차 협상까지 이루어졌다. 한편 RCEP에 대해서 인도는 협상 초기부터 참여해 왔으나 2019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2019년 협정문 타결 및 2020년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RCEP이 타결된 이후 2022년 8월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인도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도 참여 절차 규칙’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인도의 실질적인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수입규제

### 수입금지, 전매, 제한품목의 지정

일반적으로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인도는 지정 수입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4년 1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56개, 수입금지 112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총국(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2023년 8월 노트북·PC에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업계 반발에 수입량 모니터링 절차로 완화한 바 있다.

##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1,000~2,500cc 중고차량은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모터사이클은 250~800cc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 통관

###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는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AEO제도 도입, 2017년 DPD시스템 도입, SWIFT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범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2023년 10월 기준 인도 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T1의 경우 3,594개, T2의 경우 1,049개, T3의 경우 124개, LO의 경우 1,037개로

총 5,847개이다.<sup>176)</sup> 인도의 AEO 담당 기관인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2020년 12월 15일, 중소기업들을 위한 AEO 패키지(Liberalised MSME AEO Package)를 발표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AEO T1 또는 T2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77)</sup> 따라서 그동안 AEO 획득을 위한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건이 가장 간소화되어있는 T1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7일부터 T2 및 T3까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및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 진행에 있어 편의성을 갖추었다.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는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SWIFT (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는 수입자가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Single Window 시스템과 유사하나, 현재 세관전산망에 연계된 기관은 6개(Food Safety and Security, Animal Quarantine, Plant Quarantine, Drug Controller, Textile Committee등)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IGES)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paperless 제도와 유사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실시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인도 정부는 4월에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조기 시행을 추진하였고,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동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176) T1, T2, T3는 수출입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 LO는 수출입업체 외 물류업체, 운송인, 하역업자 등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임.

177) Kotra(2021), 「인도 AEO 제도 활용으로 수월해지는 통관 절차」, Kotra 해외시장뉴스(2021.1.26.) 참고.

2021년 3월부터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에는 한-인도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개통으로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EODES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유로 인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무역업자의 수출입면허 취득 및 통합간접세 등록**

인도의 무역업 종사자는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납부를 위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도는 중소·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국가로, 일부 바이어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야 등록을 시작하여 물류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GST는 과거의 여러 간접세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



된 간접세 제도이다. 품목별로 0~28%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내국세율이 관세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GST 납부증빙을 위한 운송서류인 E-Way Bill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이동하는 물품의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등록납세자는 E-Way Bill을 발행해야 한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 주정부는 GST에 대한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판결권 및 영향권 통합 요청을 항소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월에는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항소를 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 개선 등 관련 규정을 개편하였다.

### FTA 사후 협정 적용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FTA 사후 협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의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FTA 사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통관 시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FT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sup>178)</sup>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실시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4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31일부터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인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

178) Kotra 국가·지역 정보, 인도 통관제도 참고.

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로 2020년 2월 연방정부예산안 발표에서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예고 하였고, 「Finance Act, 2020 제정을 통해 2020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를 신설하고,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CAROTAR 2020)’을 고시하여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과 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외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143건, 상계관세 17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

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9건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30건, 2022년 32건으로 신규 조사 개시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전자전기 순으로 인도의 주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건수를 포함, 전체 20건으로, 반덤핑 건 17건(부과조치 중 12건, 조사 중 5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2건, 조사중 1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12건, 철강·금속 4건, 전자전기 2건, 플라스틱·고무 1건, 기계 1건이 해당된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총국(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인도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2015년에 열연코일과 열연후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6년 들어서는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과 열연후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2021년 3월 일몰재심을 시행하였고, 전기아연도금강(Electric Galvanized Steel)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해 신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 세이프가드

인도는 2023년 12월 기준 2건의 한국산 제품 관련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고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대하여 긴급수입물량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3.4~6월) 6,290MT → (7~9월) 6,290MT → (10~12월) 6,672 MT→ ('24.1~3월) 6,672 MT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페로몰리브덴(Ferro Molybdenum)에 대해 2022년 9월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2024년 10월 9일까지 5%의 추가 관세가, 2025년 10월 9일까지 3.7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인도의 대한민국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현황

| 상품명      | 최종판정일      | 조치이후 관세율 및 수입제한물량                                                            |
|----------|------------|------------------------------------------------------------------------------|
| 이소프로필알코올 | 2021.10.01 | ('23.4~6월) 6,290MT → (7~9월) 6,290MT → (10~12월) 6,672 MT→ ('24.1~3월) 6,672 MT |

## 무역상 기술장벽(TBT)

###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 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측에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우리 업계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4012.11.00-4012.20.20에 해당하는 중고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

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한다. CDSCO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CDSCO 화장품 인증 수수료는 카테고리당 2,000달러로, 품목별 50달러가 추가된다.

##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인도 전자통신기술부는 2012년 15개 전자제품·IT제품군에 대한 강제등록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컴퓨터, 랩탑, 태블릿 PC 44개의 전자제품군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즈 모델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델 수가 20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는 50개로 제한된다.

2차 전지(IS 16046)의 경우 BIS 표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현지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해야하며, BIS 당국에 제품등록 후 BIS 승인번호를 포함하는 라벨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댑터, 오디오/비디오용 파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6개월을 유예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도 2016년 말 기준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가 2차 전지의 IECCE CB 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17년에는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를 추가 강제 등록품목으로 지정하였다. 강제등록제도의 대상물품은 2023년 12월 기준 508개이며, 2024년 중 174개 품목이 시행 예정이다.

##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sup>179)</sup>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2.5~3%로 재인상하였다.

179)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포함함.

또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19년 11월 1일부로 대인도 철강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IMS: Steel Importing Monitoring System)’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SIMS 제도로 인도 철강 수입 업자는 284개 철강 품목(HS 72, 73, 86)을 수입할 때마다 화물 도착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SIMS에 수입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으로 화물 도착 후 진행되는 통관과 별개로 과다한 행정업무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1년 8월에는 반도체 수입 온라인 시스템(The Chip Imports Monitoring System, CHIMS)을 신설하고, 수입 전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견별 등록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수수료 부담은 SIMS 대비 낮은 편이나, 생산자, 원산지, 기술사양, 가격 등 주요 정보가 인도 정부에 수집되며,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반도체 수입 규제에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기도 했다.

### 의료기기 규칙 제정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제도와 규제 정비 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2017년 의료기기 규칙(the Medical Device Rules, 2017)이 제정되면서 수입·유통 등과 관련된 일부 기준이 명료화되었다. 의료기기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인도 건강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이며, 산하의 중앙의약품준통제기구(CDSCD)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타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BIS 또는 AERB(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자가 공증된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수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서비스·투자 장벽

###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승인제도 확대

2021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주요 산업부문에 대해 정부승인 없이



자동승인이 가능하다. 가장 최근 개정안인 2020년 10월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PIIT)의 FDI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분야별 투자 상한 및 투자 제한 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FDI 정책에 규정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동승인과 정부승인으로 구분되며 2021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의 부문이 정부승인 없이 자동승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동승인의 경우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고, 정부승인의 경우 해당산업의 주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동승인의 경우도,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은 일부 산업은 일정 한도까지만 자동승인이 허용된다.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의 경우 51%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전통소매금융, 농가 주택 건설, 복권, 담배 부문 등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인도는 2021년 7월 일부 조건하에 석유 및 가스 국영기업 대상 외국인직접 투자를 100% 허용하였고, 투자 제한이 있는 통신부문 중 일부는 100% 허용 등 점차적으로 FDI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과 자사 플랫폼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 주요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 구분       | 부문            | 주요 내용                                                                                                        |
|----------|---------------|--------------------------------------------------------------------------------------------------------------|
| 투자<br>금지 | Nidhi Company | 기금을 받아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
|          | 전통 소매 금융      |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
|          | 기타            |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br>-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
|          | 담배            | 시가, 껌련(cheroot)를 포함한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
|          | 복권            |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
|          | 부동산           |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
|          | 카지노           |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

|          |                |                                                                                             |
|----------|----------------|---------------------------------------------------------------------------------------------|
| 투자<br>제한 |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 51%까지 정부 승인                                                                                 |
|          | 민간보안업체         |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
|          | 방송             | 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승인                                                                     |
|          | 방위산업           | 74%까지 자동승인                                                                                  |
|          | 보험             | 74%까지 자동 승인                                                                                 |
|          | 싱글 브랜드<br>소매유통 |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br>- 로컬소싱 적용 기준 완화 (사업 시작 후 3년간 면제)                              |
|          | 연금             | 49%까지 정부승인                                                                                  |
|          | 의료             | - (브라운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 정부 승인<br>-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
|          | 인공위성           | 74%까지 자동승인                                                                                  |
|          | 인쇄매체           | 100% 정부승인<br>* 뉴스 및 시사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 간행물 및 인도<br>판 출판의 경우 정부 승인 26%                    |
|          | 전력거래           | 49%까지 정부승인                                                                                  |
|          | 제약             | - (브라운 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시 정부승인<br>-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
|          | 증권 인프라사        | 49%까지 정부승인                                                                                  |
|          | 통신             |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
|          | 통신서비스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100% 정부승인                                                               |
|          | 항공운송 서비스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br>정기 항공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운송 서비스로, 비정기 및<br>민간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는 100% 자동 승인 |

자료 : 각 정부 홈페이지 종합

## 디지털 무역 장벽

### 디지털 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시행<sup>180)</sup>

2018년 4월 5일 인도 중앙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감독 시스

180) 송영철(2018.4.30.), 「인도중앙은행, 디지털거래정보의 인도 내 저장 의무화 시행」, EMERiCs, 이슈&트렌드;  
송영철(2018.10.25.), 「인도 내 디지털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발효」, EMERiCs, 이슈&트렌드 참고.

템 강화를 목적으로 인도 내의 모든 시스템 제공업체(system providers)에 대해 지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도 내에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조치(RBI/2017-18/153)를 발표하였다.<sup>181)</sup> 동 조치에서 데이터 현지화 대상이 되는 자료는 메시지 또는 지불 지시의 일부로서 수집·전송·처리된 모든(full end-to-end) 거래 세부사항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동 조치에 따르면 시스템 제공업체는 6개월 이내에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American Express, Master/Visa Card, PayPal, Google Pay, Paytm 등 모든 디지털 결제회사에도 적용되었다. RBI는 해당 업체들에게 전자정보부(MeitY) 산하의 컴퓨터긴급대응팀(CERT-IN)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SAR)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RBI는 결제업체들의 정보수집, 데이터운반, 결제처리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인도 전자통신기술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를 2017년 7월 발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2018년 개인정보보호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이를 발전시켜 IT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PDPB: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상정하였다. 이후 국회 공동조사위원회(JPC: Joint Parliamentary Committee)가 PDPB를 1년 이상 검토하였으며, 2021년 9월 중순 최종 검토를 끝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를 포함하는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동 법안의 이름을 Data Protection Bil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하고,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

181)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Mode=0> 및 첨부 문건 (RBI/2017-18/153) 참고.

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모든 정보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에 위치한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개인 정보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저장해야 하고, 인도 내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OTT 서비스 규제

인도에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정책과 함께 인도의 관련 협회·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OTT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인도의 기업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을 신규 발족했다. DCCC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을 위반한 OTT 서비스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동 규정에 합의한 OTT 서비스 기업의 제공 동영상에 대한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발견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방영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I&B)는 2021년 2월 25일, 관련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콘텐츠 제공자뿐 아니라 인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는 기업에 3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1단계는 해당 법인의 자체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플랫폼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위반에 대한 불만은 해당 법인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해 플랫폼은 고충처리절차를 구축하고 인도에 본사를 둔 고충 담당관(GO)을 임명해야 한다.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에 고충 담당관의 정보를 기재하고 민원을 받을 시 24시간 안에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 제기자가 고충 담당관(GO)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2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는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퇴직 판사 또는 미디어 등 기타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이들 전문가는 민원에 대한 조치로 경고, 검열 또는 질책을 하거나 면책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인도 정보통신부에서 감독에 나서게 되며, 해당 콘텐츠 삭제 또는 수정 등 공공질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TT 플랫폼 소유자는 다양한 연령 그룹에 따라 콘텐츠를 분류해야 하며,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등급은 모든 프로그램 시작 시 콘텐츠 특성에 대해 알리고 분류등급이 잘 보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주제, 영향, 욕설 등에 따라 U, U/A 7+, U/A 13+, U/A 16+ 또는 A 등급으로 분류된다. 욕설과 공포 분위기가 포함되는 콘텐츠는 U/A 13+ 이상으로 보호자 잠금을 포함한 접근제어절차가 구축되어야 하며, A 등급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시청자의 연령 검증 이후 시청 가능하도록 돼야 한다.

## 기타

### 화학 등 일부품목 관세인상

인도는 Make In India 실현 및 중소기업 진흥 등을 위해 빈번하게 관세를

조정하고 있다. 2023년 2월,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화학, 고무, 기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고무, 귀금속 제품, 항공기, 전자 기기 등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되었다.

인도의 2023년 관세인상 주요 품목

| 구분        | 품목                                                                                                                                                                                                 | 기본관세(%)                |                        |
|-----------|----------------------------------------------------------------------------------------------------------------------------------------------------------------------------------------------------|------------------------|------------------------|
|           |                                                                                                                                                                                                    | 기존                     | 변경                     |
| 화학        | Styrene                                                                                                                                                                                            | 2%                     | 2.50%                  |
|           | Vinyl chloride(Chloroethylene)                                                                                                                                                                     | 2%                     | 2.50%                  |
| 고무        | Compound rubber, Unvulcanised,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 10%                    | 25%<br>또는<br>Rs.30 /kg |
| 귀금속<br>제품 | 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 20%                    | 25%                    |
|           |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 20%                    | 25%                    |
|           | Imitation jewellery                                                                                                                                                                                | 20%<br>또는<br>Rs.400/kg | 25%<br>또는<br>Rs.600/kg |
| 기계        | Hoods having a maximum horizontal side not exceeding 120 cm                                                                                                                                        | 7.5%                   | 15%                    |
| 자전거       | Bicycles                                                                                                                                                                                           | 30%                    | 35%                    |
| 완구        |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dolls; other toys; reduced-size ("scale") models and similar recreational models, working or not; puzzles of all kinds | 30%                    | 35%                    |

자료: Kotra

인도의 2023년 관세인하 주요 품목

| 구분        | 품목                                                                                                                                                                                                                                                   | 기본관세(%) |      |
|-----------|------------------------------------------------------------------------------------------------------------------------------------------------------------------------------------------------------------------------------------------------------|---------|------|
|           |                                                                                                                                                                                                                                                      | 기존      | 변경   |
| 고무<br>타이어 |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of a kind used on aircraft                                                                                                                                                                                           | 3%      | 2.5% |
| 귀금속<br>제품 | Silver (including silver plated with gold or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 12.5%   | 10%  |
|           |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         |      |
|           | Base metals or silver, clad with gold, not further workedthan semi-manufactured                                                                                                                                                                      |         |      |
|           |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         |      |
|           |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         |      |
|           | Base metals, silver or gold, clad with platinum,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         |      |
|           | Waste and scrap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other waste and scrap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of a kind used principally for 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 other than goods of heading 8549 |         |      |
|           | Coin                                                                                                                                                                                                                                                 |         |      |
| 항공기       |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2,000 kg                                                                                                                                                                           | 12.5%   | 10%  |
|           |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2,000 kg. but not exceeding 15,000 kg.                                                                                                                                                 |         |      |
|           |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15,000 kg                                                                                                                                                                              |         |      |

자료: Kotra



## 러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한국과 러시아 간 상품 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 2014년에는 25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러 교역 규모는 2016년 134억 달러까지 감소했고,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273.3억 달러로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023년 150.5억 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이다. 2018년 101.8억 달러 적자, 2022년 8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2023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이 크게 감소(-40%)하면서 27.3억 달러 적자로 완화되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12.4%), 레일·철구조물(9.5%), 건설광산기계(-7.2%), 비누·치약·화장품(6.6%), 자동차부품(5.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49.8%), 천연가스(11.9%), 알루미늄(7.9%), 갑각류(5.3%), 합금철·선철·고철(4.6%) 등이다.

양국의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1968~2023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30.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투자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0.4%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9월) 한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금액은 4.0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6.5%)으로 특히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금융·보험업(14.9%), 도매·소매업(10.6%), 농업·임업·어업(10.0%)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91백만 달러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FTA 협상은 2019년 서비스·투자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20년 7월까지 다섯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를 포함하는 한·EAEU FTA는 2017년 공동실무작업반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 수입 규제

###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다. 도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시아 정부는 기본 부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현지 생산 비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일정 비율로 폐차세 환급 지원을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3.8.1.부터 수입 차량(신차 및 중고차 모두 포함)에 대한 폐차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폐차세 수입의 절반을 「자동차 처리대출 프로그램」 및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 서방 국가 농식품 수입 제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후 금수 조치를 매년 연장하고,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러시아 대통령령 제693호, 2023.9.18.). 또 2023년 7월에는 가공·통조림 수산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였다(러시아 정부령 제1173호, 2023.07.20.).

##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 분류       | 주요 품목                                                                              |
|----------|------------------------------------------------------------------------------------|
|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
| 생선류      |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무척추동물, 가공 통조림 철갑상어 알, 가공 통조림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무척추동물 등 |
| 낙농품      |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
| 채소류      |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br>*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
| 과일류      |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
| 육가공품     |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
| 곡물류 및 기타 | 맥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지 품목 목록 관계 법령 : 러시아 정부령 제778호(2014.8.7.)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개시와 관련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통관

###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EAEU 관세법 체제 개혁하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 사전 신고 후 원칙적으로 4시간 안에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21). 그러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관 검사가 실시되거나 또는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기준으로 동일 제품이더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러시아 세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과 한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세관이 정한 임의의 가격으로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통관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제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일률적인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75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를 근거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

### CU(Customs Union)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기스스탄(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인증제도인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기존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총 52개의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50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

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 상품 라벨링(체스니 즈낙, Chestnyi Znak) 제도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자 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했다. 현재는 담배, 모피, 신발, 의약품, 향수, 카메라, 타이어, 유제품, 포장된 물(생수)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광천수(mineral water)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12월 1일부터, 광천수 외 생수에 대한 의무화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생수 유통 참여자들은 선적 및 위탁 시 전자문서관리를 사용하고 라벨링 시스템에 관련 정보(규모, 종류)를 전송해야 한다.

2023년에는 라벨링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2023년 4월 1일부터), 식이보충제(2023년 10월 1일부터)에 라벨링 의무화가 실시되었다.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무알콜 음료에 대해서도 포장형태 등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 지식재산권

### 비우호국 보유 지재권 침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내 제품·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3월 29일 러시아 정부는 특정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등 수입자가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호국 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안보 및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2022년 3월 6일자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비우호국 국적자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 실시할 수 있다.

## 정부조달

### 공공조달시장의 차별

러시아의 정부조달에 관한 연방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 수요용 물품, 공사, 서비스조달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2013년 4월 5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국가계약법 외에도 「특정 형태 법인의 물품, 공사, 서비스조달에 관한 연방법률」이 공공조달을 규율하고 있다(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자동차·경공업 제품·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부재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산 제품 조달 금지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마스크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공공조달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21년까지 외국산 마스크의 공공조달을 금지하였다.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개 이상의 러시아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 인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산 IT 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 서비스·투자 장벽

###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sup>182)</sup>

러시아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절차법」을 개정('21.7.2 공포)하였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전체 지분의 5~25%를 직간접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에 소유한 지분에 대한 권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수산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취득하거나 소유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소유지분을 낮추지 않거나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수산 생물자원 채취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즉 기존 법률에서는 수산업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여 수산물 가공, 보관,

182) 수산물수출정보포털(「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https://www.kfishinfo.co.kr/kor/view.do?no=141&view=view&idx=38579>)에서 발췌

운송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어획물의 생산, 처리, 운송, 재적재, 보관 및 하역 등 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러시아 수산기업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소유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23년에는 추가 개정(제577호, 2022.12.29.)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수산기업은 특정 어종의 총허용어획량 중 3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어업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절차 등을 명시하는 정부령(제1621호, 2023.10.2.)을 마련하였다.

### **비우호적 국가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조치**

러시아는 2023년 4월 대통령령 제302호에 따라 ‘비우호적인’ 국가와 관련된 투자자가 소유·관리하는 러시아 자산을 임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통제는 (1) 러시아 연방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혹은 (2) 러시아 연방 또는 개인이 해외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자산의 범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주식, 기타 재산권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임시 통제 조치가 종료되려면 대통령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 **비우호적 국가 제휴 외국기업의 자산 매각 승인 기준 변경**

러시아는 2023년 7월 ‘비우호적 국가’와 제휴한 외국기업이 소유한 러시아 자산 매각의 승인 기준 업데이트를 발표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독립적 평가 요구
- 자산은 시장 가치에서 최소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 공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를 1~3년 내에 경매
- 구매자 및 인수 사업체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 거래는 러시아 은행 시스템 상의 'Type C'계좌 또는 루블화를 통해 지불
- 외국은행의 개인계좌로 자금 이체는 할부가 유효한 경우에만 허용



더불어 비우호적 국가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조건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배당금은 전년도 순이익의 50% 초과 금지
- 외국인 주주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사업활동 계속 의사를 표명해야 함
- 기술, 생산 주권, 사회경제적 발전, 핵심성과지표 이행에 대한 영향 고려
- 분기별 배당금 지급은 핵심성과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

### 이중과세조약의 일부 조항 중단

러시아는 2023년 8월 이중과세조약의 특정 조약을 중단하는 법령(Decree No. 585)을 발표했다. 대상 국가는 38개국<sup>183)</sup>으로 한국 역시 포함되며, 동 법령에 따라 배당금, 이자, 로열티,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고용소득, 행정 및 감독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소득유형에 대한 과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비우호적 국가의 지주회사에 대한 기업 권리 정지

러시아는 2023년 9월 연방법 제470-FZ호(경제적으로 중요한 조직으로 간주되는 사업체의 기업 지배구조 세부사항)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비러시아 모회사가 ‘비우호적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당되는 외국지주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상실되거나, 총회 참여 및 요청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배당금 수령,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처분 등 기업의 권리가 상실 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조직’은 총 매출이 750억 루블 초과, 러시아 그룹 내에서 4,000명 이상 고용, 1,500억 루블 이상의 자산 보유, ‘중요 정보 인프라 대상’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나 IT-통신 서비스 관련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183) 38개국은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임.

## 비우호적 국가의 개인·법인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러시아는 2023년 8월 특별경제조치 관련 연방법을 개정(Federal Law No. 422-FZ)하면서 ‘비우호적인’ 국가의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4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조치는 각 정부기관들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주요 제한 조치에는 금융자산 동결, 비금융 제한 부과, 협력 프로그램 중단, 관세 변경, 러시아 항구·영공 접근 제한, 관광 활동 제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금융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연금, 장학금, 사회복지혜택 등의 자금을 러시아 계좌로 받는 것도 포함된다. 해당 조치에 대해 러시아 연방은행은 준수 여부를 감독하면서, 위반시 활동을 제한하거나 최대 5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디지털 무역

#### 개인정보 보호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하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동 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발효되었으며, 최근 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러시아 「개인정보법」 제3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는 “특정인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여러 정보”로 정의된다. 그리고 동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기에 앞서 국가통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외에도 ② 개인정보의 기밀성 보장, ③ 개인정보보호의 보장대책 마련(개인정보처리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임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책 공개 포함), ④ 개인정보데이터의 현지화 요건 준수, ⑤ 개인정보 처리의 종료를 적시 이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sup>184)</sup> 또한 러시아 정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

18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2017), 러시아 개인정보법 규정 소개, pp. 10-12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RU&CTS\\_SEQ=45743&AST\\_SEQ=262](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RU&CTS_SEQ=45743&AST_SEQ=262)

##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 및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

러시아는 「개인정보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이전 포함)과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제12조에 따르면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의해 지정된 「해외 국가의 보호에 관한 유럽 위원회 협약」 당사국 및 그 외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는 국가 외에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전송이 금지된다. 단, 허용 국가도 러시아의 국익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전송이 제한 또는 금지되며, 개인정보 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지 국가로의 개인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부처간위원회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연방보안국(FSB)는 2021.9.30. 「외국,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단체, 외국 시민 또는 무국적자에게 수집되는 경우 러시아의 국가보안에 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러시아연방 군사 및 군사기술 활동 분야의 정보 목록」이라는 명령 공표를 통해 국가기밀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 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법이 개정(동 법 제18조 제5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1일부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의무 부과

러시아는 2021년 7월 1일 제정된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인터넷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르면 1일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자원 소유자들은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 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여 러시아 개인 및 단체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전자 양식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후,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핵심 정보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2년 3월 31일부터 공공기관·공기업 및 그 자회사들은 관계당국과 협의 없이 핵심 정보인프라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수 없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소속 핵심 정보인프라에서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22년 5월 1일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정보 보안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정부기관, 국영기업, 연방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타 조직, 전략 기업 및 주요 정보인프라를 다루는 조직은 비우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보 보안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 기타

### 수산생물자원 이용세

러시아 정부는 「세법」 제2부 제25.1장에 따라 수산자원생물 이용시 톤당 정액세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어획되는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이용료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연방법 제444-FZ, 2022.11.21.). 수산생물자원 이용료는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세법」개정으로 이용료가 인상된 품종은 명태, 킹크랩, 태평양연어 등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주요 품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 투자 어획쿼터제

러시아 정부는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신규 수산가공공장 건설 및 러시아 조선소에서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투자자에 대해 쿼터를 추가로 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로 서방의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이 중단되면서 투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투자쿼터제를 통해 자국 수산업의 인프라 현대화와 생산량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제644호, 2022.12.29.)하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이후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주요 조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핵심 기술·부품 유입 제한 등 수출통제, 러시아産 에너지 등 수입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의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가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금융 분야 특별경제조치]

첫째, 러시아 거주자(러 법인·개인사업자)의 비우호국 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비우호국 거주자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관련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시 특별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하여 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해외 송금이 허용되고,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에 대하여 해외송금이 금지되었다.

셋째,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외화채무를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루블화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 [실물경제 분야 대응조치]

첫째, 산업 일반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주요 외국산 장비·물품 부족 대응 및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통제, 비우호국 기업의 철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및 한시적 외부경영 조치를 도입하는 가운데, 러시아 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대출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자원 무기화 및 외국기업 재산권 제한과 같은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달러 결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루블화 사용 결제 조치를 강행하였다.

셋째, 농업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내 품귀현상 및 국제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수출업체 요구에 따라 비관세조치(수출쿼터, 수출금지)는 종료하고 관세조치(수출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며 기타 품목별(쌀, 유채씨 등)로 국내수요 충당 및 對서방 맞대응 제재 조치로서 신규 수출 제한 등을 실시중에 있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외국 IT 기업의 시장 철수 및 해외 SW 기술지원 중단 등에 따라 IT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핵심 정보인프라에 대한 정보 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였다.

다섯째, 해양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섯째, 교통·항공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을 중단하고 임차료를 루블화로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상황에 대비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호 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호주에 대한 한국의 상품무역은 2023년 기준 506.3억 달러(수출 178.0억 달러, 수입 328.3억 달러)이다. 양국 간 무역은 연도별로 부침이 큰 편인데,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92.4% 증가, 수입은 36.4% 증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수입이 전년대비 26.9% 감소하였다. 호주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상대국으로 2023년 무역수지는 150.3억 달러 적자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58.4%), 자동차(19.5%), 항공기·부품(2.5%)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27.1%), 석탄(23.2%), 철광(16.7%), 원유(6.2%), 육류(5.1%) 등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총 191.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금액은 45.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38.7%), 금융·보험업(20.5%), 제조업(15.7%), 부동산업(1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3%) 등이다.

반대로 1962년~2023년 호주의 대한민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2.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투자금액은 총 2.7억 달러이며, 금융·보험(43.5%)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다만 2018년에는 운송용기계 분야에 17.4억 달러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호주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어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었으며, 또한 양국이 참여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 및 수자원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 정부조달

###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의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약 74조 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반구 최대 규모로 시장규모도 2016-17년 473억 호주달러에서 2021-22년 808억 호주달러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다만, 전체 정부기관의 34%에 해당되는 주, 준주정부 등 연방 법령(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기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조달시

장은 보고된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의 정부조달은 한국의 조달청이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각 정부 부처, 주정부,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정부 조달활동을 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약 190여개 호주 연방 정부 기관이 공공관리, 업무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에 따라 발주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전체 조달 특히, 국방부, 보건부, 환경부, 내무부, 인적서비스부 등이 주요 발주 부처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참여는 관련 정보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면서 정부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조달 시장을 현지법인이 없는 해외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와 정부 조달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뉴질랜드 기업들도 호주 국내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어, 뉴질랜드에 우선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호주 조달시장 진출시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22.7월부터 정부조달사업 지침을 개정<sup>185)</sup>한바 있다. 연방정부 조달사업의 진입장벽은 전체 조달 사업의 최소 20%(금액 기준)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고, 2천만호불 이하 전체 조달사업의 35%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는 규정<sup>186)</sup> 등이 있어 호주 조달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호주 정부는 정부조달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호주 진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호주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를 상호 양허한 바 있으며,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비차별, 조달절차 투명성 등에 관한 규범을 규정한 별도 챕터를

185) 호주 재정부 정부조달사업 지침 링크

<https://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2022-06/CPRs%20-%201%20July%202022.pdf>

186) 호주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기 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나누어 발주하도록 권고.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5월 호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한·호주 FTA보다 양허수준의 확대 또는 양허조건의 완화 등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2022-23년 연방 정부 예산안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1,200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23.4월 발표한 국방전략재검토 보고서를 통해 호주 국방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사한 점과 최근 우리 기업들이 호주 국방사업 수주에 성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호주 조달시장 진출이 점차 증가할 하고 있는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설립하였다. 더불어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sup>187)</sup>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호주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19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9개 품목(총 21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19건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4건(4개

187)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국), 덤핑관세부와 연장여부 조사 5건(5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3건(8개국), 재조사 1건(5개국), 면제 조사 4건(4개국), 신속 재검토 2건(1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9개 품목) 중 19건(전체 대비 65.5%)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9월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반덤핑조치 7개 품목(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600mm 이하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600mm)) 등으로 전체 수입규제의 86%가 철강제품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품목 모두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호주의 보호무역 기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투자 장벽

###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기준 강화

호주 내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및 인수합병법(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해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서 사전심사하고 있다. 사전심사 대상은 투자자의 유형, 투자대상 업종(예: 민감분야, 비민감분야), 투자규모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3억1,000만 호주달러(FTA 체결국은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인 민간투자의 경우 FIRB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FIRB의 사전 국가안보 심사를 받아야 되며, FTA 체결국도 적용된다.

호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대상기준 및 투자심사 면제 상한<sup>188)</sup>

| 기존 내용                                         |                                           |                                                                    |
|-----------------------------------------------|-------------------------------------------|--------------------------------------------------------------------|
| 투자자                                           | 분야                                        | 투자금액                                                               |
| 1. 부동산 외 분야                                   |                                           |                                                                    |
| FTA<br>체결국                                    | 비민감 분야                                    |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                                                  |
|                                               | 민감 분야                                     | 3억1,000만 호주달러 이상                                                   |
|                                               | 미디어, 국가안보관련<br>분야                         | 0호주달러 이상                                                           |
|                                               | 농업                                        | 1) 6,7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기준)<br>2) 칠레, 미국, 뉴질랜드: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      |
| FTA<br>미체결국<br>투자자                            | 모든 분야                                     | 3억1,000만 호주달러 이상                                                   |
|                                               | 미디어, 국가안보관련<br>분야                         | 0호주달러 이상                                                           |
|                                               | 농업                                        | 6,700만 호주달러 이상                                                     |
|                                               | 비민감 서비스 분야                                | 인도 : 5억 호주달러 이상                                                    |
| 정부<br>투자자                                     | 호주 내 기업 활동으로<br>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는<br>분야 및 신규사업 | 0호주달러 이상                                                           |
| 2. 부동산                                        |                                           |                                                                    |
| 모든 투자자                                        | 국가안보토지,<br>주거용 토지,<br>상업용지(비입주)           | 0호주달러 이상                                                           |
| FTA 체결국<br>혹은<br>상위기준<br>적용<br>대상국의<br>민간 투자자 | 농업용지                                      | 1) 칠레, 뉴질랜드, 미국: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br>2) 이외 국가: 1,5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 |
|                                               | 개발된 상업용지                                  | 1)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br>2) 홍콩 투자자 : 6,300만 호주달러 이상                 |
|                                               | 광업, 제조업용 공동주택                             | 1) 칠레, 뉴질랜드, 미국: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br>2) 이외 국가: 0호주달러 이상           |
| FTA<br>비체결국<br>혹은                             | 농업용지                                      | 1) 1,5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br>2) 태국: 5,000만 호주달러 이상                     |
|                                               | 개발된 상업용지                                  | 1) 3억1,000만 호주달러                                                   |

188)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monetary-thresholds>

| 기존 내용                         |               |                                                                                    |
|-------------------------------|---------------|------------------------------------------------------------------------------------|
| 투자자                           | 분야            | 투자금액                                                                               |
| 1. 부동산 외 분야                   |               |                                                                                    |
| 상위기준<br>미적용<br>대상국의<br>민간 투자자 |               | 2) 광업·공공인프라(공항, 항구) 등 민감자산: 6,700만 호주달러 이상<br>3) 인도 : 5억 호주달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민감 부동산) |
|                               | 광업, 제조업용 공동주택 | 0호주달러 이상                                                                           |
| 정부 투자자                        | 모든 부동산        | 0호주달러 이상                                                                           |

주: 1) FTA 체결국 혹은 상위기준 적용 대상국은 미국, 뉴질랜드, 칠레,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페루, 홍콩, CPTPP 회원국임.

2) 민감 분야는 미디어, 통신, 교통(공항, 항만 등), 국방 관련 산업 및 활동, 암호 및 안보 기술·통신 시스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추출 등이 포함됨.

자료: 오태현, 윤지현, 박나연(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p. 9~10., 호주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이러한 호주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주가가 폭락하여 호주 기업이 중국 국영기업에 의해 쉽게 인수될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기술 및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호주 민감분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 3월 29일 외국인투자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기준을 일괄적으로 모든 외국인투자자로 확대하도록 FATA의 개정사항을 발표한다. 2020년 6월 5일에는 국가안보 심사제도 등 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개정규정안「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Bill 2020」이 발의되었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심사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로운 국가안보 심사기준(national security test), 연방 재무장관 콜인(call-in power) 행사, 연방 재무장관 마지막 수단최종 권한(last resort power) 행사, 민감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면제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 도입 등이 있다.<sup>189)</sup> 즉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민감한 국가안보 사업<sup>190)</sup>을 시작하거

189) 호주투자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강지선(2020)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ldx=186343>

190) 민감한 국가안보 분야에는 핵심 인프라, 정보통신, 방위, 데이터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재무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안보가 우려되는 외국인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투자자나 관련자를 소환(call-in)할 수 있으며, 소환은 투자진행 후 1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존 FIRB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부장관이 자산처분 명령이나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통보를 해야 하거나 소환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면제 증명서를 도입하는 등 자국에 이익이 되는 투자는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한편 투자심사 지원서 검토 과정은 기존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최근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연간 10만톤 이상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메카니즘 제도를 개정(2023.3월 법개정, 2023.7.1.일 시행)한바 있다. 세이프가드 메카니즘 개정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매년 배출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호주 정부는 세이프가드메카니즘 제도를 통해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개발 생산 및 가공기업들에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을 지시하고 있는바, 화석연료관련 분야 투자검토시 주의해야 한다.

## 디지털 무역 장벽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관련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등 개인정보 관리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 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Australian Privacy Principle (APP) Entity)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

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시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여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최근 호주 2위 통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한 약 390만여명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발생 계기,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 제도를 개정<sup>191)</sup>하였다.

## OTT 서비스 관련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 도입 검토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무역장벽은 높지 않다. 특히, OTT 서비스의 경우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 법적정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담,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호주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 도입(호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를 국내제작) 등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진출전 참고할 필요는 있다.

---

191) 호주 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법 위반시 제재 강화, 개인정보 침해한 단체,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개정법(Privacy Legislation Amendment (Enforcement and Other Measures) Act 2022)를 발의한바 있으며, 동 개정법령은 2022.11월 의회를 통과하여 2022.12.14.일 발효된바 있다.





## 브라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의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한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이 많았으나 2010년대 이후 한국기업의 브라질 생산 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점차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높아졌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181.6억 달러)까지 지속되었다. 최근 역시 둔화세를 보이면서 2023년 110.6억 달러(수출 43.4억 달러, 수입 67.2억 달러)로 여전히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19.8%), 자동차부품(14.0%), 농약·의약품(9.0%), 합성수지(7.7%), 원동기·펌프(5.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식물성물질(25.2%), 원유(23.3%), 철광(16.1%), 육류(6.9%), 기호식품(6.8%) 등이다.

양국 간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남미공동시장) 출범 이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해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내국세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2023년9월 기준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9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1.3%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금액은 17.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84.3%)으로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 외에는

부동산업(5.9%), 도매·소매업(4.0%) 등도 주요 투자 업종이다. 반면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계 11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MERCOSUR와의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협상을 2018년 9월 제1차 협상부터 2021년 9월 제7차 협상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 수입규제

###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1997년 1월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의 대외무역국(SECEX)은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한 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SISCOMEX)을 도입하였다.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품목이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품목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천연고무나 인조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품목

수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과 파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무기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SISCOMEX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허가 발급기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대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통관

### 화물검사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 상세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로 검사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음) 등 4가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기 일반적인 통관절차 이외에 청색 채널이 있는데 동 채널은 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 do Brasil)에 사전 등록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동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기업의 조건으로는 우선 2천만 헤알 이상의 대규모 자산 보유, 연간 무역규모 1천만 달러 이상(FOB 기준) 및 디지털화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등 몇 가지 기준이 있으며, 동 기업에게는 수입 시 녹색 채널에 따른 자동통관이 허용된다.

## DUIIMP(단일수입신고) 도입에 따른 통관 지연 개선

브라질 통관 검사 관련 법(Decree 70,235/72)에 따르면 통관절차(자동통관) 기간은 최대 8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중절차, 정보접근 애로,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도한 관료주의 때문에 통관 지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수입업자들은 통관 지연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

통관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2014년부터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신속한 수입절차를 위해 “DUIIMP”(단일 수입신고/Decalaracao Unica de Importacao)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26년까지 도입완료 예정이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

### 국제표준 불인정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 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INMETRO 강제인증

INMETRO는 MDIC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따라 공산품을 포함한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여부를 가려내어 인증서를 발급하는 브라질 인증기관이다.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INMETRO와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의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INMETRO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즉, 한국 주요 수출 품목군인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등 주요 시험항목들은 국내 기관을 통한 인정이 가능하지만, 인정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는 브라질 역내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거쳐서 진행해야한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제품, 유아용품(장난감, 젖병, 카시트, 등), 안전용품(소화기, 절연장갑 등) 등을 포함하며,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2016년 155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48개 품목이 대상

이다.<sup>192)</sup> 우리기업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제조자들이 직접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선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브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 유무선통신 강제인증

브라질 통신제품에 대해서는 「Resolution 242/20」에 따라 브라질 통신규제청(ANATEL)의 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

192)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sup>193)</sup>로 나뉘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행가능하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 경쟁정책

###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2010년 룰라 정부시절부터 암염하층(pre-salt) 등 석유 개발 시 최대 90%까지 자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석유 및 조선 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정책은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인해 R&D 투자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자국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브라질 석유 및 조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6년 이후 Temer 정부에서는 동 규정을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현지화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완화하였으나, 현지 부품 및 인력 사용의무가 여전히 우리 기업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193) Category I :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 단말기 등 (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 해당)

Category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Category III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지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의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 기업 외에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분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 환경 규제

### 환경오염방지 관련법

브라질은 국가환경정책법(6938/1981년)을 제정하여 건설, 시설 확장·변경·운영 등에 대한 환경허가 의무와 환경훼손에 대한 회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에 연방환경청(IBAMA)를 두어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허가를 발급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 아마존 열대우림을 포함한 브라질 삼림 무단 벌채, 생물다양성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대기질 등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바이오 에탄올 의무혼합 사용

브라질 정부는 1938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에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도록(법령737호) 하였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점차 가솔린과 에탄올을 섞은 일명 플렉스(flex) 연료의 바이오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1993년 22%, 그리고 2023년에는 27%이다.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2023년 11월 16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버스·트럭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품목 중 6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지이나 현재 Art 109에 의해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덤핑조사 신청을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보면 총 23건 중 17건이 2010년대, 특히 2013~2014년에 들어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7건(화학공업제품 3건, 철강금속제품 2건, 섬유제품 2건)은 무혐의 판정 등으로 조사가 종료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0건<sup>194)</sup>, 2019년 0건으로 최근 브라질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양국간 교역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투자 장벽

###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직원 채용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고용)시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3명 중 1명은 외국인, 2명은 현지인).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급여 외에 각종 사회보장세(FGTS), 연금, 상여금, 휴가비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7년 노동법 개정 전 노동자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94) 2018년 조사가 시작된 품목 3건은 모두 기한 연장임.

할 경우 노동자가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흔하였으며,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지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급, 휴가 등 일정분야에 있어서는 노사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되는 등 노사협약의 법적지위가 높아졌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노동자)가 패소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되었다.

##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며, 브라질보험감독청(SUSEP)이 민간보험을 감독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신규 보험사는 SUSEP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디지털 무역 장벽

###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

브라질은 2020년 8월 발효된 「정보보호법(LGPD)」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는 국외이전 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요구해야 하고, 동의 요청 시에는 정보의 종류와 수집 목적 등을 정확히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경우는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어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함은 물론,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브라질의 LGPD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및 공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절한"수준의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한해 이전 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 예술행위, 공공보안, 국가안보 또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LGPD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국가지리정보위원회(CONCAR: Comissão Nacional de Cartografia)가 지도를 비롯한 지리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지리정보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IN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리통계원(IBGE)은 브라질 측지 시스템(SGB: Sistema Geodésico Brasileiro)을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이 지리정보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군사 안보 등 국익에 저해된다고 간주될 경우 연방 또는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반출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컴퓨팅설비 위치 제한

2018년 브라질 국가 통화위원회(CMN)가 모든 금융 기관의 사이버 보안 정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결의안 4568호」를 발표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 브라질의 OTT 서비스 관련 규정

2011년 발표된 「연방법 12485호(Lei 12.485/2011)」는 ‘유료 TV법’ 또는 ‘케이블 TV법’으로 불린다. OTT 서비스는 브라질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되며 아직까지 「연방법 12485호(Lei 12.485/2011)」를 포함한 어떠한 법령에도 OTT 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브라질은 OTT 서비스를 케이블 TV 등과 같은 ‘조건적 접근 서비스 (SeAC: Serviço de Acesso Condicionado)’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가통신 서비스’로 인정하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ANATEL(브라질정보통신국)은 OTT 서비스의 공식 양허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다.

###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Comparitech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09~2018년 사이 Google, Facebook, Twitter, Wikimedia(Wikipedia) 사에 콘텐츠 삭제를 가장 많이 요구한 10대 국가 중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기간 동안 브라질 정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7,000 여건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주요 이유로는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보안 문제, 선거법 위반 등이며 특히,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콘텐츠 삭제 요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이전

브라질은 개인적 용도 또는 제품 생산용 프로그램 구입시 소스코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의 보장 및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보장 등 고객의 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이 소스 코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정보 이전도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도 양도된다.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법 콘텐츠 관련 책임 부과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으로 불리는 「법령 12965호(Lei 12965)」를 발표하였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은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콘텐츠의 삭제 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삭제를 한 경우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 캐나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한국의 대캐나다 상품 무역은 2011년 이래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크게 증가하면서 2022년 163.8억 달러, 2023년 146.3억 달러(수출 84.4억 달러, 수입 62.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56.2%), 철강판(3.5%), 자동차부품(3.1%), 철강관·철강선(2.3%), 금·은·백금(2.2%)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8.6%), 동광(9.3%), 철광(8.1%), LPG(6.0%), 육류(6.0%) 등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47.8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3.1%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총 41.9억 달러,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3.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15.7%), 광업(15.3%), 부동산업(11.7%), 제조업(11.2%) 등이다.

반대로 1962년~2023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64.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2.2%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총 27.4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49.8%), 부동산(19.6%), 도·소매유통(16.0%), 수도·하수·환경정화(7.2%), 운송용기계(5.6%) 등이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국내 우량기업 M&A 또는 지분인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몰타,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투자로 이루어지는 만큼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에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국-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교역확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캐나다에서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가 한국산 냉동굴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 수입규제

### 일회용 플라스틱 수입금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는 환경에 위협이 되는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발표하였다(2022.6).<sup>195)</sup>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포괄적인 계획 중 일부이다.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되는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비닐봉지(checkout bag), 식탁용 식기류(cutlery), 외식업체 용기(foodservice ware), 링 캐리어

195)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SOR/2022-138, Registration 2022-06-20.



(ring carrier), 음료용 막대(stir stick), 빨대(straight drinking straw, flexible straw) 등이며, 의료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장애인을 위한 빨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금지 규정의 발효 시기

| 품목                                 | 제조·수입 금지   | 판매 금지      | 수출 금지      |
|------------------------------------|------------|------------|------------|
| 비닐봉지, 식탁용 식기류, 외식업체 용기, 음료용 막대, 빨대 | 2022.12.20 | 2023.12.20 | 2025.12.20 |
| 링 캐리어                              | 2023.6.20  | 2024.6.20  | 2025.12.20 |
| 음료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빨대(flexible)        |            | 2024.6.20  | 2025.12.20 |

자료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캐나다 정부는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제조, 판매, 수출 금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닐봉지, 식탁용 식기류, 외식업체 용기, 음료용 막대, 빨대 등에 대한 제조·수입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되며, 판매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수출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된다. 링 캐리어의 경우는 2023년 6월 20일부터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규정을 통해 향후 10년(2023~2032년) 동안 약 14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총 플라스틱 폐기물 추정량의 약 4%에 해당한다.<sup>196)</sup>

## 무역상 기술장벽(TBT)

###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

196)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5, Number 52: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December 25, 2021.

준인증(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도 통용되기는 하나,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해당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산업용 압력용기의 경우 각 주 정부가 규제하는데 규제하는 기관 및 적용 법안이 조금씩 달라 여러 개의 주로 압력용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주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등록번호(CRN: Canada Registration Numbers)<sup>197)</sup>를 발급받아야 한다.<sup>198)</sup>

##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 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함유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

197) 캐나다 표준인증의 CSA B51 코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압력용기에 부여되는 번호임.

198) 유혜리(2023. 「자원개발에 필요한 압력용기, 캐나다 수출 시 인증 절차는?」) 참고.

##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다. 대상제품에 대한 MEPS 적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기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47종의 전기 전자제품이 해당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16년 5월에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와 캐나다·미국 양국간 에너지 규제 조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내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자제품과 에너지사용 제품들의 에너지효율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2016년에 20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며, 2017년 15개 제품군, 2018년 20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규제는 규제안 통과후 발효시점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과 캐나다 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규제안을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국 에너지효율 규제와 조화를 강화함으로써 캐나다-미국간 무역장벽 및 규제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주요 대상 품목은 가정용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실내 에어컨, 중앙냉난방기, 기름연소 저장 온수기, 상업용 냉장시설, 냉장음료 자동판매기, 전기모터, 오일·가스 용광로, 전자레인지, 충전기 등으로 아래와 같다.

- clothes dryers
-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5 and 2018)
- integrated washer-dryers
- dishwashers
- freezers

- refrigerators
- room air conditioners
-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oil-fired storage water heaters
-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chillers
- commercial refrigeration (self-contained)
- refrigerated beverage vending machines
- commercial ice-makers
- electric motors
- residential-style commercial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3 and 2018)
- fluorescent lamp ballasts
-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two U.S. standards: 2012 and 2018)
- general service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 residential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

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 정도로 HACCP 인증이 캐나다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식품 안전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 요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모두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표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인 알레르겐(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함유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황색소(gardenia yellow) 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http://www.inspection.gc.ca))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은 수입이 제한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등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신규 식품안전법 발효

2019년 1월 15일부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이다. 먼저 면허는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기간을 각각 두고 있다.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출 전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 무역규제 조치

### 수입규제 절차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및 「동법 시행령(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국제무역재판소 규칙(CITT Rules)」 등에 근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업체가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면, CBSA는 해당 국가 전체 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국내 공장도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

출가격을 조사하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all other exporters”로 분류되어 최고의 덤핑 마진율이 부과된다. 덤핑 마진율의 최소허용한도(de minimis)는 2%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며, CBSA는 규제 대상 업체들에게 품목별 정상가격을 부여하고, 향후 수출시 정상가격 보다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는 그 차액만큼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CITT 위원들(위원장 1명, 위원 6명)은 총리가 임명하며 예비판정 및 본판정에는 3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판정을 내리게 된다. CITT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CITT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①수입물량, ②가격변동, ③국내산업 피해 여부, ④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피해판정 시 현재까지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피해 가능성도 검토하며 수출국의 생산능력 및 잉여 생산능력, 수출의존도, 다른 수출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체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캐나다는 덤핑마진율의 결정 및 산업피해 판정 후, 기업별 및 품목별 정상가격을 별도로 계산해 해당품목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이 크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비용 부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정상가격 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시장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국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품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업체는 정상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 받는 경향이 있어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제품경쟁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HS 7306)
  - 가스 배관, 철골 구조 등에 사용
  - 2003년 12월: 최종 판정에서 8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3년 12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HS 7412)
  - 열기기 및 배관, 공조, 냉동기기 등에 사용
  - 2007년 2월: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6년 2월: 재조사 결과 자료 제출 기업에는 하향 조정, 미제출 기업에는 242% 부과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6월: 연례재심 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2년 9월: 2021년 11월 27일 규제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3년 2월 : 재조사를 개시하여 2023년 9월 재조사를 완료
-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S 8504)
  - 출력 전압을 승압 또는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 2012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4년 3월부터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
- 2017년 7월: 재조사에 따른 최종 판정도 동일하게 유지
- 2018년 5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7월: 기업요청에 의해 긴급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결과(관세율)는 비공개
- 2022년 2월: 수출단가 검토 개시
- 소형 전력 변압기(Small Power Transformers, HS 8504)
  - 2021년 4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
  - 2021년 1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최고 73.1% 반덤핑 관세 부과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 HS 7306)
  - 산업 배관 등에 사용
  - 2012년 12월: 54.2%의 반덤핑 관세 부과(이듬해 수출액 크게 감소)
  - 2018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3년 5월: 재조사를 개시하고, 2023.10월 재조사를 종료
- 동관(Copper Tube, HS 7411)
  - 배관, 난방, 천연가스관 등에 사용
  - 2013년 12월: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5년 1월: 재조사 결과 동일 유지 결정
  - 2019년 9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열연후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VII, HS 7280)
  - 선박, 교량, 컨테이너 제조 등에 사용
  - 2014년 5월: 최고 59.7%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20년 3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HS 7213/14/15/27)
  -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시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과 파열을 방지하는데 사용
  - 2015년 1월: 최고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7년 9월: 재심결과 한국, 중국,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2020년 5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HS 7304/06)
  - 원유, 천연가스의 채취, 가스정의 굴착 등에 사용
  - 2015년 4월: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 2020년 3월: 연례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2년 9월: 연례재심(2022년 3월 개시)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HS 7216/7301/7308)
  -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송유관,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
  - 2017년 9월: 반덤핑 예비판정(4.7~107.2%의 잠정관세율 적용)
  - 2017년 12월: 최종 긍정판정으로 한국기업에 4.1%~88.1% 반덤핑 관세 부과
  - 2022년 11월: 규제만료검토 개시하였고, 2023.3월 제재를 계속하는 것으로 판정
- 냉연강재(Cold-rolled Steel, HS 7209, 7225)
  -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한 것이 특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
  - 2018년 5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 2018년 10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53%의 반덤핑,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 부과
- 2023년 11월: 종료 심사 개시
- 내부식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HS 7210, 7212, 7226)
  - 가전제품,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널리 사용
  - 2018년 7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
  -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9%~40% 반덤핑 관세 부과
  - 2023년 4월 :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심사 종료

#### ○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 구분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품목    | 내용                                                 |
|----------------|------------|-------------|-------|----------------------------------------------------|
| 구조용 강관         | 2003.3.21. | 2003.11.17. | 철강·금속 | - 관세율 : 89.0%<br>- 부과기간 : ~2024.10.15              |
| 동제관<br>연결구류    | 2006.6.8.  | 2007.1.18.  | 철강·금속 | - 관세율 : 242.0%<br>- 부과기간 : ~2027.9.13              |
| 유입식 변압기        | 2012.4.23. | 2012.10.22. | 전기·전자 | - 관세율 : 101.0%<br>- 부과기간 : 2023.5.30.<br>에서 연장 예상  |
| 소형 전력<br>변압기   | 2021.4.15. | 2021.11.25. | 전기·전자 | - 관세율 : 73.1%<br>- 부과기간 : ~2026.12.23.             |
| 용접탄소강관         | 2012.5.14. | 2012.11.9.  | 철강·금속 | - 관세율 : 54.2%<br>- 부과기간 : ~2023.10.14.<br>에서 연장 예상 |
| 동관             | 2013.5.22. | 2013.11.18. | 철강·금속 | - 관세율 : 82.4%<br>- 부과기간 : ~2024.9.24.              |
| 후판<br>(열연강판)   | 2013.9.5.  | 2014.4.17.  | 철강·금속 | - 관세율 : 59.7%<br>- 부과기간 : ~2025.3.12.              |
| 콘크리트<br>보강용 철근 | 2014.6.13. | 2015.1.9.   | 철강·금속 | - 관세율 : 41.0%<br>- 부과기간 : ~2025.10.13.             |

| 구분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품목    | 내용                                                                       |
|--------|------------|-------------|-------|--------------------------------------------------------------------------|
| 유정용 강판 | 2014.7.21. | 2015.3.3.   | 철강·금속 | - 관세율 : 37.4%<br>- 부과기간 : ~2025.12.29.                                   |
| 탄소합금강판 | 2017.6.8.  | 2017.12.5.  | 철강·금속 | - 관세율 : 88.1%<br>- 부과기간 : ~2023.1.3.<br>에서 연장 예상                         |
| 냉연강판   | 2018.5.25. | 2018.12.21. | 철강·금속 | - 관세율 : 53.0%<br>1톤당 86,733원 상계관세 부과<br>- 부과기간 : ~2023.12.20.에서<br>연장 예상 |
| 도금강판   | 2018.7.26. | 2019.1.21.  | 철강·금속 | - 관세율 : 40.0%<br>- 부과기간 : ~2024.2.20.                                    |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서비스·투자 장벽

###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 규모에 따른 사전 검토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소속된 국가가 WTO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자 제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WTO 비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자의 제한 금액은 C\$ 5,000만으로 1985년 캐나다 투자법 제정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반면 WTO 회원국 소속 외국인투자자에 적용되는 투자 제한 금액은 2023년 C\$ 12억 8,700만으로 2022년(C\$ 11억 4,100만)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WTO 회원국의 캐나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금액은 C\$ 5억 1,200만으로 2022년(C\$ 4억 5,400만) 대비 증가하였으며, 피인수 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을 자산가치(Asset Value)에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로 변경해 더 정확한 가치 산정 기준을 도입했다.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의 강화

캐나다도 투자법 제4.1장에 국가안보에 해를 주는 투자를 재검토하여 제제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투자법 제정(1985년) 이후 최근까지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사례는 미미하였다.<sup>199)</sup>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캐나다도 이러한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 4월 18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국면에서 캐나다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캐나다 투자법 제25.3조(투자 심의)와는 별도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1년 3월 24일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심의 절차, 대상 분야, 기준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sup>200)</sup>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분야는 ▲첨단 소재 및 제조, ▲첨단 해양기술, ▲첨단 감지·감시, ▲첨단 무기, ▲항공 우주, ▲인공지능, ▲생명공학, ▲에너지 발전·저장·전송, ▲의학기술, ▲신경기술 및 인간-기계 통합, ▲차세대 컴퓨팅 및 디지털 인프라, ▲초정밀 PNT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기술, ▲양자 과학, ▲로봇 공학 및 자율 시스템, ▲우주기술로 매우 광범위하며,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술 분야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 간에 USMCA 체결을 비롯하여 정책 공조가 잘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의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사가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99) 2085~2015년 동안 캐나다 정부가 심사한 외국인투자 1,703건 중 단 3건만이 승인을 받지 못했음(국가안보 사유). KOTRA(2015), “캐나다,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진입장벽 높아지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년 9월 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4475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44750)

200)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Guidelines on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of Investments”, 2021년 3월 24일 공지사항 참고. <https://www.ic.gc.ca/eic/site/ica-lic.nsf/eng/lk81190.html>

## 비캐나다인의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 법 발효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22년 비캐나다인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S.C. 2022, c. 10, s. 235)을 제정했으며,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sup>201)</sup>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캐나다로 이민을 온 홍콩인들이 캐나다의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으며, 그 후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이민을 오거나 학업을 위한 체류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구입함에 따라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캐나다 정부는 동 법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효된 법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비캐나다인(non-Canadian)은 ① 캐나다 시민이 아니거나, 인디언 법에 따라 등록된 인디언이 아니거나, 비영주권자인 개인, ② 캐나다 연방법 또는 주(province)법에 의하지 않고 설립된 법인, ③ 캐나다 연방법 또는 주(province)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면서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법인으로, 소득세법 제262조에 따른 지정이 유효하며, 전술한 ① 또는 ②의 인이 통제하는 법인, ④ 규정된 개인 또는 단체(비캐나다인)가 포함된다(제2조). 동 법을 위반한 비캐나다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판매명령이 내려지며(제7조),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비캐나다인의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제반 행위를 한 개인, 단체, 법인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제6조).

이 법은 당초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안정 여부에 따라 연장되어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

201) 이 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25.2/page-1.html>



## 멕시코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한국과 멕시코 간 상품무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88.5억 달러, 수입은 15.2억 달러였는데, 2023년 기준 수출은 122.3억 달러, 수입은 76.6억 달러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7.0%), 자동차부품(15.1%), 평판디스플레이·센서(5.9%), 합성수지(4.9%), 자동차(3.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31.8%), 원동기·펌프(9.7%), 기타금속광물(8.8%), 자동차부품(8.0%), 아연광(6.2%) 등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7.6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1.0%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22.7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4.1%), 도매·소매업(17.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14.7%) 등으로, 제조업의 경우 많은 부분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반대로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53백만 달러로 크지 않다.

한국과 멕시코는 각자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아직까지 상호 간 FTA는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멕시코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 대부분 그리고 일본, EU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CPTPP 참여국이기도 하다. 한·멕시코 FTA는 2000년대 중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07년 제1차 협상이 개최된 바 있었으나 이후 진전이 없었다. 다만 2016년 예비협약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2022년 협상 재개가 선언된 바 있다.

###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멕시코는 2010년대 들어 2015년 10월 이전까지 철강제품에 대해 5% 가량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sup>202)</sup> 그러나 2015년 10월 멕시코 경제부는 불공정경쟁이 자국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6개월 동안 철강제품에 대한 15%의 잠정관세를 부과(단,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과 같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고율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6개월간의 잠정관세 조치 종료 시점을 앞둔 2016년 4월에 철강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용 안정 등을 이유로 동 조치를 6개월 연장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연장을 통해 2018년 4월까지 15%의 잠정관세 부과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6월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분쟁 과정에서 미국 및 FTA 비체결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15~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3월 186개 철강제품에 대해 15%의 잠정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11월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 112개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 이를 유지한 후,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sup>203)</sup> KOTRA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멕시코의 조치에 적용되는 대멕시코 수출 한국산 철강제품은 36개 품목에 이른다.<sup>204)</sup> 이전의 조치와는 다르게 이번 조치는 약 3년이 라는 긴 기간 동안 취해지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 관세법령정보포털, 멕시코의 관세율 참고.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03) 관세부와 대상 철강품목의 HS 코드 및 그룹별 관세인하 일정은 멕시코 연방정부의 관보, 2021년 11월 22일자 게시자료 참고.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35991&fecha=22/11/2021](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35991&fecha=22/11/2021)

204)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12월 20일), "멕시코, 철강제품에 15% 관세 부과 조치 시행" 참고.



##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 정부는 1992년부터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사람을 비롯한 동물, 채소, 환경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규율하는 강제인증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icial Mexicana)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상 품목의 확대와 빈번한 개정 및 시행 등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NOM 인증대상 품목은 1994년 81개에서 2007년 약 6,600여개 품목에 확대된 바 있으며, 현재 전자제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산업용제품, 가스기기, 문구용품, 사무용품, 자동차 등 운송기기, 주방용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방대한 품목이 NOM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2년 기준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는 NOM 규격은 총 800여개에 이르고 있다.<sup>205)</sup> NOM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규격을 충족해야하는 동시에 라벨링 관련 NOM 규격도 충족을 해야 한다. 멕시코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이전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멕시코의 NOM 인증기관은 ANCE(전기·전자 제품, 가스 제품 등)과 NYCE(전자제품, 통신·IT 기기) 등 다수의 기관이 품목별로 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sup>206)</sup>

205) 멕시코 경제부 웹사이트 참고.

[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REGLAS-ANEXO241PDFok-REGLAS\\_20220516-20220516.4.1.pdf](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REGLAS-ANEXO241PDFok-REGLAS_20220516-20220516.4.1.pdf)

206) 멕시코 NOM 인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규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554&ftaNatnCd=99&sear>

인증 취득 예로 완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호인정협정(MRA)이란 제품 수출 시 수입국의 기술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증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며,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멕시코의 국가인증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14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남미 대표 시험인증(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관을 거치지 않고 멕시코 안전인증인 NOM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이 가능하게 된 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강화

멕시코는 연방법에 따라 제품안전 강제인증 제도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식품 및 무알콜음료는 NOM-051-SCFI/SSA1-2010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라벨링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수출입업체의 정보, 수입업체의 납세번호, 제조업체 정보, 가공 및 포장 일자, 생산(로트)번호, 유효기간, 원산지, 상품명, 원재료 목록, 영양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sup>207)</sup>

2014년 멕시코 보건부는 성인병의 증가에 대응하여 포장식품의 라벨링에 포화지방과 기타지방, 전체 당분, 나트륨, 에너지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2020년 10월 1일부터 멕시코는 포장식품의 안전성

---

chInfmId=TB4MX10000001168;

인증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공하는 국가별 규제정보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ttps://www.knowtbt.kr:9080/home/intro/sub01\\_02.do?auth\\_idx=256&page\\_now=1&in\\_nation\\_nm=%27%EB%A9%95%EC%8B%9C%EC%BD%94%27&chk\\_sch\\_nm=%EB%A9%95%EC%8B%9C%EC%BD%94](https://www.knowtbt.kr:9080/home/intro/sub01_02.do?auth_idx=256&page_now=1&in_nation_nm=%27%EB%A9%95%EC%8B%9C%EC%BD%94%27&chk_sch_nm=%EB%A9%95%EC%8B%9C%EC%BD%94)

207) KOTRA, 해외시장뉴스(2019년 2월 22일), “멕시코 포장식품 라벨링 주요 규정” 참고.

을 강화하기 위한 NOM-051-SCFI/SSA1-2010 규정의 변경 내용이 시행되었다.<sup>208)</sup> 이번 조치에서는 포장 전면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양 성분(열량, 나트륨, 트랜스지방, 설탕, 포화지방)이 멕시코 보건부의 영양성분 기준을 초과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영양성분 기준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설탕 감미료나 카페인인 포함된 제품은 포장 전면에 그러한 성분의 포함 사실과 함께 어린이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일정한 규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의 포장에 만화 캐릭터나 운동선수 및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sup>209)</sup>

이처럼 멕시코 정부는 포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멕시코로 포장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의 NOM-051- SCFI/SSA1-2010 규정 변경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 통관

### 품목분류코드 기존 8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

그동안 멕시코는 동안 HS 8단위 기준으로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20년 12월 28일부터 이를 HS 10단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일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개정안이 시행되었다.<sup>210)</sup> 새로운 수출입 품목 분류 코드는 기존의 HS 8단위 코드에 2단위의 제품 세부 분류 코드(NICO)가 추가된 것으로,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HS 10단위의 새로운 분류 코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멕시코 경제부가 변경된 수출입 품목 분류 코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208) KOTRA, 해외시장뉴스(2020년 6월 24일), “멕시코 식품 및 음료 라벨링 정보” 참고.

20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뉴스(2021년 4월 6일), “멕시코, 4월부터 식품 라벨링 2차 법안 시행 발표” 참고.

210)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2월 22일), “멕시코 품목분류코드 기존 8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 참고.

으므로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목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멕시코 경제부에 문의해서 정확한 코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무역구제 조치

###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6~20년 동안 4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9월 기준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건으로 3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Flat cold-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웨로망간(Ferro-manganese),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 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에멀전(SBR), 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DOP))이다.<sup>211)</sup>

먼저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 멕시코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3년 6월 예비판정(포스코 및 기타 60.4%, 현대하이스코 6.45% 관세 부과)을 내렸으나, 같은 해 12월 멕시코 정부와 피제조기업 간에 공급물량 조절을 합의하고 조사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일몰재심이 개시된 후 2019년 11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5년 연장되었다. 그리고 한국산 웨로망간에 대해 멕시코는 2016년 1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6년 7월 예비판정(35.64% 관세 부과 결정)이 있었으며, 2016년 12월 예비판정과 동일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2021년 12월 한국산 웨로망간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가 개시된 상태이다. 또한 2016년 12월에 멕시코는 한국, 스페인, 우크라이나,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무계목강판에 대

21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입규제DB 참고.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l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

한 반덤핑 조가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4월 Kg 당 0.1312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편, 최근 들어서 멕시코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8월 멕시코는 한국산 폴리 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에멀전(SB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년 9월 예비판정을 내린 후 2019년 1월 MT당 113.78달러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다. 다만, 최종판정에서 LG화학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020년 3월 멕시코는 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DO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예비판정에서 Kg당 0.34달러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고, 2021년 9월 최종판정에서 Kg당 0.27달러의 덤핑마진 결정을 하고 5년 동안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한국산 철강·금속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보더라도 멕시코 기업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입규제가 실시될 우려가 있다.

## 서비스·투자 장벽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투자 금지·제한

멕시코는 1993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규율한다.<sup>212)</sup> 동 법 제1편의 제2장 유보된 투자 활동(Capítulo II De las Actividades Reservadas)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편 제3장 특별 규정 하에서의 활동과 취득(Capítulo III De las Actividades y Adquisiciones con Regulación Específica)에서 외국인지분 한도 등의 제한 하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

212)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멕시코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 원문본 및 번역본 참고.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금지분야는 국가가 독점하는 분야(제5조)와 멕시코 국민·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제6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멕시코의 국가 독점 분야는 ①석유 및 그 밖의 탄화수소의 탐사 및 추출, ②국가 전기 시스템의 계획 및 통제, 전기 에너지의 송전 및 배전, ③원자력 발전, ④방사성 광물, ⑤전신, ⑥무선통신, ⑦우체국, ⑧지폐 발행, ⑨동전 주조, ⑩항구·공항·헬기장의 관리·감독·감시, ⑪그 밖의 현행 법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멕시코 국민·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①여객, 화물, 관광관련 국내 육상운송(택배·소포 서비스 제외), 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개발 금융기관, ③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문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이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을 제한한다. 동 조항에 따르면, 협동생산회사(Sociedades cooperativas de producción)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은 최대 10%까지만 허용된다. 그리고 ▶폭발물, 총기류, 탄약 및 폭죽의 제조 및 판매(산업 및 관업활동을 위한 것 제외), ▶국내 유통용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발행, ▶농·축·임업용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의 T 주식, ▶담수어업, 연안어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양식 제외), ▶종합 항만 관리, ▶선박의 내륙수로 이용 관리, ▶내륙수로 운송 및 국내항간운송을 위해 선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해운사, ▶선박·항공기·철도장비를 위한 연료·유탄유 공급, ▶방송(단, 최대 외국인투자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주의 적용), ▶정기·비정기 국내 항공운송, 비정기 국제 항공운송, 전문 항공운송의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이 최대 49%까지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외국인투자법 제8조는 외국인투자 지분을 49% 이상 취득하기 위해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야를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항만서비스, ▶고속선박운영 해운회사, ▶공공비행장의 면허·양허 회사, ▶유치원·초·중·고등교육 및 복합교육 서비스, ▶법률서비스, ▶철도의 건설·운영·개발 및 공공철도운송서비스 제공이다.

###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멕시코 정부는 기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디지털서비스 공급자가 멕시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세율 16%)를 부과한다.<sup>213)</sup> 이와 같이 멕시코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 주요 목적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멕시코 내의 서비스 공급자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외국 서비스 공급자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지, 영화, 텍스트, 정보, 비디오, 오디오, 음악, 게임,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접근, 멀티플레이어 환경, 모바일 벨소리 다운로드,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기예보, 통계의 열람(단, 전자 책·신문·잡지의 다운로드 및 접근 제외),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인 제3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행위, ▶온라인 클럽 및 데이트 사이트, ▶원격 학습·시험·운동이다(멕시코 부가가치세법 제18-B 조).<sup>214)</sup> 이와 같이 멕시코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기의 서비스를 멕시코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은 멕시코 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제반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되면서 해외에서 멕시코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만큼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지만(넷플릭스 등의 기업), 서비스 요금의 인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우버, 아마존 등의 기업).

### 개인정보보호

멕시코는 「멕시코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을 비롯한 여러 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213) KOTRA, 해외시장뉴스(2020년 8월 3일), “멕시코, 6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참고.

214)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멕시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원문본 참고.

EU의 GDPR처럼 기업이나 그 외의 민간 부문에서 보관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는 2010년에 공포된 「민간 영역이 보관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LFPDPPP: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을 따른다.<sup>215)</sup> 그리고 멕시코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감독하는 기관은 INAI(Instituto Nacional de Transparencia, Acceso a la Información y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이다.

멕시코 LFPDPPP는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또는 알아볼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데이터 소유자(개인)의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잘못 사용되면 데이터 소유자(개인)에 대해 차별을 초래할 수 있거나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개인정보(인종, 민족, 현재 및 미래의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종교, 철학 및 도덕적 신념, 노조 가입,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LFPDPPP는 개인정보가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하고, 개인정보가 기만적이거나 사기적인 수단에 의해 획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데이터 컨트롤러가 데이터 소유자(개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통지(privacy notice)를 하고 데이터 소유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단, 금융 및 자산 데이터는 LFPDPPP 제10조<sup>216)</sup> 및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8조). 그러나 민감한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이면서 규제 당국이 추구하는 명백한 목적 또는 활동과 부합되는 데이터 생성 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될 때에만 생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데이터 컨트롤러가 데이터의 소유자(개인)로부터 분명한 서면 동의(express written consent)를 받아야만 한다(제9조).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통지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215)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멕시코 개인정보보호 법·행정 체계 현황 및주요 위반사례” 참고.

216)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법이 규정하는 경우, ②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데이터가 사전 분리 절차(a prior dissociation procedure)를 전제로 하는 경우, ④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 컨트롤러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인 경우, ⑤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상상황, ⑥일반보건법 및 관련법에 따라 데이터 소유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비밀유지 및 이와 상충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 치료, 예방, 진단,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보건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⑦감독 당국에 의해 결의안이 발급된 경우.



야하며(제12조), 데이터 컨트롤러는 데이터 소유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담당자나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제30조). 한편, 데이터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제63조, 위반의 형태를 총 19가지로 규정) 사안에 따라 경고 조치부터 최대 멕시코시티 현 최저임금 200~320,000일 만큼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반복되거나 민감정보 처리 위반인 경우 추가 벌금 및 가중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조).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의 불법처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며, 민감정보 관련 범죄는 가중처벌(2배 적용) 된다(제67~69조).

멕시코의 LFPDPPP는 EU의 GDPR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보호 및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등 내용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미미한 편이다. 다만, 최근 INAI가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데이터 현지화 및 컴퓨팅 위치 제한

멕시코는 USMCA를 체결하면서 예외 없이 데이터 현지화 제한과 컴퓨팅 위치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3국 간에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없고,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규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서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제14.11조)과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제14.13조) 관련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위배되는 비합치조치는 부속서 I, II, III(Annex I, II, III)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sup>217)</sup> CPTPP 협정에서 멕시코의 부속서를 살펴보면 제14.11조 및 제14.13조와 관련된 유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는 CPTPP 회원국에 대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나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하는 조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217) CPTPP 협정의 문서는 호주 외교통상부에 등재된 문건을 참고하였음.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cptpp/official-documents>

그러나 다자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이 논의 중인 상태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가 국내법으로 디지털 무역을 규제하는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한다거나 컴퓨팅 위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사례는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멕시코 의회에서 디지털 무역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멕시코의 정책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218)</sup>

## 기타

### 기업의 아웃소싱 금지·제한

기업들이 핵심 활동에 집중하면서 여타 활동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각종 법을 통해 이러한 아웃소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1년 4월 23일 멕시코의 연방노동법 개정안과 사회보장법 개정안, 그리고 근로자주택기금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 내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특정한 전문서비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아웃소싱이 허용된다.<sup>219)</sup> 멕시코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화)과 소득 증대(이익 배당 보장)를 도모하면서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탈세를 차단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sup>220)</sup> 상기의 조치는 90일 동안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되었다.

이처럼 아웃소싱을 금지·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멕시코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확대 및 급여의 증가 등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멕시코 내의

218)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정보(2020년 11월 2일), “미 의원들, 멕시코 디지털무역 및 금융서비스 규제 초안에 우려 표시” 참고.

219)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2021년 4월 29일), “[멕시코] 하도급계약 관련법 개정안 발표 관련 동향” 참고.

220)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9월 7일), “[기고] 멕시코 아웃소싱 규제 발효 관련 우리 기업 주의사항”; 해외시장뉴스(2021년 12월 30일), “2021/22년 멕시코 주요 법안 및 규제 동향 분석” 참고.

기업들은 인건비의 급증에 따른 부담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유무형자원과 인적자원 등 경영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하도급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금지·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에 투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연방노동법 및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 튀르키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튀르키예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8,600만 명(2023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이다.

한·튀르키예 FTA가 발효된 2013년 이후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은 2014년 66.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국내정세불안, 경기침체,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55.4억 달러)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7% 증가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89.9억 달러에 달했다. 반대로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입은 FTA가 발효된 2013년(6.9억 달러)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18년에는 현지화(리라화) 가치 급락에 따른 튀르키예산 제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2.1%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현재는 더욱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 주요품목은 철강판(15.8%), 합성수지(13.2%), 석유화학합성원료(7.9%), 자동차(7.8%), 자동차부품(5.5%) 등이며, 수입 주요품목은 농약·의약품(34.6%), 의류(10.2%), 자동차부품(9.6%), 어육·어란(3.8%), 정밀화학원료(3.0%) 등이다.

한국의 대튀르키예 해외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기준 35.6억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의 0.5%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튀르키예 투자는 총 93.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72.5%)으로, 세부적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화학물질·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제조업 외에는 건설업(23.1%)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대로 튀르키예의 대

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46백만 달러로 크지 않다.

한국과 튀르키예 간 FTA는 2013년 5월 상품 협정이 발효, 2018년 8월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되었다. 다만 과거부터 튀르키예측이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에 FTA 농산물 분야 양허개정과 튀르키예산 농수산물 수입확대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 수입 규제

### 관세를 인상과 원산지 검정요청 증가

튀르키예는 WTO 실행세율(applied tariff)과 양허세율(bound tariff)의 차이를 이용하여 WTO 규정 위반 없이 여러 부문에 걸쳐 관세를 인상해 오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10회(2022년 11.10, 12.31, 2023년 1.10, 3.3, 3.10, 4.14, 5.1, 7.27, 8.31, 10.6)에 걸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0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관보번호 제32060호, 시행령 제6626호). 다만,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튀르키예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 할당제가 시행된 사례로 2020년 6월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관련 규제<sup>221)</sup>가 있으나, 현재 동 규제는 종료되었다.

다만 2020년부터 튀르키예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은 적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튀르키예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2,425건으로 전년(1,414건) 대비 71.5%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튀르키예 측의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221) 50만개까지 무관세 수입, 할당량 초과시 기본관세 2.2% 부과

검증 비율이 급증하여 수출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후 튀르키예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출기업의 꼼꼼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수입허가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튀르키예는 쌀, 콩, 해바라기 씨, 밀, 호두 등 농산물과 복사기, 데이터 처리장비, 디젤 발전기 등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공산품,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구한다. 다만 수입허가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통관 지연과 초과요금 발생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 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 세계 대상, 치과용품 수입감시제 시행

튀르키예 무역부는 2022년 12월 14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치과용품(HS 9021.29)에 대해 수입감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보번호 제32043호, 수입감시 관련 고시 제2022/3호).<sup>222)</sup> 튀르키예 정부는 2021년 5월 12일 한국산 임플란트(HS 9021.29)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22년 4월 14일 반덤핑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2027년 4월 14일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sup>223)</sup> 튀르키예의 대한민국 반덤핑 부과 대상은 HS 9021.29 중 임플란트만 해당되며 기타 제품은 반덤핑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금번 조치의 대상은 HS 9021.29에 속하는 치과용품 전체로,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교정용 장치와 부분품, 치과용 인공뼈 등도 해당된다.

튀르키예의 대한민국 치과용품(HS 9021.29) 수입 비중은 2023년 기준 26.3%로 독일과 함께 수입 점유율 선두 자리를 경합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의 반덤핑 조치와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임플란트에 대한 수입

222) KOTRA 해외시장뉴스. 통상·규제 「튀르키예 치과용품 대상 수입감시제 시행 발표」.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49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490)

223) KOTRA,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Global Market Report 23-004.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국인 독일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sup>224)</sup>. 튀르키예 정부의 의료 관광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튀르키예의 치과 산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동향과 향후 추가 제재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sup>225)</sup>과 EU<sup>226)</sup>는 튀르키예의 수입감시제와 관련하여 번거로운 등록 절차와 재등록 요건, 관련 정보 부족, 제품의 가격 상향, 등록 서류의 짧은 유효기간 및 단일의 세관신고에만 적용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튀르키예의 치과용품(HS 9021.29) 수입 동향(단위: US\$1,000, %)

| 순위      | 국가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1       | 독일  | 수입액 | 17,558 | 16,508 | 23,319 | 31,851  | 35,496  |
|         |     | 점유율 | 27.3   | 27.4   | 29.2   | 30.6    | 26.6    |
| 2       | 한국  | 수입액 | 10,255 | 16,625 | 25,979 | 32,883  | 35,062  |
|         |     | 점유율 | 15.9   | 27.6   | 32.6   | 31.6    | 26.3    |
| 3       | 브라질 | 수입액 | 1,798  | 3,403  | 2,214  | 5,825   | 17,070  |
|         |     | 점유율 | 2.8    | 5.6    | 2.8    | 5.6     | 12.8    |
| 4       | 스위스 | 수입액 | 8,866  | 10,998 | 10,933 | 12,150  | 16,307  |
|         |     | 점유율 | 13.8   | 18.2   | 13.7   | 11.7    | 12.2    |
| 5       | 미국  | 수입액 | 9,551  | 3,980  | 6,304  | 7,732   | 11,885  |
|         |     | 점유율 | 14.8   | 6.6    | 7.9    | 7.4     | 8.9     |
| 1~5위 합계 |     | 수입액 | 48,027 | 51,513 | 68,749 | 90,441  | 115,820 |
|         |     | 점유율 | 74.7   | 85.4   | 86.1   | 86.9    | 86.7    |
| 총수입액    |     | -   | 64,322 | 60,293 | 79,808 | 104,015 | 133,516 |

자료 :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https://wits.worldbank.org/>

224) KOTRA 해외시장 뉴스. 튀르키예 치과기자재 전시회 IDEX 2023 참관기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5&pNttSn=203171](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5&pNttSn=203171)

225) USTR, 2021~202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26) European Commission, Access2Markets Trade Barriers.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barriers/details?barrier\\_id=14545&sps=false](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barriers/details?barrier_id=14545&sps=false)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튀르키예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WTO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세계 10대 반덤핑 조치 발동국가 중 하나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반덤핑 조사 개시국 10위, 반덤핑 조치 발동국 10위를 기록하였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라스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사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8건)와 인도네시아(43건)에 이어 튀르키예(29건)가 3위이다.

2023년 10월 현재까지 튀르키예는 총 19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그리고 지난 1년(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동안 튀르키예는 총 22건(반덤핑 3개, 재심조사(expiry review investigation) 14개, 세이프가드 조사 5개)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등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11건<sup>227)</sup>이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5건이다. 튀르키예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산 품목은 PET원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벽지, 나일론, 칫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이다. 특히 벽지는 2015년부터 시행된 후 두 차례 연장되면서 2024년 8월까지 적용 예정이며, 나일론에 대해서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25년 11월까지 적용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튀르키예는 2023년 11월 철강 선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227) 경첩, 폴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트 펌프카, 합성 필라멘트 섬유, 열연강판, 임플란트



## 무역상 기술장벽(TBT)

### 식물에 대한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sup>228)</sup>

원단 염색에 사용되는 아조염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튀르키예 무역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물 내 아조계 염료의 최대 함유치를 30 *ml/kg* 미만으로 제한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수입산 식물에 대해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기준미달이거나 관련 검사 성적서가 없는 제품은 통관이 불가하며,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의무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 규제대상 지정 원단 품목의 HS 코드

| 2단위                             | 4단위                       | 6단위                          |
|---------------------------------|---------------------------|------------------------------|
| 39, 42, 43, 50,<br>52~54, 56~64 | 3005, 6504,<br>6505, 6704 | 4015.19, 9404.29,<br>9404.90 |

검사 성적서는 국제 공인성적서나 상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인 시험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되며, 제품의 선적일 이전에 발급받은 검사 성적서만 유효하다. 수출 대상 품목이 검사서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색상과 일치하는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검사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제도 도입은 검사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여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검사서에 첨부된 사진과 실제 제품의 색상이 차이 날 경우 불합격 및 재검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수입규제 조치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 튀르키예 표준협회 인증 제도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Conformite European)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표준협회(TSE: Turk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운용하는 TSE 인증은 각료회의에

228) 김우현(2021). 「튀르키예, 수입산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Kotra 해외시장뉴스』, (6월 7일). 참고

의해 법률적으로 규격적용이 규정되는 경우 강제규격으로 적용되며, 식품, 의약품, 신발 및 섬유와 같은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은 CE 인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CE 인증이 있는 경우 TSE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CE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드시 TSE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인증만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인증뿐만 아니라 TSE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회원국 탈퇴 이후 기존 영국소재 CE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았던 인증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타 EU회원국 내 지정인증기관에서 CE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

튀르키예는 EU 수준으로 환경규제 수준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 관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법안을 공포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WEEE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의무 재활용에 관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oHS는 전기·전자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수준이 적합한지 유의해야 하며,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튀르키예 환경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대상인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청이 만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튀르키예 기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화학물질 관리제도**

튀르키예는 ①EU식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를 추구하고 ②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유사한 법제 및 시스템 구축

과 정부당국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화학물질 목록 및 관리에 관한규정(CICR: Regulation on Control and Inventory of Chemicals)」을 2017년 12월 23일부터 EU의 신화학물질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에 준하는 「KKIDK(튀르키예 REACH)」로 대체하였다.

튀르키예 REACH의 주요 의무로는 ①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 ②완제품 내 함유된 고위험 우려물질의 신고 ③제한목록 내 물질에 대한 제한 ④허가물질 목록 내 물질의 허가 ⑤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공 등이 있다.<sup>229)</sup> 즉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튀르키예 내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통해 등록해야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 부속서 14에 등재된 물질의 제조 및 유통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튀르키예 내 화학물질은 부속서 17에 명기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할랄 인증 취득 기준 강화<sup>230)</sup>

튀르키예 국민 95% 이상이 무슬림이고 할랄 인증이 있는 경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 튀르키예에서는 할랄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할랄 인증 관련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허위 할랄 인증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2년 6월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할랄 인증기관(HAK: Halal Akreditasyon Kurumu)이 공인한 기관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관보 제31856호). 적용 분야는 식품, 화장품, 관광업, 케이터링 서비스 등이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2023년 3월까지 공인된 인증기관은 32개이며, 한국 수출과 연관이 높은 식품 및化粧품의 인증기관은 각각 24개와 1개이다. 식품의 경우 현지와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나化粧품의 경우 튀르키예 표준기관(TSE)에서만 인증이 가능하다.

229) 전석중·정엠마(2017). 「튀르키예 REACH(KKIDK) 최신 동향」.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참고.

230) 김우현(2023). 「튀르키예 할랄 인증 취득 기준 강화」. 『Kotra 해외시장뉴스』. (5월 2일). 참고.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위생과 재료 수급 과정, 제조공정 등을 모두 서류로 제출하고 실사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TSE 기준 최소 500만 원)이 많이 소요된다. 아직까지 기존 인증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기존 인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인기관에 인증 신청이 집중되어 인증 취득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식품 수입 금지<sup>231)</sup>

튀르키예는 2010년 발표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 및 GMO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수입, 생산,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 비의도적 혼입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232)</sup> 따라서 식물성 성분이 하나라도 포함된 모든 식품은 해당 성분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서(non GMO declaration) 제출 및 GMO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은 GMO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식품안전 증명서에 포함하거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서류를 수출국 공인기관 혹은 국제 공인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하며, 모든 문서는 튀르키예어로 번역 및 번역 공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튀르키예에서 판매되던 라면에서 GMO가 검출되어 전량 회수 및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원산지인 ①옥수수과 옥수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옥수수가루, 옥수수 전분, 옥수수칩, 말린 옥수수 등) ②콩 및 콩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대두박, 대두분, 두유, 콩나물, 된장 등) ③유채(카놀라) 및 유채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 ④목화 및 목화제품을 함유하는 제품 ⑤사탕수수 및 당밀 등 ⑥감자와 감자전분 등 감자를 함유하는 제품은 GMO 검사가 필수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출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31) 김우현(2021). 「튀르키예 가공식품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20일). 참고

232) 의도치 않게 혼입된 GMO 성분에 대한 비율을 비의도적 혼입치라고 하며, 한국은 3%, 유럽은 0.9%까지 허용하는 것과 달리 튀르키예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0%로 혼입의 정도가 아닌 유무로 판단

## 통관

### 산업별 지정 통관세관

튀르키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입품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전담 세관을 지정하고 있고 있어 수출하려는 물품이 자동차, 섬유·직물제품, 비료 또는 석유화학제품인 경우 지정 통관세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는 일부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용 대상인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카라, 딜오바스, 에렌코이, 이즈미르, 무랏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 ◉ 품목별 지정 통관세관

| 품목                            | 특별 지정 세관                                                                                                                                                           |
|-------------------------------|--------------------------------------------------------------------------------------------------------------------------------------------------------------------|
|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와 그들의 부속품 및 부분품 | 예실코이(Yesilkoy), 게브제(Gebze), 이즈미트(Izmit), 메르신(Mersin)                                                                                                               |
| 섬유, 직물 제품                     | 할칼르(Halkali), 아타튀르크 공항(Ataturk Havaliman), 사비야 곱첸(Sabiha Gokcen), 겐릭(Gemlik), 메르신(Mersin), 이즈미르(Izmir), 데니즐리(Denizli), 앙카라(Ankara) 카이세리(Kayseri), 가지안테프(Gaziantep) |
| 비료                            | 데린제(Derince), 메르신(Mersin), 삼순(Samsun), 이즈미르(Izmir) 알리아가(Aliaga)                                                                                                    |
|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                   | 게브제 석유화학(Gebze Petrochemical)                                                                                                                                      |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18&natnCd=TR>, 검색일: 2022. 2. 7)

한편 튀르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색라인(간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라인을 적용,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고,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적색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 외국인투자 제한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나 라디오·TV 방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석유·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및 내용

| 제한분야      | 관련법                    | 제한내용                                                                                                            |
|-----------|------------------------|-----------------------------------------------------------------------------------------------------------------|
| 라디오·TV 방송 | 방송법<br>Law No. 3984    | 외국인지분 49% 이하로 제한                                                                                                |
| 국내 민간항공   | 항공법<br>Law No. 2920    |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
| 국내 해운     | 해운법<br>Law No. 815     |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키예 국민만 수행 가능 |
| 선박 소유     | 무역법<br>Law No. 6732    | 튀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에 과반수가 튀르키예 국민이어야 가능                                                     |
| 전화·전보 서비스 | 통신법<br>Law No. 406     |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 필요                                  |
| 정부조달      | 정부조달법<br>Law No. 4734  | 정부 조달 관련 입찰 시 외국 제품·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튀르키예산 제품·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유리                                                      |
| 수산업       | 수산물법<br>Law No. 1380   |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튀르키예 국민에게만 부여                                                                                 |
| 요트 선착장    | 관광 촉진법<br>Law No. 2634 |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튀르키예 국민 또는 튀르키예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

##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튀르키예 노동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했던 재무부와는 달리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튀르키

예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0년 8월 2일에는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튀르키예에서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을 신설하였다.<sup>233)</sup> 이러한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은 튀르키예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분야에서 주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이 규정으로 인해 노동허가 취득에 관한 민원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노동허가법」에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자사여건상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이행 불가 입증 ② 튀르키예인과 유사하게 간주되는 노동자 고용 ③ 「외국인투자법」 상 예외조항 활용 ④ 외국인 노동허가 미취득 조건 활용 ⑤ 인력 파견업체 파견을 통한 규정 적용 회피 등의 방법을 통해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적용제외가 가능하다.<sup>234)</sup>

## 지식재산권

### 미흡한 지식재산권 보호

튀르키예는 미국의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실제 미국의 2021년 NTE 보고서에 의하면 튀르키예는 위조상품의 수출 및 환적,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인쇄물의 불법복제, 온라인 불법복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XIMI VOGUE, YOYOSO 등 한류팬승 외국계 유통기업이 대도시 위주로 진출해 있으며, 최대 규모의 한류팬승 외국계 유통기업인 YOYOSO의 경우 상표명 및 상호 간판 등에 한글·한자를 사용하고 한국 캐릭터와 유사한 캐

233) 동일한 작업장에서 2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허가를 받는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부터 1인당 튀르키예 시민권자 5명을 고용해야 함.

234) 홍태화(2018). 「튀르키예의 현지인 채용의무규정, 어떻게 해결하나?」. 『Kotra 해외시장뉴스』. (4월 18일) 참고

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튀르키예 내 지식재산권 무단 침해사례 확산에 대비하여 상표권 무단 등록 금지 규정을 포함한 유통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며, 상표권 등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무역 장벽

### 데이터 현지화 규제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내 사업장 및 사업체와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해외에 소재한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튀르키예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PPDL: Protection of Personal Data Law)을 2016년 3월 24일에 발표하여 2018년 4월 7일부터 발효 중에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1차 및 2차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및 인프라를 튀르키예 내에 두도록 의무화는 「정보관리시스템성명(Communique o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을 2018년 초에 발표하였으며, 자금거래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튀르키예 내에 두도록 의무화 하는 「결제시스템서비스에 관한 법(E-Payment Law)」 역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며 외국금융기관들이 인터넷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튀르키예 의회가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 도입을 위해 비준(2019년 12월)한 법안이 2020년 3월 발효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디지털 광고,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등) 중 글로벌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5억 달러)이상이며, 국내 매출액이 2천만 리라(약 250만 달러)이상인 기업은 이익의 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제13차 총회에서 필라1 시행 시 기존 DST 및 유사 과세를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필라1 시행 전에도 2021년 10월 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023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DST 및 유사 과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할 예정에 있어 튀르키예 역시 향후 2020년에 도입한 DST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필리핀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한국과 필리핀 간 상품무역은 2010년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의 대필리핀 무역수지는 2010년 23.5억 달러 흑자에서 2018년 84.7억 달러 흑자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최근에는 수출이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2023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90.1억 달러, 수입은 46.4억 달러, 무역수지는 4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33.5%)과 반도체(18.6%)이며, 이외에도 무선통신기기(4.4%), 선박·해양구조물·부품(2.7%), 동제품(2.6%)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21.6%)와 산업용전기기기(21.4%)이며, 또한 곡식류(6.0%), 동제품(5.5%), 석탄(5.0%) 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49.2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6%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누적 투자는 6.0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47.8%), 건설업(23.0%), 부동산업(13.0%) 등이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음료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필리핀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 1.9억 달러로 크지 않으며, 최근 5년(2019년~2023년) 누적금액은 0.3억 달러로 대부분 숙박·음식점 분야에 대한 투자이다.

한국과 필리핀 간 FTA는 한·ASEAN FTA의 상품협정이 2008년 1월 1일 발효, 서비스협정이 2009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최근에는 한국과 필리핀 간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2016년 7월 14일 발효되었

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양국이 참여한 RCEP이 발효되었다. 한편 한·필리핀 FTA는 2019년 4월 추진이 합의된 이후 5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21년 10월 타결, 2023년 9월 정식 서명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ASEAN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가 모두 발효되면 한국은 94.8%, 필리핀은 96.5%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서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필리핀 FTA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인삼,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필리핀의 관세인하를 양허한 만큼 수출증대 효과 역시 기대된다.

## 수입 규제

### 수입 금지 품목

필리핀은 ASEAN 회원국으로서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중고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이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중량 3톤 이하, 버스는 6~12톤, 트럭은 2.5~6톤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며, 단 수빅(subic) 경제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 최소 접근 허용량

필리핀은 농축산물 민감품목에 대해 최소접근허용량(Minimum Access Volume, MAV)을 규정, 이에 의거한 고율 관세 및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쿼터 부과 주요 품목은 쌀, 설탕(사탕수수), 옥수수, 커피 및 추출물, 감자,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등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최소접근 허용량 방식을 일원화된 관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일례로 현재 닭고기, 칠면조, 감자, 커피콩 등의 경우 MAV 이내 또는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40%로 일원화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세계 10위의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7위 수입국인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확산되면서 국내 시장의 공급 감소 및 가격 상승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2021년 4월 7일 행정명령(EO No.123)을 통해 돼지고기(생돈육, 냉장 및 냉동돈육, 도체/이분도체, 어깨부위 등) 수입관세를 낮추었는데, 쿼터(54,000톤) 이내 수입물량의 경우(현행 30%) 행정명령 발효후 최초 3개월간 5%로 낮아지고, 발효후 4개월~12개월까지 10%, 12개월 이후부터는 30%로 환원된다. 쿼터 초과 수입의 경우 최초 3개월간은 15%로 낮아지고, 이후 4개월~12개월까지는 20%, 12개월 이후에는 40%로 환원된다. 현재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21년 7월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상적으로 기존 관세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 면허

필리핀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을 통한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입 할당을 받은 특정 업체만 수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수입쿼터 부과 품목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이 있다.

## 쌀 수입 제한

필리핀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다. 필리핀은 2019년 2월 쌀 수입에 대하여 기존의 수입수량제한을 폐지하고, 쌀 관세화법(RA 11203)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는 35%의 관세가 부과되며,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에는 MAV에 따른 수입쿼터 내에서 40%, 초과시 1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10월 필리핀 농업부는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편,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은 장립종(long grains)으로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 통관

### 부정부패

필리핀은 통관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도적인 통관 지연이나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의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통관 애로 사항 작용한다.

## 무역구제 조치

### 세이프가드

필리핀은 지난 2020년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나, 2021년 들어 대부분 기각 혹은 조사가 종료되었다.

2020년 2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의 청원에 따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예비조사를 개시, 2021년 1월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필리핀 통상산업부에 권고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2021년 8월 11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청원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다.

2020년 6월 알루미늄 아연시트 및 아연-알루미늄 도금 컬러 강판(PPGI: 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 Pre-painted Aluminum Zinc)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2021년 9월 알루미늄

아연시트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고, PPGI·PPGL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8월 플라스틱 2개 품목(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은 2022년 6월 기각되었고,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는 공식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필리핀은 2023년 3월 LPG 스틸 실린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3년 12월 예비 판정에 따라 kg 당 2.18페소의 잠정조치가 200일간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은 플라스틱 관련 품목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최종판정(2022.9)에서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 보조금

### 수출보조금

필리핀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였다. WTO 차원에서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필리핀에서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단, 예외적으로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의 보조가 있는데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한편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자유무역지대(free port zones) 그리고 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이 운영하는 특수산업단지(special industrial estates)에 위치한 회사의 제조업 수출 관련 투자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소득세 면제, 세금 공제, 요금·수수료 면제 등의 방식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년 간 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 소득세 면제(강신을 통해 최대 8년)
- 이후에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대신, 총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의 5% 특별세로 납부
- 자본재, 기계, 예비부품,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 부두사용료, 부과금, 수수료 면제
- 현지 구매에 대한 VAT 면제(통신, 전기, 수도, 건물임대 포함)

자료: U.S. Trade Representative,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참여 제한

필리핀에서는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필리핀인 소유권이 60% 이상(인프라 사업의 경우 75%)인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즉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회사, 기관, 부처 등과의 물품 공급 계약은 외국인에게 40%의 지분 참여만 허용된다. 또한 입찰 평가 과정에서도 국내산 제품이 수입산 제품보다 우대된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 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의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업체는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

### 표준 및 인증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여기에는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2010년대 들어 필리핀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필리핀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3년 9월에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2016년 1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는 고철·폐전기·전자기기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 그리고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2019년 9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TBT 통보문이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 새롭게 제정된 「표준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에 관한 부행정명령」에 근거하여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소비재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하여 표준(PS) 안전 인증 마크 발급 및 검증 지침이 발표되었다.

## 기존화학물질 목록 (PICCS)

필리핀의 기존화학물질목록(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은 필리핀에서 사용·판매·유통·수입·가공·



제조·저장·수출·처리·운송되는 모든 화학 물질의 목록이다. PICCS에 등재된 화학 물질의 경우 ‘우선 평가 대상’인 PCL(Priority Chemical List) 또는 ‘규제 대상’인 CCO(Chemical Control Orders)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입자는 관련 규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절차 없이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sup>235)</sup> 그러나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 물질의 경우 수입자는 사전 신고 절차인 PMPIN(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을 거쳐야 한다.

PICCS는 1995년 최초 공개 이후 2017년까지 총 8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2020년 6월 31종, 2021년 5월 52종이 목록에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현재 총 22,277종의 화학물질이 PICCS에 등재되어 있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 SPS 수입 통관 증명서 (SPSIC)

필리핀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선적 이전에 수입자가 ‘위생 및 식물위생 수입통관(SPS Import Clearance, SPSIC)’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즉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수입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업체는 SPSIC 신청 및 발급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후에는 SPSIC를 수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필리핀은 쌀, 원예제품 등에 대해 SPSIC 발행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 조치에 대해 「2021년 미국 NTE 보고서」는 자국의 동·식물 및 보건을 위한 조치가 아닌,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235) [http://www.safety-as.com/bbs/board.php?bo\\_table=briefing&wr\\_id=519](http://www.safety-as.com/bbs/board.php?bo_table=briefing&wr_id=519)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과 개선 노력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따라 2014년 미국의 Special 301조 감시 대상국(2006년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 NCIPR이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였으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판매채물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필리핀 마닐라의 그린힐스(Greenhills) 쇼핑센터와 온라인쇼핑 웹사이트를 통한 위조 및 불법 복제, 특허법의 취약 조항, 정부 당국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도 필리핀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3월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집행사무소(IPR Enforcement Office, IEO)의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및 디지털/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IEO를 통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IEO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차단 관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되었다.

## 2018년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

필리핀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과 통상 2년 주기로 갱신되는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FINL: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의거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리스트는 제11차(2018년 10월) 리스트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25%→40%), △외국인 거주자의 교육기관 투자 최초 허용(40%), △약사 등 전문직 활동 확대 등 외국인투자제한 완화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필리핀의 투자 진출 금지 분야는 방송매체(리코딩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단, 약사는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통해 매스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비즈니스(Internet Access Provider)에 한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은 제11차 리스트를 통해 기존 25%에서 40%로 확대되었다. 주요 제한 업종은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 분야(공공사업), 방위 관련 건설업,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물자조달업(국영·공공기업), 국내·해외건설업 및 공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국내 영업행위(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 등이며, 광고업의 경우 30%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업의 경우 조정사(adjustment company),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해 완전 개방되었다.

최소자본 요건과 관련해서는 납입자본금(paid-in equity)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외국인 지분보유는 40%까지 가능하며, 20만 달러 이상인 내수기업(Domestic market enterprise)인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단, 소매업은 250만 달러 이상). 또한 납입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이면

서 5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100%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라면 수출기업의 경우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최소자본 요건 역시 없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일반적인 투자 제한 분야에 속하는 내국 법인은 외국인의 임원 및 관리 직원 등 경영진으로의 채용이 불가하다. 단, 해당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이거나, 이사회 이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 환경 규제

### 유해물질 배출 소각시설 사용 금지

필리핀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과거 2002년 필리핀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최근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 디지털 무역 장벽

### 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

필리핀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House Bill 7425)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디지털세 법안은 2020년 5월 19일 제출된 이후 2021년 9월 21일 하원에서 발의되었고, 2011년 11월

기준 상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번 디지털세 법안의 골자는 디지털 콘텐츠 송신 서비스 및 E-commerce 플랫폼 제공하는 비거주 다국적 기업(예: Google, Netflix, Facebook, Shopee, Lazada 등)의 수익에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단,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비거주외국기업의 경우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동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12개월 기준 총 매출이 300만 페소(약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이며,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제외된다.

## 기타

###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는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취업허가(Alien Employment, AEP)를 필리핀 노동고용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필리핀 해외 고용청에 의해 승인된 회사로서 필리핀에 일시 방문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필리핀인의 해외송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대표 등의 경우에는 AEP 취득이 면제될 수도 있다. 한편, 특별취업비자(47a2, CWV, SCWV, EO226) 역시 교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는다. 단, SIRV의 경우 투자금액이 최대 180일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 2023년 12월

◆ 발 행 | 2023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